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 II.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Ⅲ.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계획
- Ⅳ.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I.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 가구의 규모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 O 가구분할의 결정 요인
- 가구의 크기와 형태의 결정은 가구내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가로의 교통특성, 보행자의 특성. 차량진출입 위치 등을 고려 결정
- O 가구간의 상호연계성 고려
- 주변가구의 토지이용 상황 등 상호관계를 고려 계획
- 공공서비스 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가로망과 획지의 결합관계 감안 결정
- O 가구의 형태와 규모는 그 지역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내부의 획지분할에도 직접적인 제약요소로 작용

2. 가구계획

- O 대상지는 시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정비된 신시가지화 지역임
- 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기간 : 1987년 ∼ 1996년
- 신도심2단계(매립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기간 : 1994년 ∼ 1998년
- O 지구단위계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가구계획을 수립, 기계획된 가구를 유지하도록 계획
- O 기 건립된 부영5차아파트의 남아있는 부지로서 별도의 건축물입지가 가능하도록 가구분할 계획 수립
- O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해제되는 시설들의 가구 계획 수립

②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 O 획지계획은 주택지의 경우 적정규모의 필지구획, 즉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거의 쾌적성 확보와 동시에 수요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기준을 추구함
- O 토지의 잠재력과 건물 유형에 따른 획지 분할
- 대지의 입지와 건물유형 및 전면도로의 특성을 고려
- O 토지의 경제적 이용
- 가구내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계획밀도를 이룰 수 있는 규모



- O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획지분할
- 일조, 통풍 등 생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물을 배치하기 위해 적정한 크기와 형태로 분할
- O 획지규모의 다양화 및 장래의 토지이용 변화 수용

2. 획지계획 기준의 검토

- O 최소획지 규모는 목포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서 제시한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최소 면적인 165㎡이하는 분할을 금지
- O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 단위로 14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음

[목포시 건축조례 대지분할금지기준]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지역
목포시 건축조례 대지분할금지기준(m²)	60	150	150	200	60

O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 단위로 14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음

[용도별 일반적 계획 기준]

[ㅇㅗㄹ ㄹㄴㄱ 게릭 기푼]					
구	분	인구(명)	획지규모(m²)	비고	
	동사무소	9,000 ~ 30,000	600 ~ 700		
근린공공	파출소	15,000 ~ 30,000	600 ~ 700		
시 설	소방파 출 소	15,000 ~ 30,000	800 ~ 1,200		
	우체국	15,000 ~ 30,000	600 ~ 800		
	도서관	20,000 ~ 30,000	3,000 ~ 5,000		
지 역	종합병원	도시인구전체	25,000 ~ 30,000		
시 설	일반병원	9,000 ~ 12,000	500 ∼ 1,500		
	스포츠센터	25,000 ~ 40,000	_		

주) 택지개발업무편람, 한국토지공사, 2010. 11

O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당지구의 각 용지별 가구 및 획지규모는 현재의 획지규모로 계획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획지계획

- O 최소획지규모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제시한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최소면적인 165㎡이하는 분할 금지
- O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준주거지역내에 있는 165m² 이하인 필지를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 발(권장) 계획 수립
- O 지구단위계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획지계획을 수립, 기계획된 획지를 유지하도록 계획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가구번호 A11

	717	H를	면적(m²)			획지		
도면번호	가구	닌오			01-1	면적(m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803	207.3	_	도시계획시설제외
		(A11)			803-1	267.5	267.5	
/ト -/	산 독 2.5F	2,553.8	743.0	803-2	475.5	232.0	지적분할	
	8 8 000	803-1			803-3	1,603.5	_	도시계획시설제외
		-	803-5	_	243.5	지적분할		







2. 주거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 신설

■ 가구번호 A90

	717	₩₩	면적(m²)		획지			비고
도면번호	∕ 1⊤	가구번호 면적(m²)		01-1	면적(m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가구 번호와 동일	_	(A90) 상 동 916	_	999.1	916	_	999.1	신설



- 114 -



④ 공동개발계획(권장)

1. 기본방향

- O 최소 및 적정규모 미달대지에 대한 개발규모의 적정화 유도
- O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지양하여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혼잡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 O 공동개발의 검토지역
- 간선가로변 주요 결절점에 면적이 적은 필지 또는 부정형 필지로 영세부정형 건축물이 생길 것이 예상 되는 경우
- 전면 폭 깊이가 지나치게 적은 필지로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 과소·과대 규모 대지의 혼재로 경관의 식별성, 연속성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 이면도로의 확보가 어려운 주요 결절점의 맹지형 토지로서 단독 개발이 어렵거나 주요 도로 가각부에서 주차 진출입이 예상되는 경우
- 막다른 도로에 의해 진출입하는 대지 및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폭이 협소한 경우
- 인접대지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수용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획지규모가 필요한 경우

2. 공동개발계획

- O 대상지의 가구 및 획지를 검토해 본 결과 하당지구는 적정규모의 가구 및 획지계획이 이루어져 있어 건축물 현황을 통해 최소한의 공동개발계획을 수립
- O 따라서 준주거지역내에 있는 165m² 이하인 필지를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권장) 계획수립
- O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및 변경 절차를 이행

구분	기정	변경
공동개발 (권장사항) 계획	① 필지의 면적이 작을 경우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인접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한다. ② 공동개발(권장)이 표시된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 ③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공동개발 할 수 있다. ④ 도면표시 공동계반(권장) ○ ※ 식별요량 : 적색 실선으로 연결	 구답인다. ② 필지의 면적이 작을 경우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인접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한다. ③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공동개발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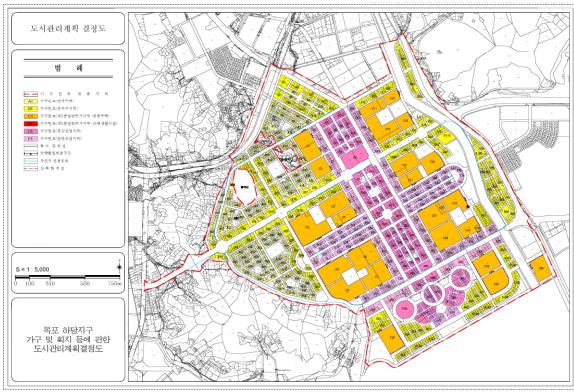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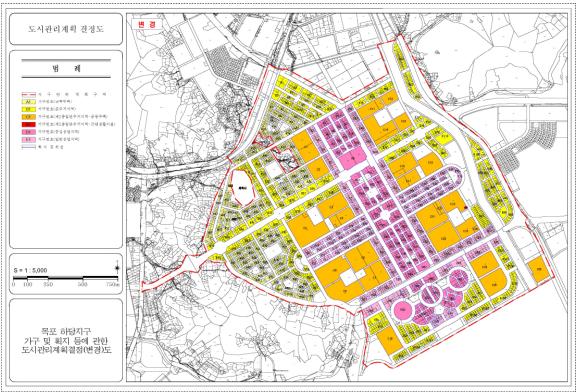
- 주변지역의 개발추세에 비해 과도한 필지의 경우 분할을 통해 적정규모의 대지로 유도
- O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합필의 경우 인접2필지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허용
- O 지구내 적정개발규모를 유지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조건에 적합한 적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

구분	기정	변경
		① 획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의
	① 획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병과	경우에는 분할을 허용한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을 허용함	(단, 최소면적은 165㎡ 이상으로 한다.)
	(단, 환지방식에 의한 획지는 분할 가능하며, 최	1. 환지방식에 의한 획지는 분할 가능하다.
획지분할	소면적은 165㎡ 이상으로 한다.)	2. 매립준공에 의한 획지는 합병과 동시에 이루어
•	② 또한 합필의 경우 인접 2필지에 한해서만 가능하	지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하다.
합병계획	도록 계획함	② 합필의 경우 인접 2필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③ 기 합필이 된 경우는 현재 획지선을 유지하고,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합필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는	③ 기 합필된 경우는 현재 획지선을 유지하고,
	합필선의 획지경계선으로 함	합필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는
		합필선의 획지 경계선으로 한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II.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Ⅱ 건축물의 용도계획

1. 기본방향

- O 기존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용도계획 수립
- O 토지이용과의 정합성 및 입지별 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
- O 법 및 조례에서 허용하는 지역 안에서의 용도를 적용하되 필지의 입지적 여건에 맞는 용도를 계획
- O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색채 등의 문구를 현행 법령에 맞게 반영

2. 법상 건축물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6호 종교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제11호 노유자시설
구 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준주거지역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의 가목・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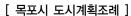
구 부	기축할 수 없는 거축물(거축법시행령 별표 1)
구 분 중심상업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일반상업지역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구 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호의 제7층 근린생활시설 대체호의 제7층 근린생활시설 대원 기계층 근리생활시설 대원 기계층 기계층 근리생활시설 대원 기계층 기계층 기계층 기계하는 기계하는 기계하는 기계하는 기계하는 기계하는 기계하는 기계하는





구 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별표5 사목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1호의 수련시설 □ 제11호의 수련시설 □ 제13호의 은동시설 □ 제13호의 연당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금융업소 ·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5 하목 및 거목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별표 5 더목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1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준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기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한다)과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6호의 위략시설 □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2호의 모지 관련 시설□ 제22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구 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심상업지역	전축할 수 없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15호의 소략시설 중 학교 □12호의 수련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호의 공장(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5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제10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제화장 이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u	교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구 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일반상업지역	□제2호의 공동주택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별표 9 바목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별표 9 사목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 전장소 · 판매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 ·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3. 건축물의 용도계획

- O 허용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서는 건축할 수 없음
- O 권장용도는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는 것
- O 불허용도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써 해당 구역의 환경을 저해하 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음
- O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

불허

용도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 O 공동주택(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 제14호 복리시설
- O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 허용
- O 중심상업지역: 도시계획조례 중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 허용
- O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조례 중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 허용
- O 공공시설용지: 허용된 용도와 그 부속시설에 한하여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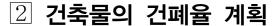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도		모모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구	분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허 용	_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구역나 불허용도	
구	분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1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공공도서관)	
허용 용도	2층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층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구분	준주거지역(B1 ~ B109)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구분	준주거지역(B110)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봉안당	
구분	중심상업지역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구분	일반상업지역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구분	공공시설	
허용 용도	ㅁ허용된 당해용도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 기본방향

O 기 개발 완료 지역임을 고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의 건폐율을 준수토록 함(공동주택 제외)

2. 건폐율 계획

[건폐율 계획]

[근베크 /내국]					
	구뷴	<u> </u>	시행령	목포시 조례	비고
	01111	제1종	60% 이하	60% 이하	단독주택
주택 고서	일반 조권	제2종	60% 이하	60% 이하	하당지구 공동주택 30% 이하
건설 용지	주거	제2종(근린생활)	60% 이하	60% 이하	근린생활시설
871	준	주거지역	70% 이하	70% 이하	
상업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90% 이하	
용지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70% 이하	
	공공청사		해당용도지역	역내 기준적용	
공공 시설 용지	학교		해당용도지역내 기준적용		
	공원		해당용도지역	역내 기준적용	
	E	타 시설	해당용도지역	역내 기준적용	

③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O 기 개발 완료 지역임을 고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5조,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의 용적률을 준수토록 함

[용적률 계획]

구분			시행령	목포시 조례	비고
		제1종	100 ~ 200%	200% 이하	4층 이하
주택 건설	일반 주거	제2종	100 ~ 250%	250% 이하	15층 이하(하당지구)
건설 용지	1 - 1	제2종(근린생활)	100 ~ 250%	250% 이하	
	준	주거지역	200 ~ 500%	500% 이하	
상업	중심	심상업지역	200 ~ 1,500%	1,300% 이하	
용지	일빈	난상업지역	200 ~ 1,300%	1,100% 이하	
	공용의 청사		해당용도기	지역내 기준적용	
공공 시설 용지	학 교		해당용도기	지역내 기준적용	
	공 원		해당용도기	지역내 기준적용	
	타 시설		해당용도기	지역내 기준적용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0 적용



④ 건축물의 높이계획

1. 기본방향

- 도시 전체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유도
- O 일조, 통풍, 프라이버시 등의 보호를 위한 높이 계획
- O 조망경관 및 조망요소의 시각회랑 확보를 위한 높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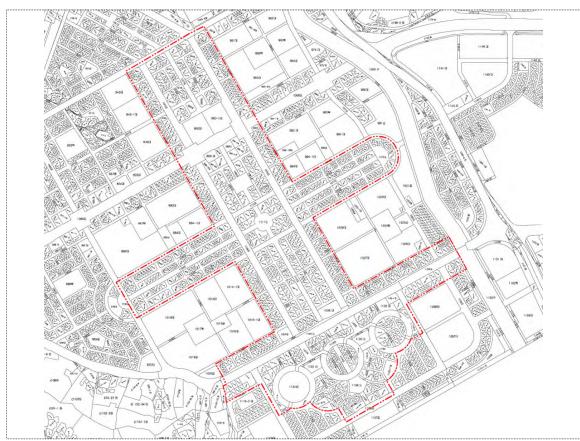
2. 높이계획

O 건축물의 높이 계획(제한)은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목포시 건축조례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의해 건축하게 되어 있으나, 하당지구는 기 개발이 완료 된 구역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층수를 적용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계획함.

[높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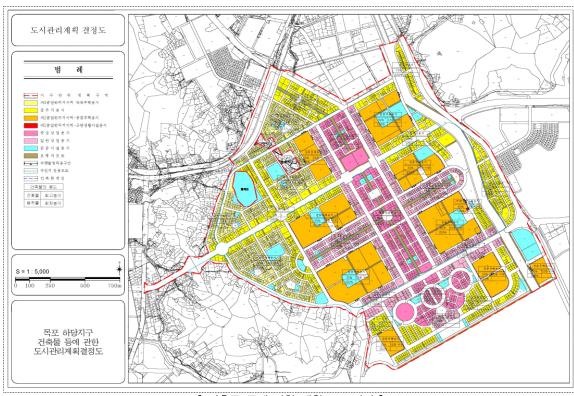
	구분		시 행 령	비고
	일반주거	제1종	4층 이하	단독주택
주 거 지 역	월민구기 	제2종	15층 이하	공동주택
	준주거지역		_	

※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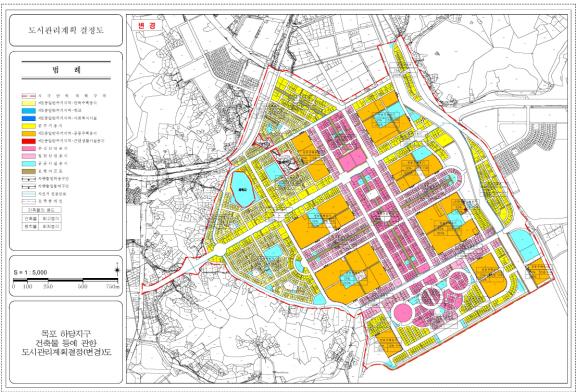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지역 지형도면(목포시 고시 제2018-2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도 - 기정]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도 - 변경]



Ⅲ.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

1. 기본방향

- O 관련법규 및 목포시 건축조례에 의함
- O 건축선의 지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함
- O 건축선을 따라 건축물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

O 대상지는 시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정비된 신시가지지역으로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은 기 건축된 내용과 목포시 건축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하도록 함

②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계획

O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물이 입지한 상태임으로 개개의 필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신규 건축물의 유도를 위한 기본방향의 제시로써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계 획을 갈음함

1.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계획의 기본방향

- O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등은 도시전체의 경관·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되도록 함
- O 건축물의 형태·재료·색깔 등이 질서 있게 연출되고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함
- O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입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계획의 기본방향

- O 가로변 건축물의 지붕형태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사지붕을 유도함
- O 저층 건축물의 지붕모양과 색채는 주변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도록 함
- O 옥상부분은 옥외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옥탑, 냉각탑의 건축설비는 주요한 도로측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함
- O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3.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계획의 기본방향

O 신시가지로서의 계획적 개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조립식구조(샌드위치판넬, 조립식 판넬 등) 의 건축은 지양토록 함



Ⅳ.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Ⅱ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 이 대지내 공지의 조성을 통해 도로변에서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결절점의 이미지 제고
- 건축선 등에 의한 보행공간과 대지 내 공개공지를 연계 개발하여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2. 관련법상 계획기준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목포시건축조례 제34조)]

구분	법상기준	
대상건축물	마다음 시설에 사용되는 5,0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목포시건축조례 제26조)]	
구분	법상기준	
대상건축물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 소금보관 창고 □ 축양 및 양어시설 - 수산물 위판장 - 염전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녹었을 영위하기 위한 녹가용 주택 또는 참고 - 주차저용 건추묵	
설치면적	□ 연멱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 이상	

3. 대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의 조성

O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 및 차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대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단지 내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전면공지(보도부속형)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



○ 기타사항

- 단처리 :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보도와 전면공지(인도부속형) 경계부 처리 : 대지내 공지와 보도와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함. 단, 간선 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설치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적용의 예외 : 지구단위계획상 보도의 확장 외의 목적으로 지정된 대지내 공지는 위의 단처리와 포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처리도 예외로 함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O 대지내 통로는 장식포장을 권장함
- O 대지내 공지에는 환경장식물과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함

■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O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한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함
- O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함

②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O 간선도로변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규제하여 간선도로의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통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

2. 차량출입허용구간

- O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차량 소통을 위하여 지구내 간선도로변 교차로에서 30m, 이상을 이격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다만, 교차로부근 공원, 기타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교차로 반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이격하여 지정
- O 기타 교차로 및 지역에서는 10m를 이격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O 폭 20m이상 도로에서 필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지형조건 등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음
- O 필지의 분할 및 지형조건 등 획지여건상 부득이하게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에서 차량의 출입이 허용 되어야 할 경우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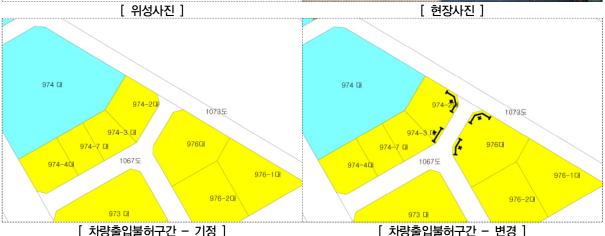


3.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2023년 제2회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_	결정도	차량출입	□소로2-371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결정도
_	참조	불허구간	마소도2~3/1오인한 사랑돌립돌이구선 사영	참조





4. 차량출입구의 설치

- O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필지 외에도 다음의 구간에서는 주차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5m이내의 구간을 원칙적으로 하며 주변 및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O 필지의 규모 및 형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5m 이내로 주차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차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음

5. 주차장 확보

-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차장 확보를 원칙으로 함
- O 단독주택 인접가구의 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²당 1대(시설면적/100m²)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 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 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미시설면적 350m²당 1대(시설면적/350m²)
8. 창고시설	미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미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미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미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주)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개정 2021. 3. 30.)

O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함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대/m²)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가. 특별시	나. 광역시 ·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시얼과 수노권 내	라. 그 밖의 지역
85m² 이하	1/75	1/85	1/95	1/110
85m² 초과	1/65	1/70	1/75	1/85

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개정 2022.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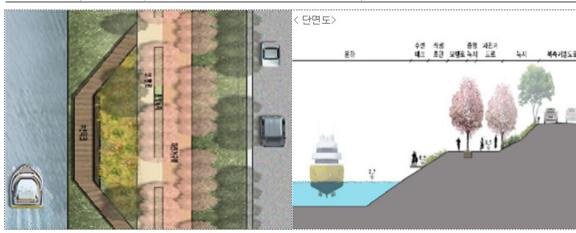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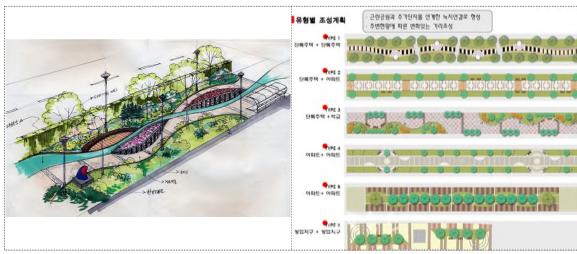
③ **공공보행통로**

1. 기본방향

- O 가구내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속적인 보행환경을 조성
- O 보행자 전용도로는 폭10~20m을 유지하여 인접주거지내의 보행동선과 자연스러운 보행 흐름을 유지
- 공동주택용지내부에 공공보행통로 방향을 설정하여 보행자가 우회하는 불편이 없도록 유도

구 분	폭 원	이 용 특 성	계획기본방향
상업용지	20m	□쇼핑, 사무문화활동 이용 □보행교통 혼잡예상	미비상시 차량통행 허용과 서비스 차량 통행을 허용
공동주택 용 지	10m	□주민이동, 휴식 □공원 및 학교, 근린공공시설과 접속 □통근, 통학, 소규모 쇼핑활동 등 생활 공간화	□분구중심간의 주거지를 잇는 격자형 녹지망 구성 □소규모 놀이공간과 휴게공간 확보
단독주택 용 지	10m	□단지내부 근린편익시설과 연계 □구간 길이가 짧고 이동위주	□주거지내 원활한 진출입 및 다목적 활동 수용 □최소한의 시설과 식수면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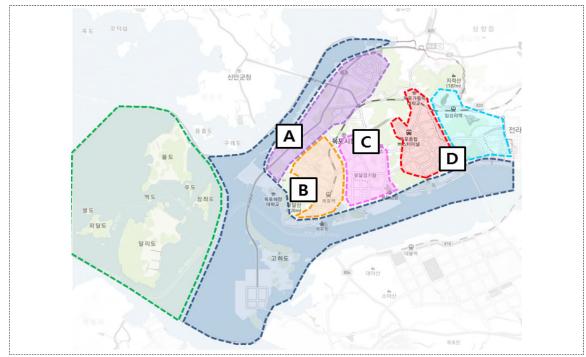


4 색채경관계획

1. 색채 가이드라인

1) 색채경관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색채경관의 현황



[색채경관의 현황]

■ 하당신도심 일대(D지역 : 상동, 하당동, 신흥동, 부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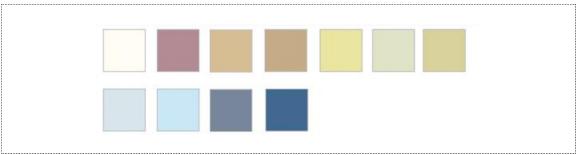
- O 하당신도심 일대는 대체로 공동주택과 평화의 광장 일대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 O 공동주택의 경우 각사의 Base Color는 주로 흰색계열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 건물은 R계열과 YR계열이 강조색으로 사용됨
- O 공동주택은 대체적으로 소단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 숙박시설 밀집지역과의 조화성 및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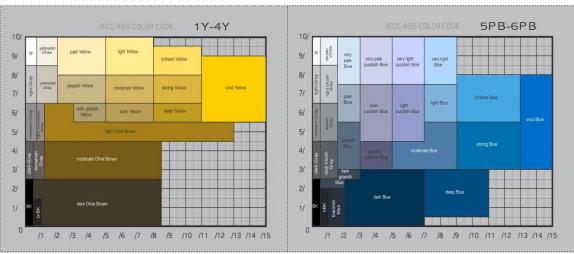
[하당동 일대 아파트]

[부흥동 일대 상가 및 숙박시설]





[공동주택에 사용된 색상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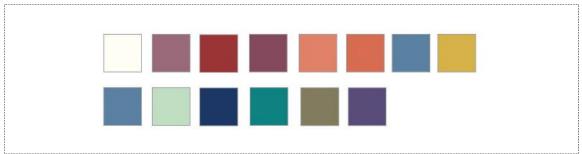
[주요 색상 계열표]

- O 숙박시설은 푸른색과 적색계열의 색채를 적용하여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건축물의 넓은 면적에 사용되어 규모에 의한 적절한 색채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O 또한, 중소 규모의 다양한 색채의 사용이 목포를 상징하는 색채와의 부조화, 통일성 저하, 정체성 감소 등의 혼란함을 주고 있어 중심공간의 공간감 및 아이덴티티가 부족함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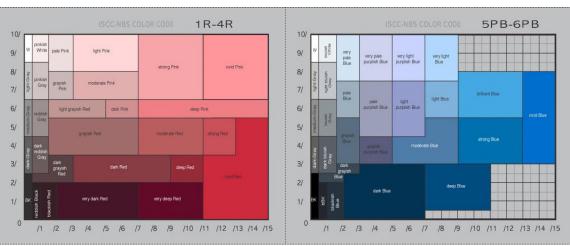
[평화광장 앞 숙박시설]

[조화롭지 못한 색채]



[숙박시설 밀집지역 내 사용된 색상팔레트]





[주요 색상 계열표]

나. 색채경관의 문제점 및 과제

- O 기존의 색채들이 공간 및 지역의 고유 색채와 조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친근감 및 정체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임
- O 다른 문제점은 사용되는 색채가 면적을 고려하지 않아 넓은 면적에 사용되는 색과 작은 면적에 사용되는 색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O 즉, 작은 면적에 사용되는 면이 공동주택 등 넓은 면적에 사용하여 소색의 문제를 일으켜 환경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O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특색 및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의 적절한 선정이 필요 하며, 색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규모에 맞는 색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함

지역이 지닌 자원들과의 조화성 및 고유의 정체된 이미지의 부재

- □정체성을 지닌 고유 색채를 지정하여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 도입
- □목포시 미항 이미지 부각 및 관광도시로의 지향하는 색채 도입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재료가 지닌 한계성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재료의 색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색채 제시
- □공공장소 및 공공건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통일성 부각

도시경관과 이미지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

- ㅁ목포시민이 바라는 도시의 미래상과 색채이미지 적극 반영
- O 색채의 선정은 주변 환경요소 및 주거, 상업, 문화공간, 학교·관공서 등의 용도에 따라 색채를 선정하여야 함
- O 색채의 적절한 사용은 건축물의 경우 고층, 중층, 저층 등에 따라 입면 색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원경, 중경, 근경에서의 보행자들을 고려하여야 함



2) 개요

가. 색채란?

O 도시경관의 시각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경관의 질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생존에 관계된 모든 색채

나. 목적

- O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색채 선정을 통해 자연스러우며 목포만의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
- O 시민의 시각적 편안함과 쾌적함을 위해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색채 경관 형성
-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혼잡한 경관을 형성하는 무분별한 색채 사용 방지

다. 규정항목

- O 한국 표준색 색채 분석을 통해 기본색상을 추출하였고 요소별 권장팔레트에 따른 색채 권장
- O 현황분석을 통해 목포만의 상징색을 도출하고, 권역별,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색채 기준 제시

라. 적용항목

구분	세부내용
권역별	□ 남해안 · 서해안, 도서해양, 남부 원도심, 서부 원도심, 남악생태도시, 하당신도시 , 북부산업지
요소별	□주거지역 / 상업·업무지역 / 공업·기타지역

마. 색채관련 법규 검토

O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계획내용에 색채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관련법규	주요규정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제54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고건축물의 배색, 형태, 색채와 건축에 관한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마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3) 주거시설

단독주택

01 시각적으로 정연하고 편안한 단독주택 단지를 형성한다.

- □통일성 있는 주거단지 형성을 위하여 단지별 유사 계열로 지붕색채를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은 재료 고유의 색을 사용하며, 시각적 노출이 많은 부분은 자연적 재료를 지향
- 미인접 자연색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옥상녹화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경관을 조성한다.







유사색채를 적용한 주거단지

자연소재의 소재 사용

인접 자연환경과의 조화성 형성

공동주택

01 위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단지 통일성을 확보한다.

- □단지는 주조색에 의해 통일성을 형성하고, 강조색을 통해 주거등을 차별화 한다.
- □건설사 자체의 브랜드 색상보다 지역 고유 기조색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 색채 통일성을 유지한다.
- □ 저채도 색상 사용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이미지를 형성한다.



주조색 동일로 통일성 형성

강조색 적용으로 차별화

저채도의 색채 적용

문화재

01 한옥 본연의 소재 및 색채 적용으로 도시 아이덴티티 확립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형성한다.

- □역사적 가치 보전을 위해 현대적 시설 및 개량 보수 작업시, 문화재 고유의 색채를 활용한다.
- □인공적인 페인트 색상 활용을 지양하며, 자연재료 고유의 색을 사용한다.
- □신축 한옥 및 현대적 건축시, 지붕 및 담장 등을 기존 한옥과의 채도 및 색의 조화를 고려한다.



주조색 동일로 통일성 형성

강조색 적용으로 차별화

저채도의 색채 적용



4) 상업 · 업무시설

상업건축물

→ 전체적인 통일성을 형성하되, 부분적 강조색 적용으로 다양함과 활동적인 색채경관 연출

- □ 주출입구 및 건축 입면의 부분적 강조색을 사용하되, 원색 계열의 색채는 지양한다.
- 고저층부 보행자의 시각적 즐거움을 위해 소재 및 색상, 패턴 적용으로 활력이 있는 거리를 형성한다.
- □차양이 연속적으로 설치될 경우, 인접한 차양과 유사색상으로 적용한다.



고층빌딩・업무시설

통일성과 상징성의 조화로운 균형을 확보하며, 근경과 원경의 입체감 있는 색채 계획

- ㅁ서로 인접하거나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은 유사색채를 사용하여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한다.
- □ 건축물의 옥탑부, 저층부, 주출입구, 등에 강조색을 사용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 □주조색·보조색의 유사색 사용을 통해 원경의 통일감을 확보하고, 부분 강조색 적용을 근경의 변화감을 연출한다.



강조색으로 기업 이미지 연출

부분 강조색으로 변화감 연출

관광건축물

목포시 본연의 특성을 반영한 전통적이며 활력 있는 경관색채 적용

- ㅁ목포의 이미지를 담은 전통적 색채를 활용하여 건축입면에 적용하여 정체성을 강화한다.
- □ 휴양관련 시설일 경우, 시각적 편안함을 위해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한다.
- □활성동이 요구되는 관광·레저시설일 경우 다양한 유채색을 강조색으로 활용하여 활력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한옥 요소 및 색채를 활용한 호텔 건축

저채도 및 자연소재 사용

유채색으로 활력있는 경관 연출



5) 산업 · 공업시설

산ㆍ공업 건축물

01 환경친화적 외관디자인을 권장하며, 위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 □폐쇄감 및 위압감 해소를 위해 주 가로에 접하여 위치한 입면은 개방적인 소재 및 밝은 색채를 적용
- □부피 및 넓이가 큰 경우 입면의 패턴. 소재. 색채 등을 활용한 입면분절을 계획한다.
- □ 첨단산업의 미래적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위해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색채를 활용한다.



연구시설

01 다양한 소재 및 색채 사용으로 친근함을 부여한다.

- ㅁ교육연구시설 및 첨단연구시설 등의 경우 창의력 도모를 위해 밝고 쾌적한 색채를 사용한다.
- ㅁ난색계열의 색상을 적절하게 배색하여 적용하며, 원재료의 색채를 사용하여 친근한 분위기 조성
- □ 저채도의 색상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계획



6)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01 환경친화적 외관디자인을 권장하며, 위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 □권위적이고 위압감을 형성하는 단색 사용을 지양하며, 저채도의 배색 권장
- □ 광장 등의 활동공간에는 계획적으로 강조색을 활용하여 활발한 공간 유도
- □자연재료 및 투명소재 사용으로 시각적 개방감과 편안한 분위기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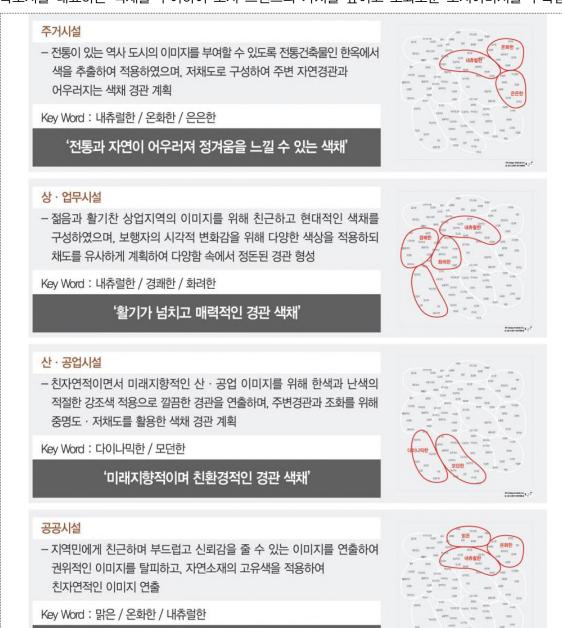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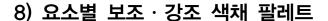
- O 도시보조색, 강조색에 대해 주거시설, 상·공업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요소별 특성에 맞게 색채를 설정함으로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과용되던 색채를 새롭게 정립하고 통일성 있는 경관을 형성함
- O 목포시를 대표하는 색채를 부여하여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함



[요소별 권장팔레트]

'친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색채'





주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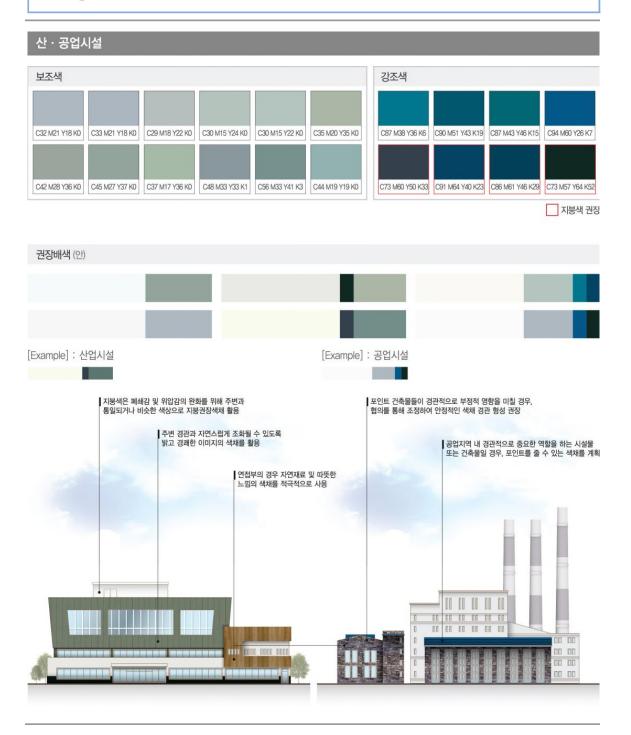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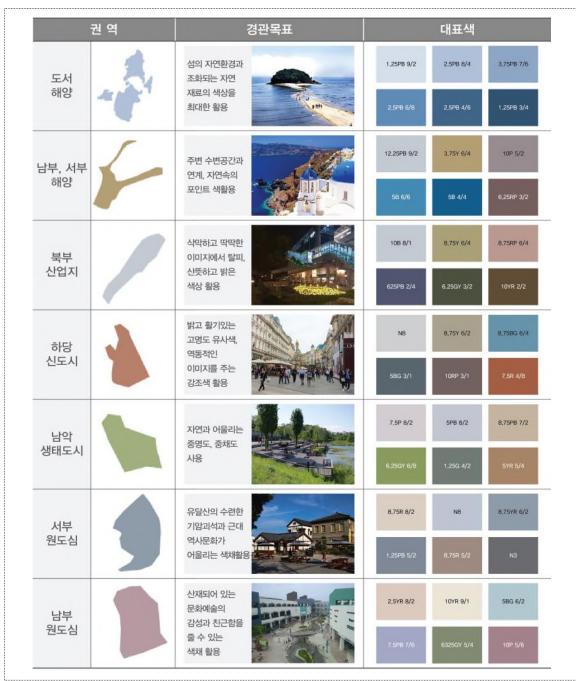






9) 권역별 대표색 가이드라인 적용

- O 목포시 각 권역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권역별 환경요소에 의한 색채를 추출하고 이를 각 권역의 포인트 색채로 활용하여 간 권역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함
- O 전체적인 색채 도입보다는 부분적으로 포인트 색채로 도입하여 주변 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화롭게 계획
- O 도색을 통한 대표색 표현보다는 재료자체의 색을 활용한 대표색 표현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색표현 실현



[권역별 대표색 가이드라인]



10) 관리방안 및 활용 계획

가. 관리방안

O 색채 설계지침을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마감 재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며, 지붕과 벽체에 해당하는 재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재료 적용방안을 제시함

나. 지붕

O 지붕재료는 자연소재의 재료사용을 권장, 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색채 범위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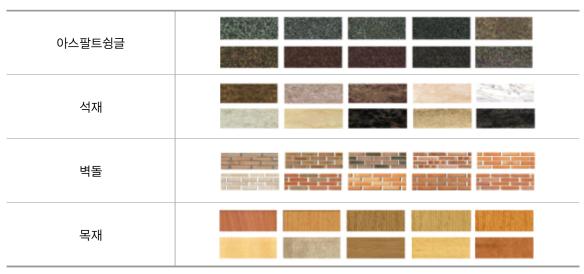
종류	색채범위	비고
전통 기와	N5이하, N3이상	무광
시멘트 기와	N5이하, N3이상	무광
슬레이트형 칼라강판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기와형 칼라강판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아스팔트 싱글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다. 벽체

O 외벽의 재료는 벽돌, 블록 등의 재료를 권장(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색채 범위 참조)

재료유형	색채관리 방안	재료예시
도상 및 도장방식에 의해 재료의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색채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정된 색채범위	□도장, 드라이비트, 인공 석재류, □인공패널류, 비닐사이딩류, 타일류
재료자체 물성에 의해	□채도 4이하	□목재, 블록, 노출콘크리트, 시멘트, 압출성형패널, 천연석재, 부식간판
채가 표현되는 경우	색채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정된색채범위	□벽돌

라. 재료유형별 표준 팔레트





5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 O 옥외광고물의 최소화, 단순화, 일체화로 통일된 이미지 창출
- O 옥외광고물의 색은 벽면과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며, 간판간 색상 통일 유도
- O 건축물의 구조, 형태, 외장소재와 연계된 광고물 디자인으로 목포시 Identity를 확립할 수 있는 지구 조성
- O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총수,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창문 광고 등에 대한 설치 기준 중 일부만을 제어하고, 간판의 규격이나 기타 모든 사항은 현행법규를 준수함으로서 혼란 및 과다규제를 방지
- O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주형 간판을 불허하고 현수막의 부착기간을 제한
- O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계획을 따른다.

2. 가로형 간판

○ 1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가로형 간판의 총수를 1개(곡각지점 2개) 이내로 제한

3. 돌출 간판

O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최소 3m 이상으로 하되,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4. 옥상 간판

O 도시경관을 고려 경사지붕의 옥상 간판 설치를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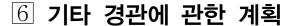
5. 창문 광고

O 도시미관을 고려 창문광고를 불허하되 건물의 주업종, 1층의 로고형 간판은 허용



[옥외광고물 예시도]





1. 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

O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질 및 색채 등이 주위 환경과의 조화 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함

2. 공공시설의 주야간 경관성 제고

- 주요 공공시설 등에 야간 간접조명의 설치를 유도하여 야간경관의 특성화를 유도
- ㅇ 공공시설의 담장 철거 및 외부공간의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시설의 경관성 제고

7 에어컨

- O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10m 미만 막다른 도로 제외)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
- O 신축 건축물의 냉방기 등의 설치는 도로면에서 2m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이전 설치를 유도
- O 도로변에 접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보행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행자가 접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 설치

06

- 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II. 획지 및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Ⅲ.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록

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그서비(%)	비고
	· 广 世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미뽀
	합 계	3,469,710	-	3,469,710	100.0	
	소 계	2,273,547	-	2,273,547	65.5	
	제1종일반주거지역	620,671	-	620,671	17.9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91,084	-	891,084	25.7	
	제3종일반주거지역	7,612	-	7,612	0.2	
	준주거지역	754,180	-	754,180	21.7	
	소 계	945,698	-	945,698	27.3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458,034	-	458,034	13.2	
	일반상업지역	487,664	-	487,664	14.1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180	-	2,180	0.1	
	소 계	248,285	-	248,285	7.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2,384	-	222,384	6.4	
	보전녹지지역	25,901	-	25,901	0.7	

[※] 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목포시 고시 제2020-229호(2020.08.20.)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반영

2. 용도지구(방재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하당지구	석현동 석현들 일원	-	842,166 (169,560)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 ()}는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78	도 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ul ¬
十七	표시번호	Täs	귀 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상동, 옥암동 일원	3,469,710	-	3,469,710	전남고시 제2012-372호 (2012.11.5.)	

^{**} 방재지구 면적은 전라남도 고시 제2020-581호(2021.01.07.) 변경 사항 반영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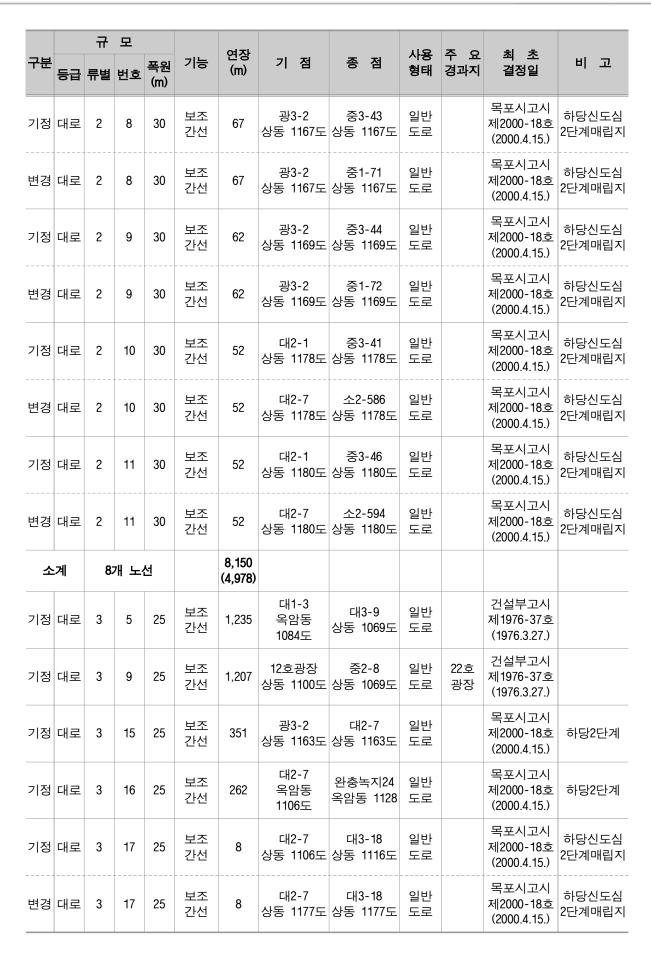
1) 교통시설

가.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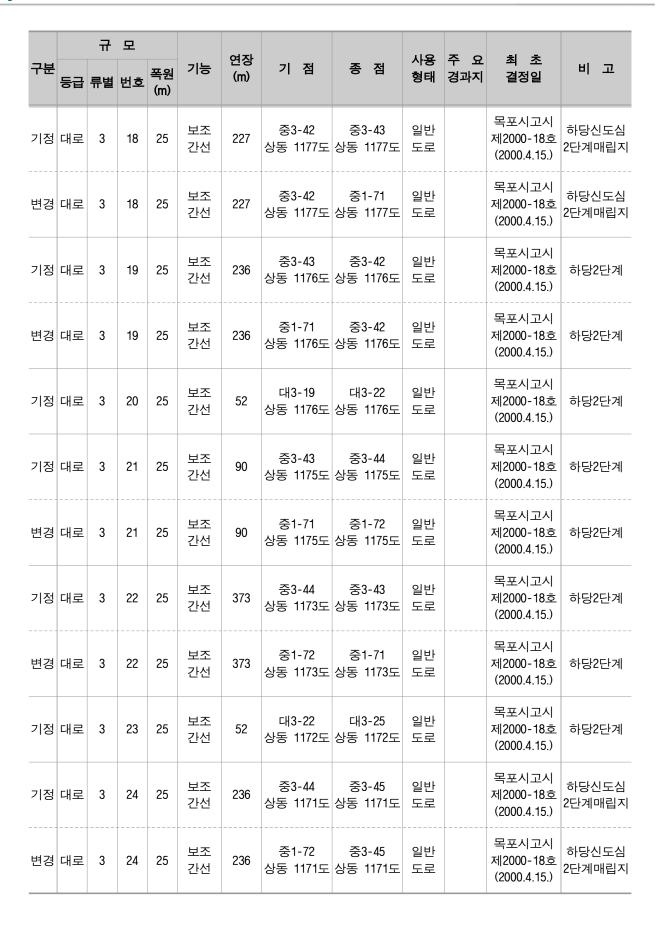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od TI			0	T 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 도로	3,880 (1,921)	9호광장 산정동 44-41도	대1-3 옥암동 1068도	일반 도로	10호 광장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광로	3	1	40	주간선 도로	3,880 (1,921)	9호광장 산정동 1050-123도	11호광장 옥암동 1060구	일반 도로	10호 광장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광로	3	2	40	주간선 도로	1,160	25호광장 옥암동 1130구	12호광장 상동 1162도	일반 도로	-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소	:계	2:	개 노	선		5,040 (3,081)						
기정	대로	1	1	35~ 45	주간선 도로	7,643 (721)	대3-1 동명동 419대	대양동 교통광장 대양동 78-4도	일반 도로	15호 광장	건설부고시 제1966-2567호 (1966.7.14.)	
변경	대로	1	1	35~ 45	주간선 도로	7,643 (721)	대3-31 산정동 1632-2도	32호광장 대양동 267도	일반 도로	15호 광장	건설부고시 제1966-2567호 (1966.7.14.)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도로	4,430 (1,632)	대1-1 석현동 511-4도	하구둑 옥암동 946도	일반 도로	25호 광장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석현지구단 위계획구역
소	:계	2:	개 노	선		12,073 (2,353)						
기정	대로	2	3	30~ 40	보조 간선	4,400 (1,910)	대3-4 용해동 336-4도	광3-2 상동 1079도	일반 도로	10호 광장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변경	대로	2	3	30~ 40	보조 간선	4,400 (1,910)	대3-4 용해동 348-1도	광3-2 상동 1079도	일반 도로	10호 광장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기정	대로	2	5	30	보조 간선	710 (28)	대1-1 상동 699-2철	대3-5 상동 1041-7도	일반 도로	중2-9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대로	2	6	30	보조 간선	1,212	광3-2 상동 1109도	대3-5 상동 107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대로	2	7	30	보조 간선	1,595	광3-2 상동 1106도	광3-2 옥암동 1106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대로	2	7	30	보조 간선	1,595	광3-2 상동 1162도	광3-2 옥암동 1105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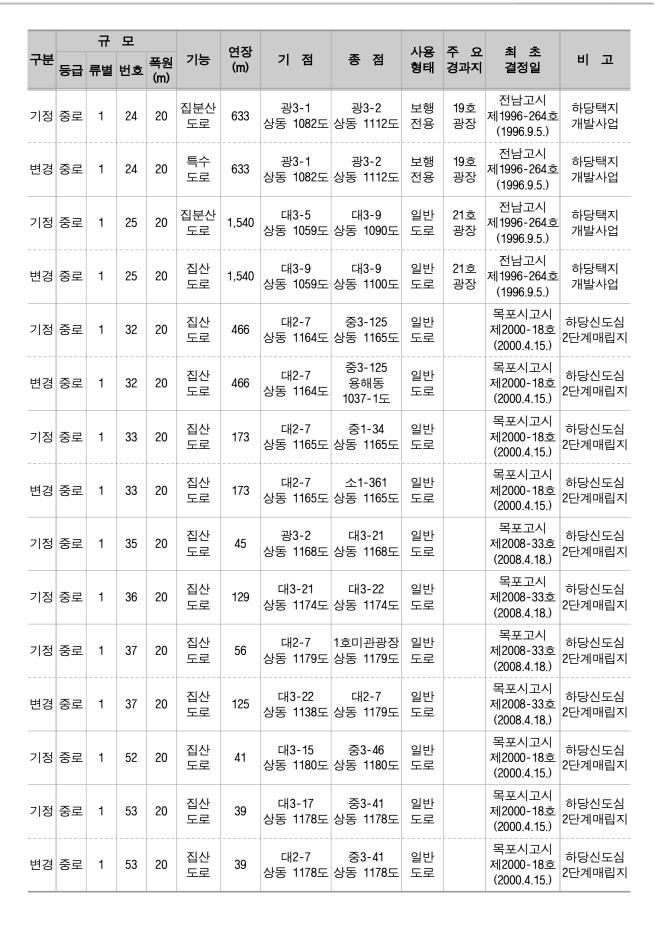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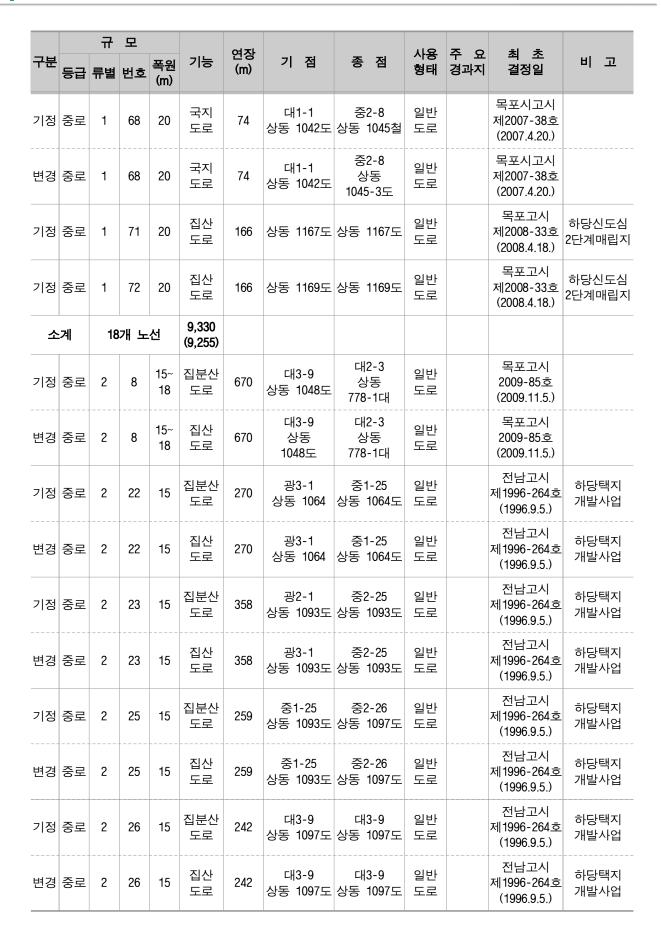


	규 모											
구분	등급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25	25	보조 간선	237	중3-45 상동 1172도	중3-44 상동 1172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대로	3	25	25	보조 간선	237	중3-45 상동 1172도	중1-72 상동 1172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대로	3	26	25	보조 간선	11	대3-24 상동 1171도	대3-15 상동 1171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소	.계	14	개 노	선		4,577						
기정	중로	1	18	20	집분산 도로	1,118	대3-9 상동 1101도	중1-20 옥암동 1074도	일반 도로	중심 상업지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1	18	20	집산 도로	1,118	대3-9 상동 1101도	중1-20 옥암동 1074도	일반 도로	중심 상업지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1	19	20	집분산 도로	1,118	대3-9 상동 1100도	중1-20 옥암동 1074도	일반 도로	중심 상업지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1	19	20	집산 도로	1,118	대3-9 상동 1100도	중1-20 옥암동 1074도	일반 도로	중심 상업지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1	20	20	보조 간선	1,740 (1,665)	광3-2 옥암동 1082도	대3-28 석현동 1175대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1	20	20	보조 간선	1,740 (1,665)	광3-2 옥암동 1082도	대3-27 석현동 1030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1	21	20	집분산 도로	141	대1-3 옥암동 1088도	중1-20 옥암동 1074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1	21	20	집산 도로	141	대1-3 옥암동 1088도	중1-20 옥암동 1074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1	22	20	집분산 도로	1,008	대3-9 상동 1103도	대2-3 옥암동 1103도	보행 전용	19호 광장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1	22	20	특수 도로	1,008	대3-9 상동 1103도	소1-244 옥암동 1077도	보행 전용	19호 광장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1	23	20	집분산 도로	608	중2-8 상동 1051도	소2-366 상동 1077도	보행 전용	대3-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1	23	20	특수 도로	608	중2-8 상동 1051도	소1-84 상동 1077도	보행 전용	대3-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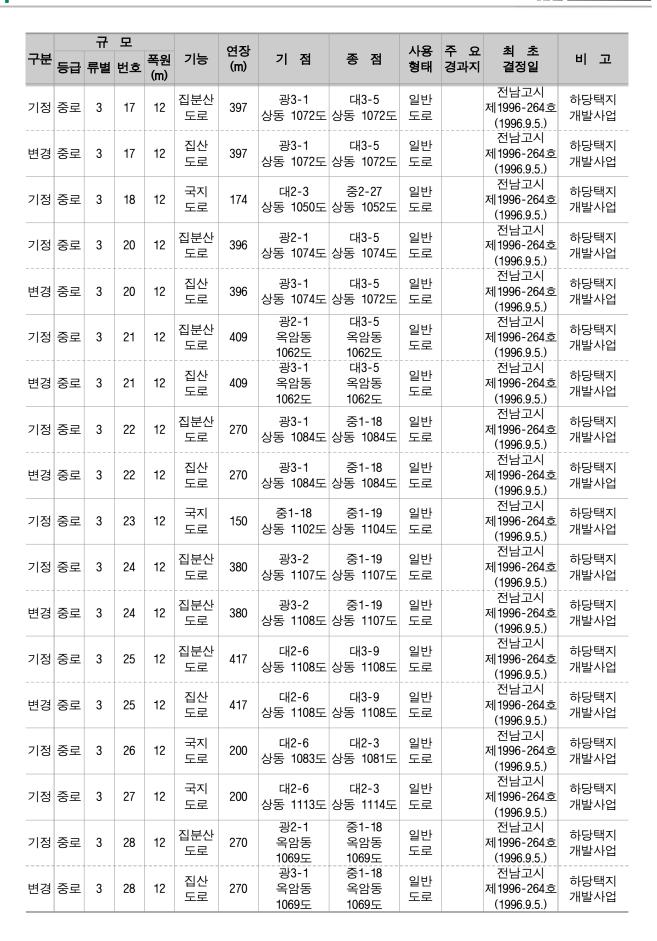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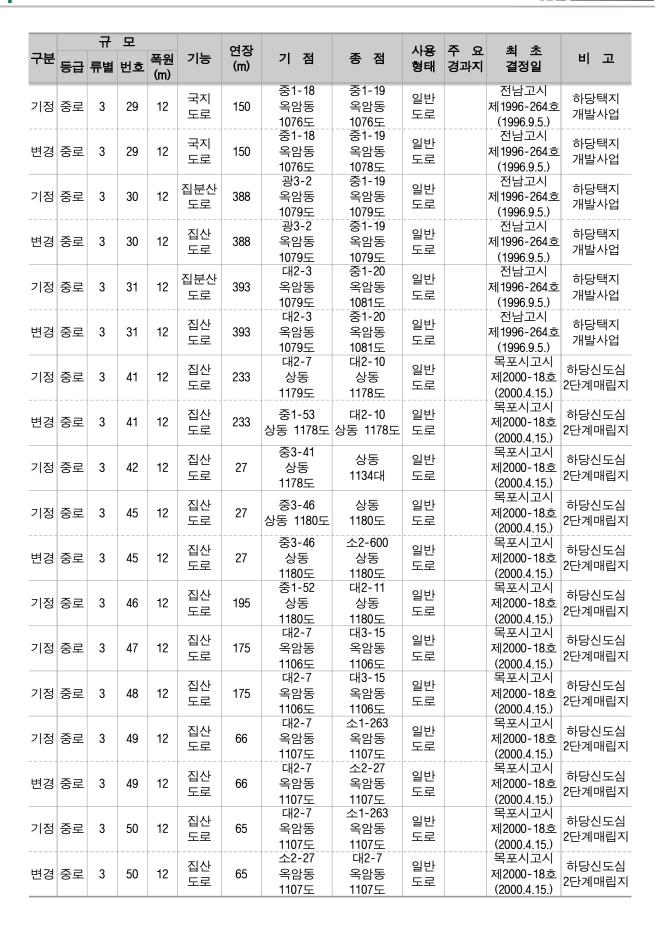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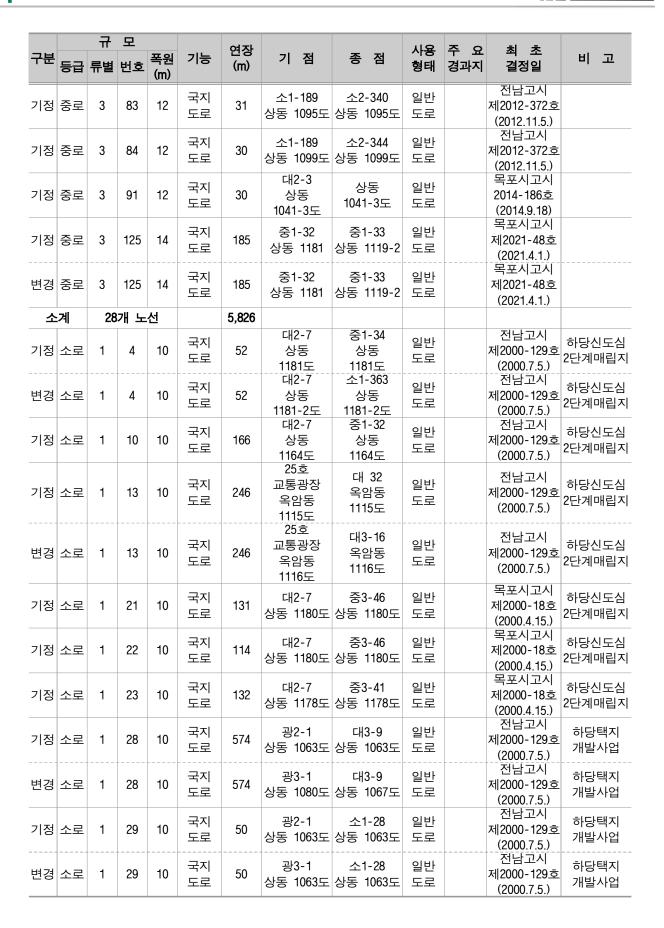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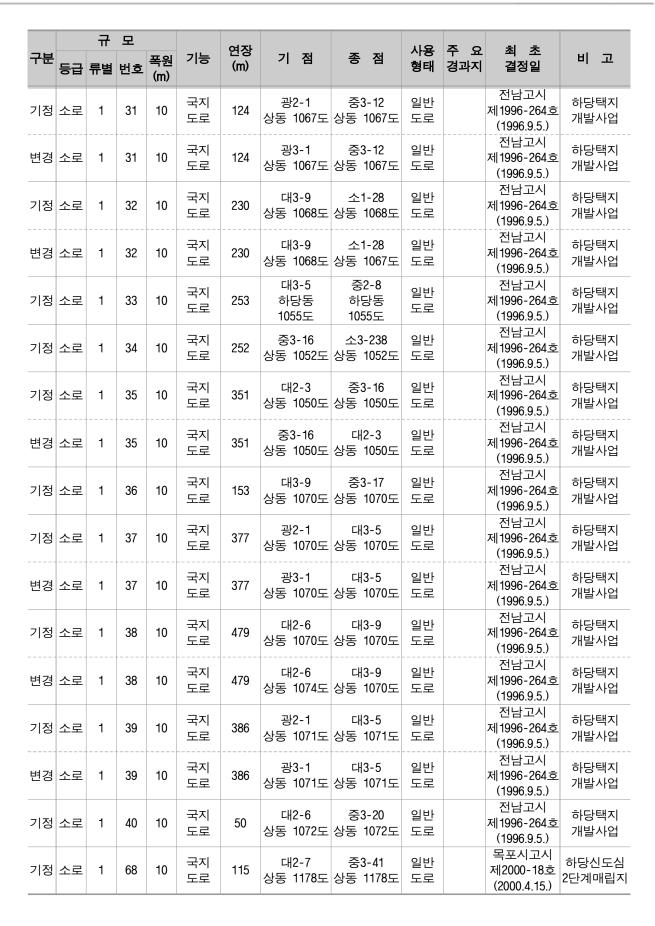
		규	모			017			410	T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27	15	집분산 도로	341	대3-5 상동 1053도	중2-8 상동 1053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2	27	15	집산 도로	341	대3-5 상동 1053도	중2-8 상동 1053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2	28	15	집분산 도로	513	대2-6 상동 1070도	대3-9 상동 1070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2	28	15	집산 도로	513	대2-6 상동 1072도	대3-9 상동 1070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2	29	15	집분산 도로	200	대2-6 상동 1076도	대2-3 상동 1078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2	29	15	집산 도로	200	대2-6 상동 1076도	대2-3 상동 1078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2	37	15	집산 도로	51	대2-1 상동 1163도	중1-34 상동 1163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중로	2	37	15	집산 도로	51	대2-7 상동 1163도	소1-362 상동 1181-4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중로	2	38	15	집산 도로	52	대2-7 상동 1181도	중1-34 상동 1181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중로	2	38	15	집산 도로	52	대2-7 상동 1181-1도	소1-363 상동 1181-1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중로	2	59	16	국지 도로	351 (100)	중2-8 상동 1048도	소2-569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7-42호 (2007.5.11.)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중로	2	59	16	국지 도로	351 (100)	중2-8 상동 1048도	소1-290 상동 560-3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7-42호 (2007.5.11.)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소	:계	11	개 노	선		3,307 (3,056)						
기정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219	대3-9 상동 1064도	중2-22 상동 1064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중로	3	16	12	국지 도로	174	대2-3 상동 1051도	중2-17 상동 1052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중로	3	16	12	국지 도로	174	대2-3 상동 1050도	중2-27 상동 1052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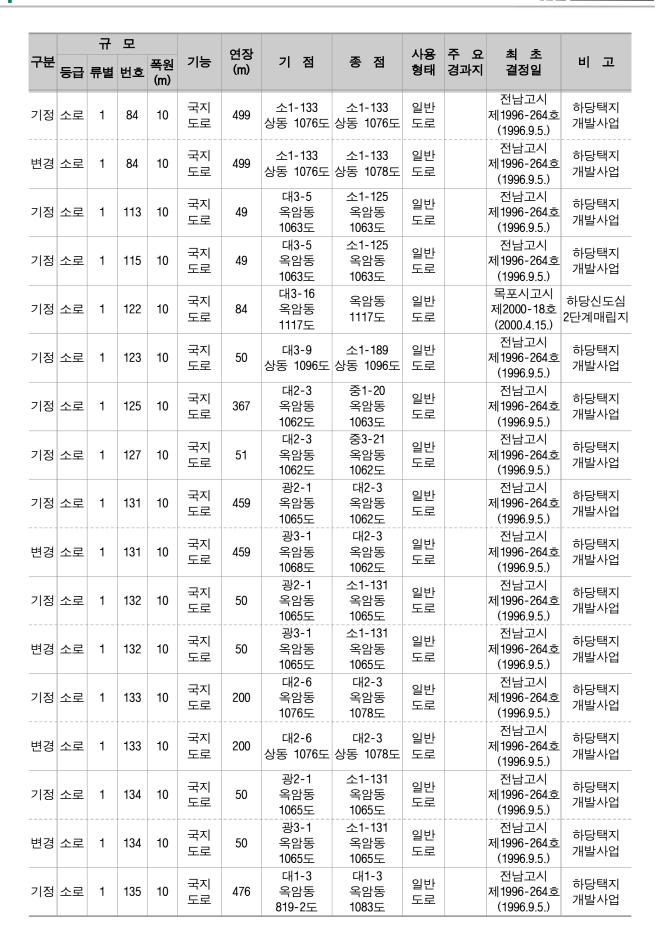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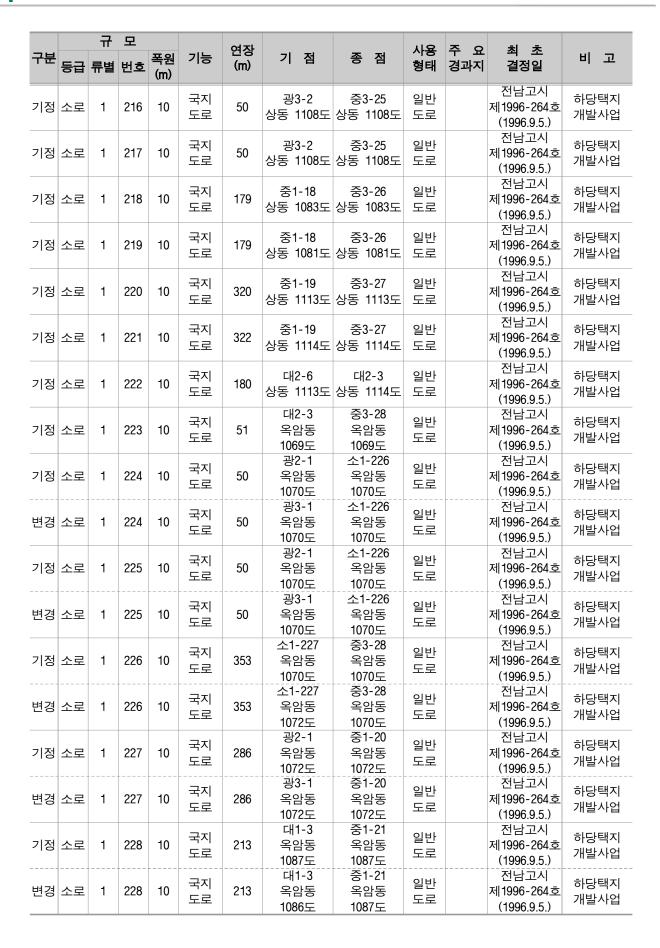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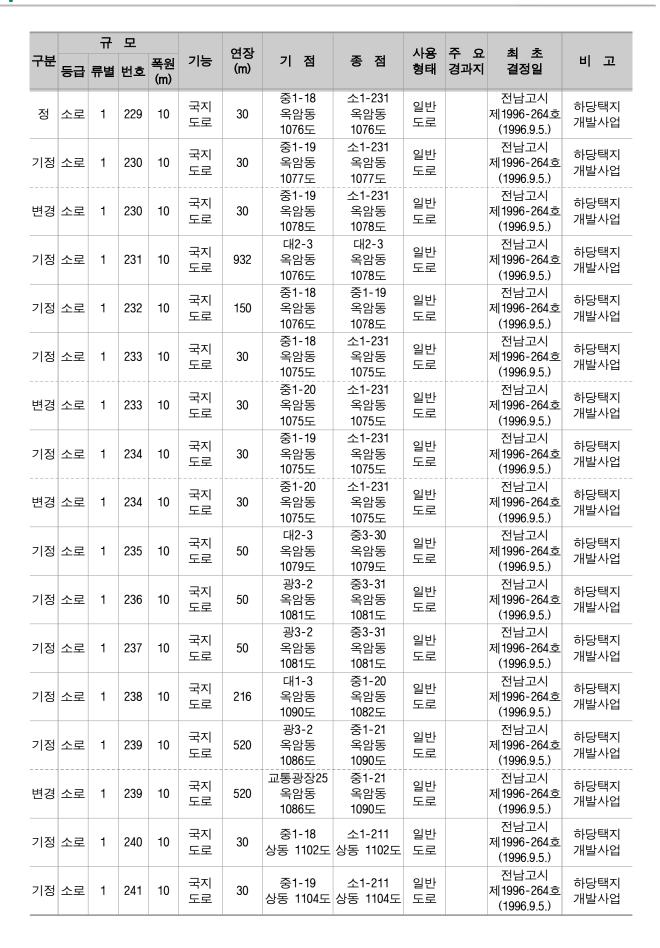


		규	모			어지			110	주 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1	136	10	국지 도로	50	광2-1 상동 1087도	소1-140 상동 1087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변경	소로	1	136	10	국지 도로	50	광3-1 상동 1087도	소1-140 상동 1087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기정	소로	1	139	10	국지 도로	50	광2-1 상동 1086도	소1-140 상동 1086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변경	소로	1	139	10	국지 도로	50	광3-1 상동 1086도	소1-140 상동 1086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기정	소로	1	140	10	국지 도로	451	대3-9 상동 1087도	중1-25 상동 1086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변경	소로	1	140	10	국지 도로	451	대3-9 상동 1086도	중1-25 상동 1087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기정	소로	1	141	10	국지 도로	472		소1-189 상동 1093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기정	소로	1	168	10	국지 도로	224	중1-25 산정동 1091도	중2-23 산정동 1091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하당택지 개발사입	
변경	소로	1	168	10	국지 도로	224	중1-25 상동 1089도	중2-23 상동 1092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182	10	국지 도로	66	대2-7 상동 1180도	중3-46 상동 1180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 2단계매립	
기정	소로	1	183	10	국지 도로	243	소1-140 상동 1092도	소1-141 상동 1092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기정	소로	1	186	10	국지 도로	160	중2-23 상동 1095도	소1-189 상동 109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기정	소로	1	189	10	국지 도로	635	중1-25 상동 1096도	소1-140 상동 1096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기정	소로	1	190	10	국지 도로	49		소1-189 상동 1096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191	10	국지 도로	129	중1-25 상동 530-1대	중2-25 상동 526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변경	소로	1	191	10	국지 도로	129	중1-25 상동 1098도	중2-25 상동 1098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기정	소로	1	192	10	국지 도로	174	소1-191 상동 1098도	소2-344 상동 1098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변경	소로	1	192	10	국지 도로	174	소1-191 상동 1098도	소2-344 상동 109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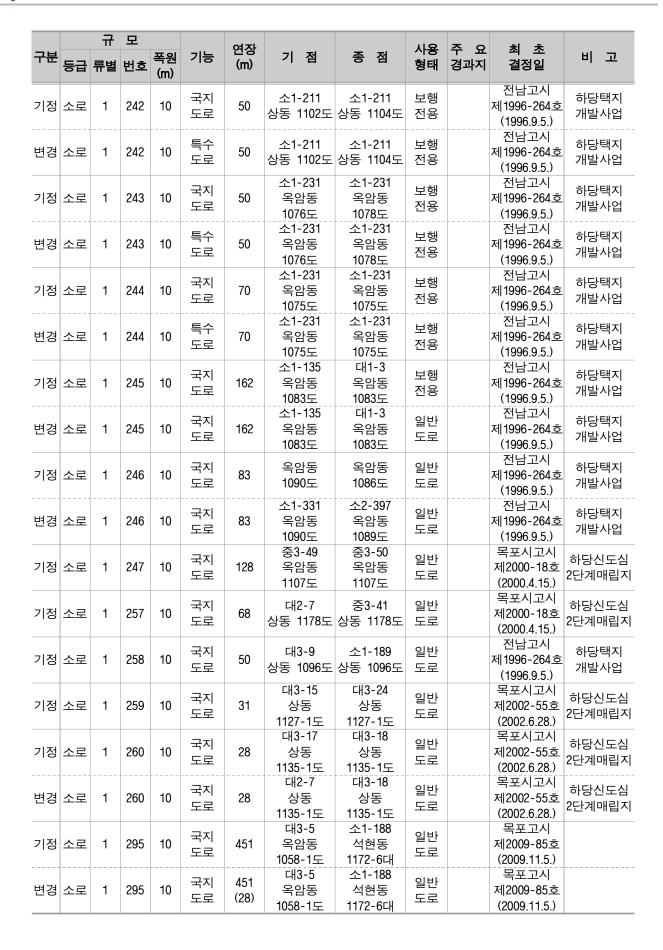


		규	모			어린				T •	- 1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1	195	10	국지 도로	52	대2-7 상동 1181도	중1-34 상동 1181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소로	1	195	10	국지 도로	52	대2-7 상동 1181-3도	소1-362 상동 1181-3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1	198	10	국지 도로	50	광2-1 상동 1085도	소1-201 상동 108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1	198	10	국지 도로	50	광3-1 상동 1085도	소1-201 상동 108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199	10	국지 도로	50	광2-1 상동 1085도	소1-201 상동 108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1	199	10	국지 도로	50	광3-1 상동 1085도	소1-201 상동 108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200	10	국지 도로	50	광2-1 상동 1085도	소1-201 상동 108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1	200	10	국지 도로	50	광3-1 상동 1085도	소1-201 상동 108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201	10	국지 도로	450	대3-9 상동 1085도	중3-22 상동 108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210	10	국지 도로	50	대2-6 상동 1084도	중3-22 상동 1084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211	10	국지 도로	971	대2-6 상동 1109도	대2-6 상동 110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212	10	국지 도로	130	중1-18 상동 1102도	중1-19 상동 1104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213	10	국지 도로	30	중1-18 상동 1102도	소1-211 상동 1102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214	10	국지 도로	30	중1-19 상동 1104구	소1-211 상동 1104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1	214	10	국지 도로	30	소1-211 상동 1104구	중1-19 상동 1104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1	215	10	국지 도로	50	대2-4 상동 1107도	중3-24 상동 1107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1	215	10	국지 도로	50	대2-6 상동 1107도	중3-24 상동 1107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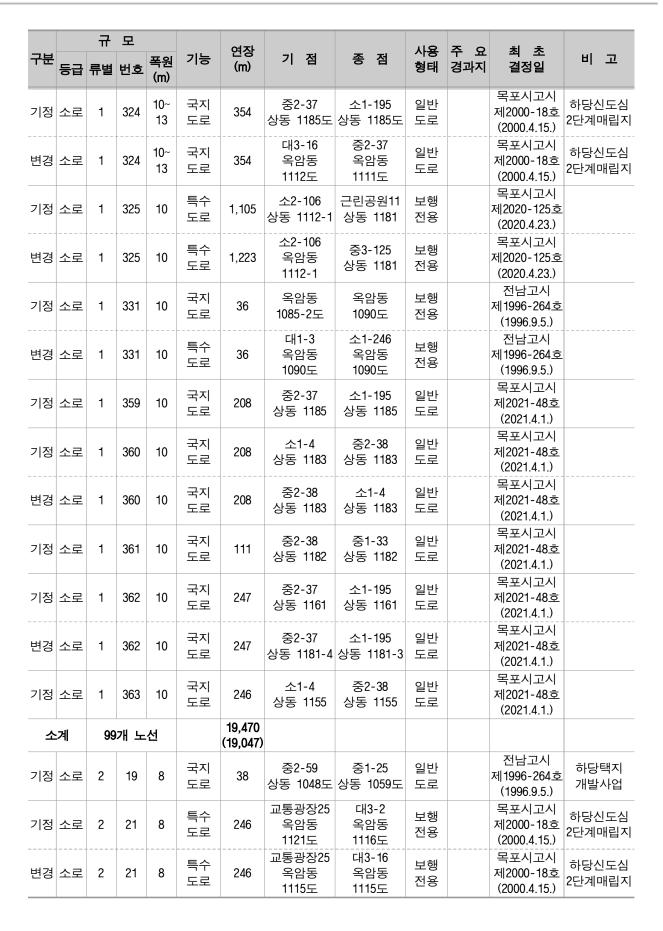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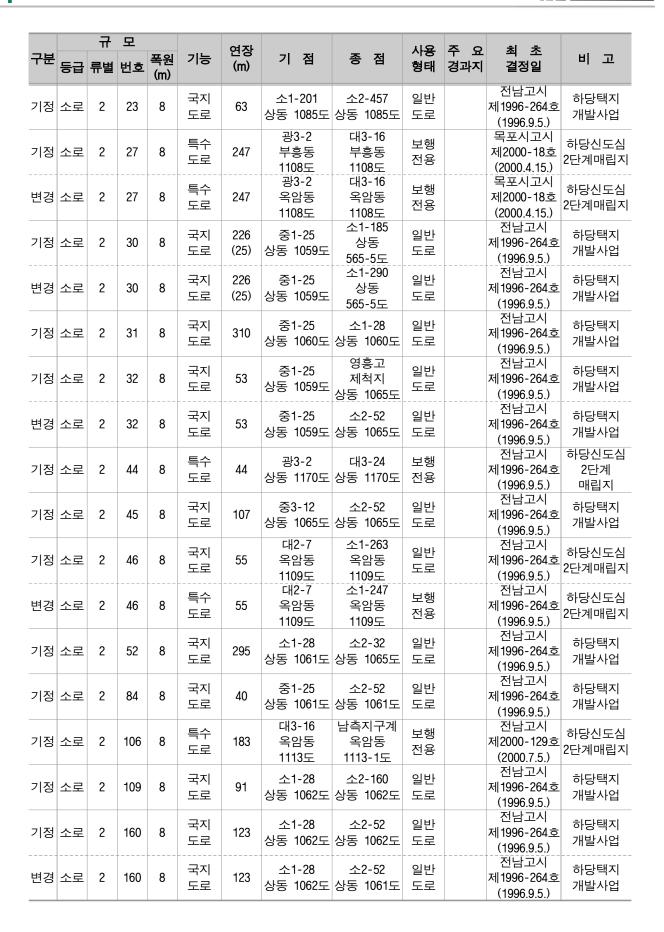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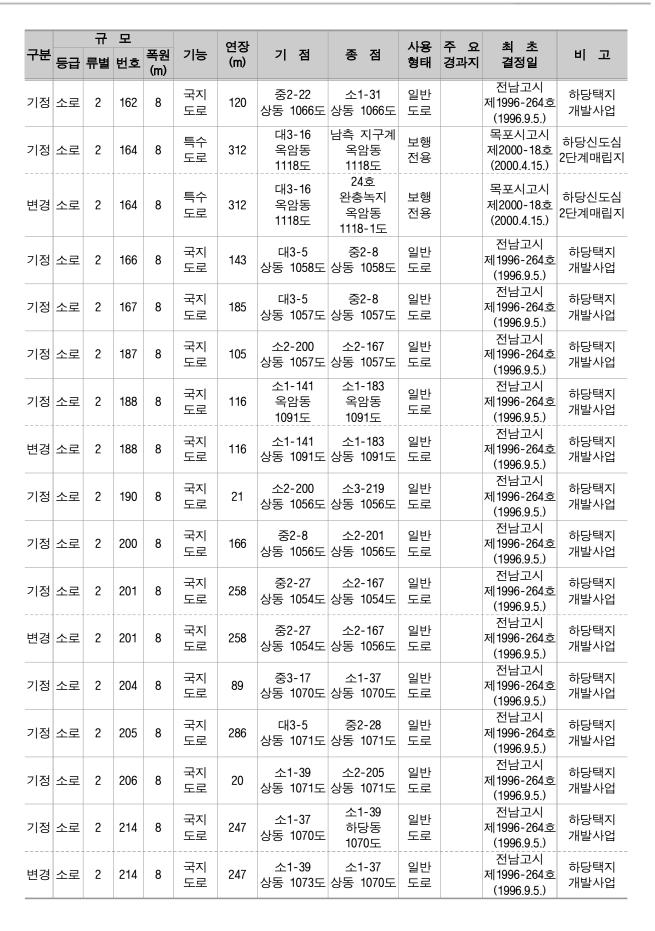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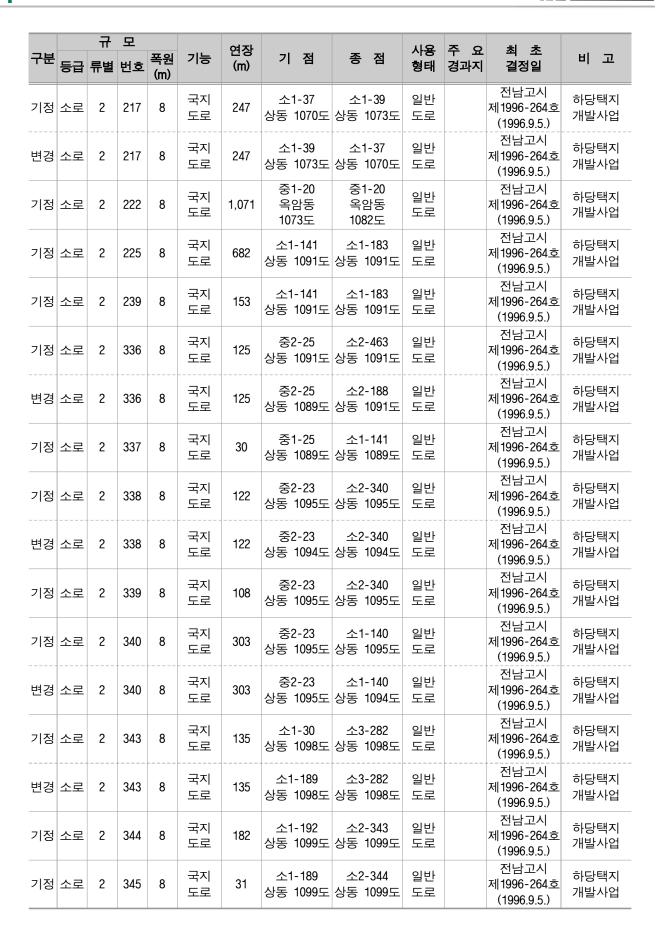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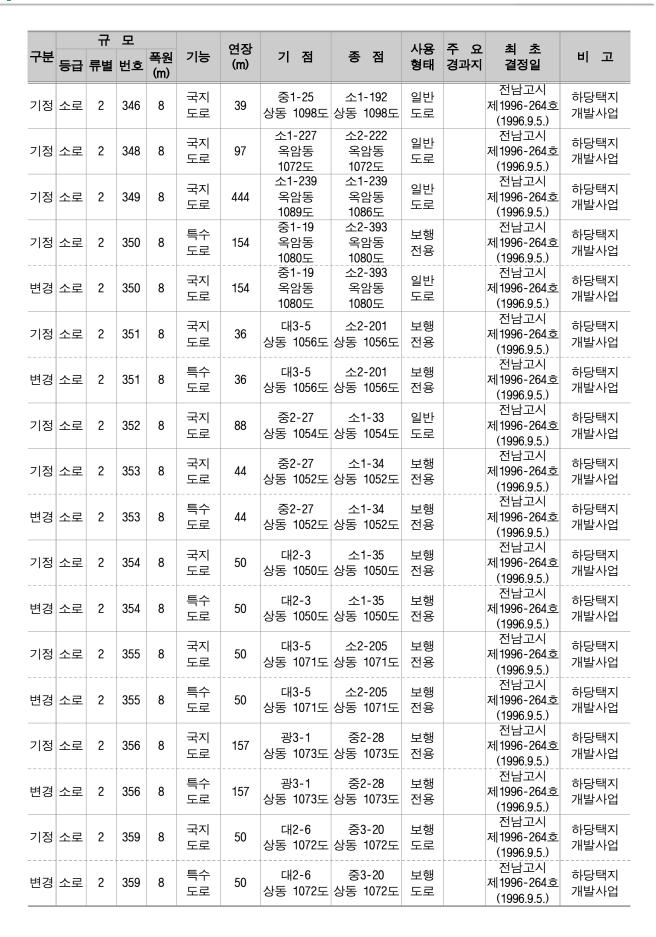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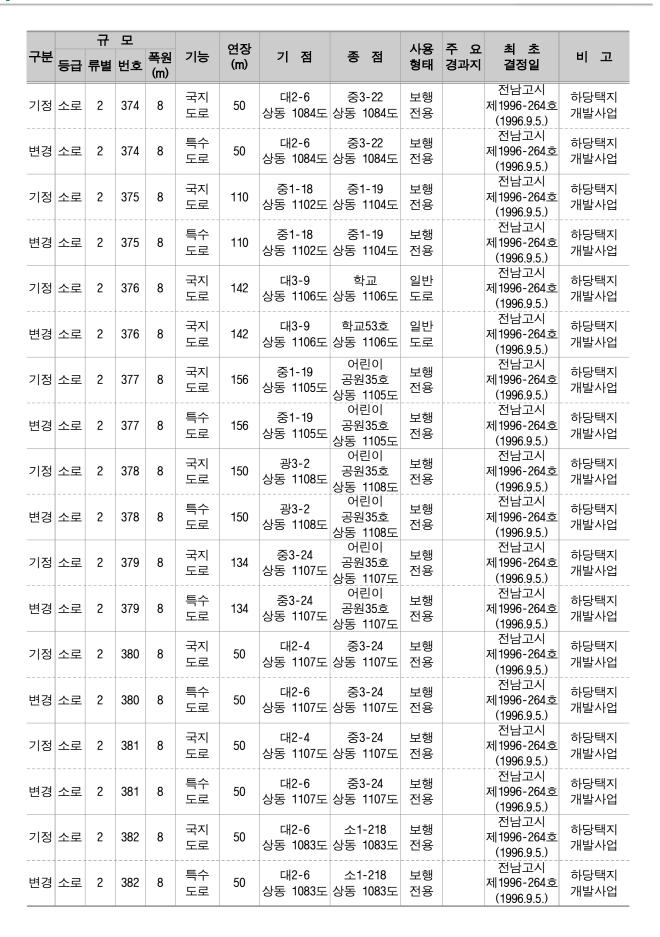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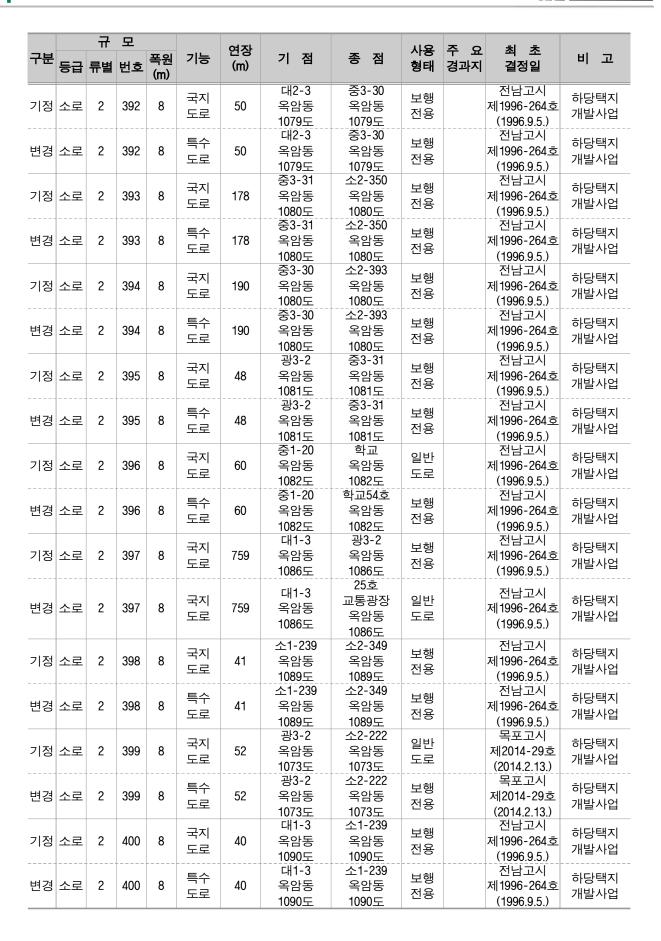
		규 모				어지			110	× 0	치 ㅎ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362	8	국지 도로	160	대2-6 상동 1076도	대2-3 상동 1078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62	8	특수 도로	160	대2-6 상동 1076도	대2-3 상동 1078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66	8	국지 도로	394	23호광장 상동 1075도	10호광장 상동 860-1대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66	8	특 수 도로	394	23호광장 상동 1075도	10호광장 상동 860-1대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67	8	국지 도로	161	23호광장 상동 860대	10호광장 상동 860-1대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67	8	특수 도로	161	23호광장 상동 860대	10호광장 상동 860-1대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68	8	국지 도로	353	대2-3 옥암동 1062도	중1-20 하당동 106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68	8	특수 도로	353	대2-3 옥암동 1062도	중1-20 옥암동 106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69	8	국지 도로	186	광3-1 옥암동 1065도	소2-404 옥암동 106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69	8	특수 도로	186	광3-1 옥암동 1065도	소2-404 옥암동 106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70	8	국지 도로	88	중1-20 옥암동 1067도	소2-222 옥암동 1067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70	8	국지 도로	88	중1-20 옥암동 1073도	소2-222 옥암동 1073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71	8	국지 도로	23	소1-131 옥암동 1067도	소2-222 옥암동 1067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71	8	국지 도로	23	소1-131 옥암동 1067도	소2-222 옥암동 1067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72	8	국지 도로	40	광3-1	소1-201 상동 1085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72	8	특수 도로	40	광3-1 상동 1085도	소1-201 상동 1085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73	8	국지 도로	166	중3-22 상동 1084도	어린이공원 상동 108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73	8	특수 도로	166	중3-22 상동 1084도	어린이 공원34호 상동 108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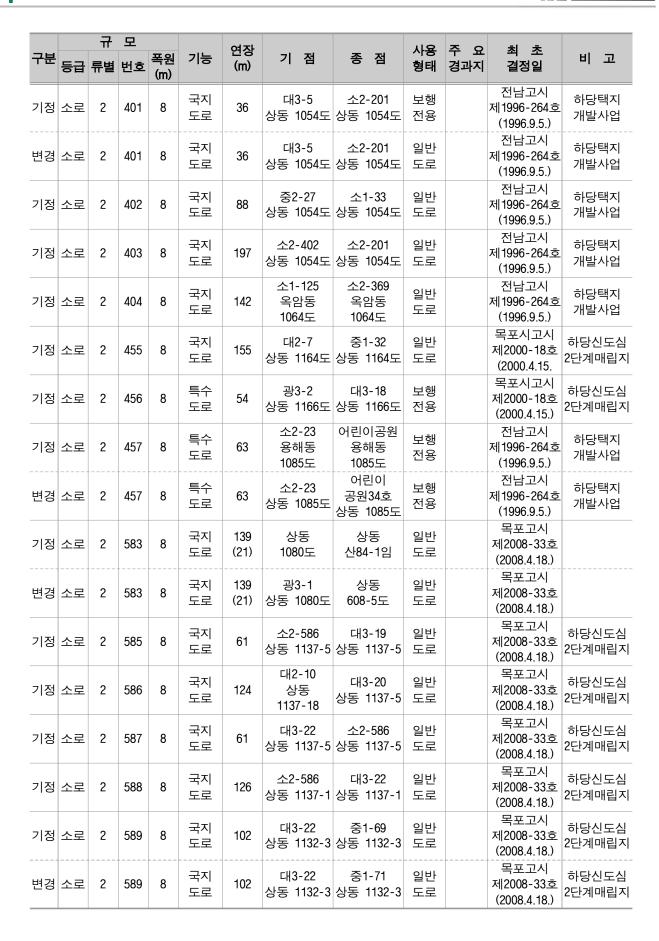






		규 모				어지			116	~ C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소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383	8	국지 도로	50	대2-3 상동 1081도	소1-219 상동 1081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83	8	특수 도로	50	대2-3 상동 1081도	소1-219 상동 1081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84	8	국지 도로	160	대2-4 상동 1113도	대2-3 상동 111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84	8	특수 도로	160	대2-6 상동 1113도	대2-3 상동 111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85	8	국지 도로	160	대2-4 상동 1113도	대2-3 상동 111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85	8	특수 도로	160		대2-3 상동 111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86	8	국지 도로	51	대2-3 옥암동 1069도	중3-28 옥암동 1069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86	8	특수 도로	51	대2-3 옥암동 1069도	중3-28 옥암동 1069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87	8	국지 도로	160	중3-28 옥암동 1069도	어린이공원 옥암동 1069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87	8	특수 도로	160	중3-28 옥암동 1069도	어린이 공원39호 옥암동 1069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88	8	국지 도로	161	광2-1 옥암동 1070도	어린이공원 옥암동 1070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88	8	특수 도로	161	광3-1 옥암동 1070도	어린이 공원39호 옥암동 1070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89	8	국지 도로	148	중1-20 옥암동 1072도	소2-222 옥암동 1072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89	8	특수 도로	148	중1-20 옥암동 1072도	소2-222 옥암동 1072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90	8	특수 도로	110	중1-18 옥암동 1076도	중1-19 옥암동 1078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2	391	8	국지 도로	50	대2-3 옥암동 1079도	중3-30 옥암동 1079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2	391	8	특수 도로	50	대2-3 옥암동 1079도	중3-30 옥암동 1079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규	모			_!						
구분	등급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590	8	국지 도로	102	대3-22 상동 1131-2	중1-70 상동 1131-2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소로	2	590	8	국지 도로	102	대3-22 상동 1131-2	중1-72 상동 1131-2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1	8	국지 도로	126	소2-595 상동 1139-1	대3-22 상동 1139-1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소로	2	591	8	국지 도로	126	소2-594 상동 1139-1	대3-22 상동 1139-1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2	8	국지 도로	100	소2-591 상동 1139-17	대3-23 상동 1139-1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소로	2	592	8	국지 도로	100	소2-594 상동 1139-26	대3-23 상동 1139-1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3	8	국지 도로	19	소2-592 상동 1139-19	대3-22 상동 1139-1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4	8	국지 도로	94	대2-11 상동 1139-19	소2-592 상동 1139-1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5	8	국지 도로	51	소2-594 상동 1139-19	소2-596 상동 1139-1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6	8	국지 도로	106	중3-46 상동 1139-19	소2-592 상동 1139-1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7	8	국지 도로	18	소2-596 상동 1139-19	대3-25 상동 1139-1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8	8	국지 도로	123	대3-25 상동 1129-21	중1-70 상동 1129-21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소로	2	598	8	국지 도로	123	대3-25 상동 1129-21	중1-72 상동 1129-21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599	8	국지 도로	41	소2-600 상동 1129-21	소2-598 상동 1129-21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600	8	국지 도로	102	중3-45 상동 1129-21	대3-24 상동 1129-21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2	601	8	국지 도로	40	대2-11 상동 1144-9	소3-388 상동 1144-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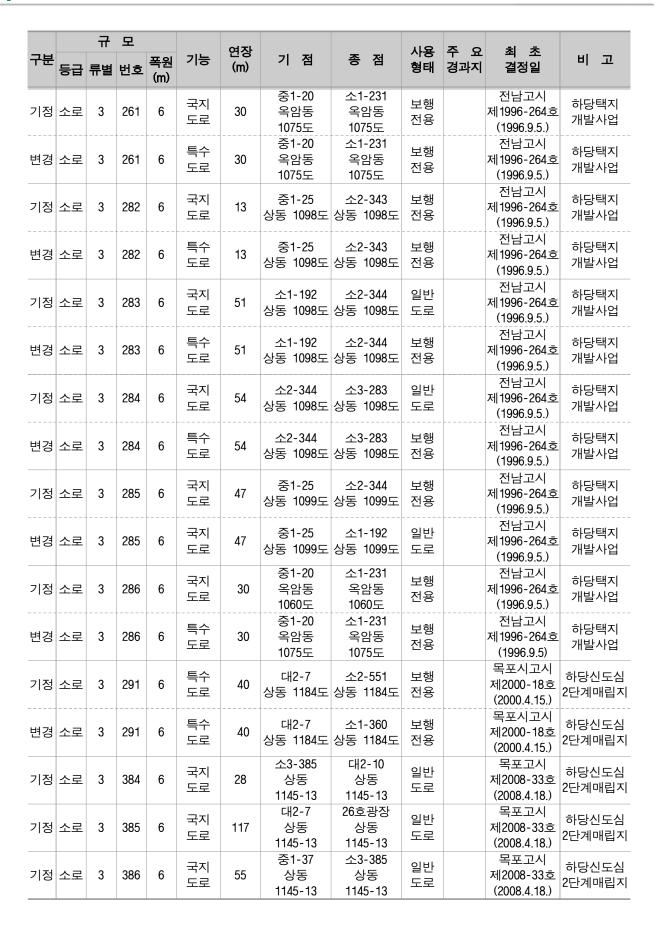
		규	모			_ ·-·						
구분	등급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602	8	국지 도로	62	대2-4 상동 1137-18	소2-586 상동 1137-18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소로	2	602	8	국지 도로	62	소2-588 상동 1137-18	소2-586 상동 1137-18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소	:계	113	3개 노	-선		15,850 (15,531)						
기정	소로	3	4	6	특수 도로	40	대2-7 옥암동 1110도	소2-547 옥암동 1110도	보행 전용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소로	3	4	6	특수 도로	40	대2-7 옥암동 1110도	소1-324 옥암동 1110도	보행 전용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3	83	6	특수 도로	40	대2-7 상동 1186도	소2-546 상동 1186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소로	3	83	6	특수 도로	40	대2-7 상동 1186도	소1-359 상동 1186도	보행 전용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3	162	4	국지 도로	117	중2-8 상동 1048도	소2-166 상동 811-1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162	4	국지 도로	117	중2-8 상동 1048도	소2-166 상동 811-14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163	4	국지 도로	153	중1-25 상동 1059도	소1-32 상동 814-9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163	4	국지 도로	153	중1-25 상동 1059도	소1-32 상동 814-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164	4	국지 도로	170	대3-5 옥암동 949-23도	소1-135 옥암동 949-23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164	4	국지 도로	170	대3-5 옥암동 949-23도	소1-135 옥암동 949-23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170	4	국지 도로	163	대3-5 옥암동 951-18도	소1-135 옥암동 951-18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170	4	국지 도로	163	대3-5 옥암동 951-18도	소1-135 옥암동 951-18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179	6	국지 도로	107	중2-8 상동 1055도	소3-236 상동 105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179	6	특수 도로	107	중2-8 상동 1055도	소3-236 상동 1055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규	모			al TI				T 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86	6	보행 전용	30	중1-25 상동 1060도	소2-31 상동 1060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186	6	국지 도로	30	중1-25 상동 1060도	소2-31 상동 1060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195	6	국지 도로	36	중2-22 상동 1062도	소2-160 상동 1062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195	6	특수 도로	36	중2-22 상동 1062도	소2-160 상동 1062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03	6	국지 도로	35	소2-52 상동 1061도	소2-109 상동 1061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03	6	특수 도로	35	소2-52 상동 1061도	소2-109 상동 1061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13	6	국지 도로	113	광2-1 상동 1066도	중3-12 상동 106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13	6	특수 도로	113	광3-1 상동 1066도	중3-12 상동 106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19	6	국지 도로	21	소2-187 상동 1056도	소2-190 상동 105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19	6	특수 도로	21	소2-187 상동 1056도	소2-190 상동 105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36	6	국지 도로	37	소1-33 상동 1055도	소2-200 상동 1055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연산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36	6	특수 도로	37	소1-33 상동 1055도	소2-200 상동 1055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37	6	국지 도로	16	중1-23 상동 1051도	소1-35 상동 1051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37	6	특수 도로	16	중1-23 상동 1050도	소1-35 상동 1050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38	6	국지 도로	31	대3-5 상동 1052도	소1-34 상동 1052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38	6	특수 도로	31	대3-5 상동 1052도	소1-34 상동 1052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구분	등급	규 류별	모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239	6	국지 도로	50	대3-9 상동 1070도	소1-37 상동 1070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39	6	특수 도로	50	대3-9 상동 1070도	소1-37 상동 1070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42	6	국지 도로	129	소1-140 상동 1091도	소2-463 상동 1091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42	6	특수 도로	129	소1-140 상동 1091도	소2-188 상동 1091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43	6	국지 도로	60	중2-23 상동 1092도	소2-336 상동 1092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43	6	특수 도로	60	중2-23 상동 1092도	소2-336 상동 1092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44	6	국지 도로	119	광2-1 상동 1094도	소1-186 상동 109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44	6	특수 도로	119	광3-1 상동 1086도	소1-186 상동 1094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52	6	국지 도로	50	대3-9 상동 1096도	소1-189 상동 109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52	6	특수 도로	50	대3-9 상동 1096도	소1-189 상동 109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56	6	특수 도로	92	18호광장 상동 1096도	소1-189 상동 109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56	6	특수 도로	92	18호광장 상동 1097도	소1-189 상동 109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58	6	특수 도로	92	18호 광장 상동 1096도	소1-189 상동 109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58	6	특수 도로	92	18호 광장 상동 1097도	소1-189 상동 1096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소로	3	260	6	국지 도로	30	중1-20 옥암동 1075도	소1-231 옥암동 1075도	보행 전용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소로	3	260	6	국지 도로	30	중1-20 옥암동 1075도	소1-231 옥암동 1075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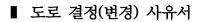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어 당 형태	경과지		비고
기정	소로	3	387	6	국지 도로	44	소3-388 상동 1144-9	중1-37 상동 1144-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3	388	6	국지 도로	71	대2-7 상동 1144-9	소2-591 상동 1144-9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3	389	6	국지 도로	88	대3-21 상동 1123-9	대2-8 상동 1123-7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소로	3	394	6	국지 도로	40 (28)	중2-9 상동 266-1도	중2-8 상동 239-2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9-85호 (2009.11.5.)	
변경	소로	3	394	6	국지 도로	40 (28)	대2-3 상동 1041-9도	23호 하수도 상동 226-7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9-85호 (2009.11.5.)	
소	소계 37개 노선			2,439 (2,427)								

^{※ ()}는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누락된 도로 시설은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사항 반영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	광로3-1	□변경 - 기정 : 산정동 44-41도, 대1-3, 옥암동 1068도 - 변경 : 산정동 1050-123도, 11호광장, 옥암동 1060구	□기·종점 표기 정정
대로1-1	대로1-1	□변경 - 기정 : 대3-1, 동명동 419대, 대양동 교통광장, 대양동 78-4도 - 변경 : 대3-31, 산정동 1632-2도, 32호광장, 대양동 267도	
대로2-3	대로2-3	□변경 - 기정 : 용해동 336-4도 - 변경 : 용해동 348-1도	□기점 표기 정정
대로2-7	대로2-7	□변경 - 기정 : 상동 1106도, 옥암동 1106도 - 변경 : 상동 1162도, 옥암동 1105도	
대로2-8	대로2-8	□변경 - 기정 : 중3-43 - 변경 : 중1-71	□종점 표기 정정
대로2-9	대로2-9	ㅁ변경 - 기정 : 중3-44 - 변경 : 중1-72	□종점 표기 정정
대로2-10	대로2-10	□변경 - 기정 : 대2-1, 중3-41 - 변경 : 대2-7, 소2-586	□기·종점 표기 정정
대로2-11	대로2-11	□변경 - 기정 : 대2-1, 중3-46 - 변경 : 대2-7, 소2-594	□기·종점 표기 정정
대로3-17	대로3-17	□변경 - 기정 : 상동 1106도, 상동 1116도 - 변경 : 상동 1177도, 상동 1177도	□기·종점 표기 정정
대로3-18	대로3-18	□변경 - 기정 : 중3-43 - 변경 : 중1-71	□종점 표기 정정
대로3-19	대로3-19	□변경 - 기정 : 중3-43 - 변경 : 중1-71	□기점 표기 정정
대로3-21	대로3-21	□변경 - 기정 : 중3-43, 중3-44 - 변정 : 중1-71, 중1-72	□기·종점 표기 정정
대로3-22	대로3-22	□변경 - 기정 : 중3-44, 중3-43 - 변정 : 중1-72, 중1-71	□기·종점 표기 정정
대로3-24	대로3-24	□변경 - 기정 : 중3-44 - 변경 : 중1-72	□기점 표기 정정
대로3-25	대로3-25	□변경 - 기정 : 중3-44 - 변경 : 중1-72	□종점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8	중로1-18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1-19	중로1-19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1-20	중로1-20	□변경 - 기정 : 대3-28, 석현동 1175대 - 변경 : 대3-27, 석현동 1030도	□종점 표기 정정
중로1-21	중로1-21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1-22	중로1-22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대2-3, 옥암동 1103도 - 변경 : 특수도로, 소1-244, 옥암동 1077도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집분산도로 → 특수도로) 및 종점 표기 정정
중로1-23	중로1-23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소2-366 - 변경 : 특수도로, 소1-84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집분산도로 → 특수도로) 및 종점 표기 정정
중로1-24	중로1-24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집분산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중로1-25	중로1-25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대3-5, 상동 1090도 - 변경 : 집산도로, 대3-9, 상동 1100도	□도로 기능 및 기·종점 표기 정정
중로1-32	중로1-32	□변경 - 기정 : 상동 1165도 - 변경 : 용해동 1037-1도	□종점 표기 정정
중로1-33	중로1-33	□변경 - 기정 : 중1-34 - 변경 : 소1-361	□종점 표기 정정
중로1-37	중로1-37	□ 변경 - 기정 : 대2-7, 상동1179도, 1호 미관광 장, 56m - 변경 : 대3-22, 상동1138도, 대2-7, 125m(증 69m)	□ 경관광장 축소 및 도로사용 현황에 따라 연장 및 기·종점표기 정정
중로1-53	중로1-53	□변경 - 기정 : 대3-17 - 변경 : 대2-7	□기점 표기 정정
중로1-68	중로1-68	□변경 - 기정 : 상동 1045철 - 변경 : 상동 1045-3도	□종점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8	중로2-8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2-22	중로2-22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2-23	중로2-23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광2-1 - 변경 : 집산도로, 광3-1	ㅁ도로 기능 및 기점 표기 정정
중로2-25	중로2-25	□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2-26	중로2-26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2-27	중로2-27	□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2-28	중로2-28	□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상동 1070도 - 변경 : 집산도로, 상동 1072도	ㅁ도로 기능 및 기점 표기 정정
중로2-29	중로2-29	□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2-37	중로2-37	□변경 - 기정 : 대2-1, 중1-34, 상동 1163도 - 변경 : 대2-7, 소1-362, 상동 1181-4도	□기·종점 표기 정정
중로2-38	중로2-38	□변경 - 기정 : 상동 1181도, 중1-34, 상동 1181도 - 변경 : 상동 1181-1도, 소1-363, 상동 1181-1도	□기·종점 표기 정정
중로2-59	중로2-59	□ 변경 - 기정 : 소2-569 - 변경 : 소1-290, 상동 560-3도	ㅁ종점 표기 정정
중로3-16	중로3-16	□변경 - 기정 : 상동 1051도, 중2-17 - 변경 : 상동 1050도, 중2-27	□기·종점 표기 정정
중로3-17	중로3-17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3-20	중로3-20	□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광2-1, 상동 1074도 - 변경 : 집산도로, 광3-1, 상동 1072도	□도로 기능 및 기·종점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1	중로3-21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광2-1 - 변경 : 집산도로, 광3-1	ㅁ도로 기능 및 기점 표기 정정
중로3-22	중로3-22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3-24	중로3-24	□변경 - 기정 : 상동 1107도 - 변경 : 상동 1108도	□기점 표기 정정
중로3-25	중로3-25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3-28	중로3-28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광2-1 - 변경 : 집산도로, 광3-1	ㅁ도로 기능 및 기점 표기 정정
중로3-29	중로3-29	□변경 - 기정 : 옥암동 1076도 - 변경 : 옥암동 1078도	ㅁ종점 표기 정정
중로3-30	중로3-30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3-31	중로3-31	□변경 - 기정 : 집분산도로 - 변경 : 집산도로	ㅁ도로 기능 표기 정정
중로3-41	중로3-41	□변경 - 기정 : 대2-7, 상동 1179도 - 변경 : 중1-53, 상동 1178도	□기점 표기 정정
중로3-45	중로3-45	□변경 - 기정 : 상동 1180도 - 변경 : 소2-600, 상동 1180도	ㅁ종점 표기 정정
중로3-49	중로3-49	□변경 - 기정 : 소1-263 - 변경 : 소2-27	ㅁ종점 표기 정정
중로3-50	중로3-50	□변경 - 기정 : 대2-7, 소1-263 - 변경 : 소2-27, 대2-7	□기·종점 표기 정정
중로3-125	중로3-125	□변경 - L = 14m(변경없음) - B = 185m(변경없음)	□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 조성된 도로 선형 변경
소로1-4	소로1-4	□변경 - 기정 : 상동 1181도, 중1-34, 상동 1181도 - 변경 : 상동 1181-2도, 소1-363, 상동 1181-2도	ㅁ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13	소로1-13	□변경 - 기정 : 옥암동1115도, 대32 옥암동 1115도 - 변경 : 옥암동 1116도, 대3-16, 옥암동 1116도	ㅁ기ㆍ종점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8	소로1-28	□변경 - 기정 : 광2-1, 상동 1063도, 상동1063도 - 변경 : 광3-1, 상동 1080도, 상동 1067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29	소로1-29	□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31	소로1-31	ㅁ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32	소로1-32	□변경 - 기정 : 상동 1068도 - 변경 : 상동 1067도	□종점 표기 정정
소로1-35	소로1-35	ㅁ변경 - 기정 : 대2-3, 중3-16 - 변경 : 중3-16, 대2-3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37	소로1-37	ㅁ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38	소로1-38	□변경 - 기정 : 상동 1070도 - 변경 : 상동 1074도	□기점 표기 정정
소로1-39	소로1-39	ㅁ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84	소로1-84	□변경 - 기정 : 상동 1076도 - 변경 : 상동 1078도	□종점 표기 정정
소로1-131	소로1-131	□변경 - 기정 : 광2-1, 옥암동 1065도 - 변경 : 광3-1, 옥암동 1068도	□기점 표기 정정
소로1-132	소로1-132	ㅁ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133	소로1-133	□변경 - 기정 : 옥암동 1076도, 옥암동 1078 도 - 변경 : 상동 1076도, 상동 1078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134	소로1-134	□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136	소로1-136	□변경 - 기정 : 광2-1, 상동동 1087도, 상동동 1087도 - 변경 : 광3-1, 상동 1087도, 상동 1087도	□기·종점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39	소로1-139	□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140	소로1-140	□변경 - 기정 : 상동 1087도, 상동 1086도 - 변경 : 상동 1086도, 상동 1087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168	소로1-168	□변경 - 기정 : 산정동 1091도, 산정동 1091 도 - 변경 : 상동 1089도, 상동 1092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191	소로1-191	□변경 - 기정 : 상동 530-1대, 상동 526전 - 변경 : 상동 1098도, 상동 1098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192	소로1-192	□변경 - 기정 : 상동 1098도 - 변경 : 상동 1099도	□종점 표기 정정
소로1-195	소로1-195	□변경 - 기정 : 상동 1181도, 중1-34, 상동 1181도 - 변경 : 상동 1181-3도, 소1-362, 상동 1181-3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198	소로1-198	ㅁ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199	소로1-199	ㅁ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00	소로1-200	□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14	소로1-214	□변경 - 기정 : 중1-19, 소1-211 - 변경 : 소1-211, 중1-19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215	소로1-215	□변경 - 기정 : 대2-4 - 변경 : 대2-6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24	소로1-224	ㅁ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25	소로1-225	ㅁ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26	소로1-226	□변경 - 기정 : 옥암동 1070도 - 변경 : 옥암동 1072도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27	소로1-227	□변경 - 기정 : 광2-1 - 변경 : 광3-1	□기점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28	소로1-228	□변경 - 기정 : 옥암동 1087도 - 변경 : 옥암동 1086도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30	소로1-230	□변경 - 기정 : 옥암동 1077도, 옥암동 1077 도 - 변경 : 옥암동 1078도, 옥암동 1078 도	□기ㆍ종점 표기 정정
소로1-233	소로1-233	□변경 - 기정 : 중1-18 - 변경 : 중1-20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34	소로1-234	□변경 - 기정 : 중1-19 - 변경 : 중1-20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39	소로1-239	□변경 - 기정 : 광3-2 - 변경 : 25호 교통광장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42	소로1-242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1-243	소로1-24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1-244	소로1-244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1-245	소로1-245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표기 정정
소로1-246	소로1-246	□변경 - 기정 : 옥암동 1086도 - 변경 : 소1-331, 소2-397, 옥암동 1089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260	소로1-260	ㅁ변경 - 기정 : 대3-17 - 변경 : 대2-7	□기점 표기 정정
소로1-295	소로1-295	□변경 - 기정 : 451 - 변경 : 451(28)	ㅁ도로 연장 표기 변경
소로1-324	소로1-324	□변경 - 기정 : 중2-37, 상동 1185도, 소1-195, 상동 1185도 - 변경 : 대3-16, 옥암동 1112도, 중2-37, 옥암동 1111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1-325	소로1-325	□변경 - 기정 : 상동1112-1, 근린공원11, 1,105m - 변경 : 옥암동 1112-1도, 중3-125, 1,223m(증 118m)	미기·종점 표기 정정 및 도로사용 현황에 따리 도로 연장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36	소로2-336	□변경 - 기정 : 상동 1091도, 소2-463 - 변경 : 상동 1089도, 소2-188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2-338	소로2-338	□변경 - 기정 : 상동 1095도, 상동 1095도 - 변경 : 상동 1094도, 상동 1094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2-340	소로2-340	□변경 - 기정 : 상동 1095도 - 변경 : 상동 1094도	□종점 표기 정정
소로2-343	소로2-343	□변경 - 기정 : 소1-30 - 변경 : 소1-189	□기점 표기 정정
소로2-350	소로2-350	□변경 - 기정 : 특수도로, 보행전용 - 변경 : 국지도로,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특수도로 → 국지도로) 및 사용형태(보행전용 → 일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51	소로2-351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53	소로2-35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54	소로2-354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55	소로2-355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56	소로2-356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59	소로2-359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62	소로2-362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66	소로2-366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67	소로2-367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68	소로2-368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하당동 1064도 - 변경 : 특수도로, 옥암동 1064도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종점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69	소로2-369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70	소로2-370	□변경 - 기정 : 옥암동 1067도, 옥암동 1067도, 보행전용 - 변경 : 옥암동 1073도, 옥암동 1073도,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및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2-371	소로2-371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일반도로	□차량 통행 동선 개선 필요에 의해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변경
소로2-372	소로2-372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73	소로2-37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어린이공원 - 변경 : 특수도로, 어린이공원34호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종점 표기 정정
소로2-374	소로2-374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75	소로2-375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76	소로2-376	□변경 - 기정 : 학교 - 변경 : 학교53호	□종점 표기 정정
소로2-377	소로2-377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78	소로2-378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79	소로2-379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80	소로2-380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대2-4 - 변경 : 특수도로, 대2-6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점 표기 정정
소로2-381	소로2-381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대2-4 - 변경 : 특수도로, 대2-6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점 표기 정정
소로2-382	소로2-382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83	소로2-38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84	소로2-384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대2-4 - 변경 : 특수도로, 대2-6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점 표기 정정
소로2-385	소로2-385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대2-4 - 변경 : 특수도로, 대2-6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점 표기 정정
소로2-386	소로2-386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87	소로2-387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어린이공원 - 변경 : 특수도로, 어린이공원39호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종점 표기 정정
소로2-388	소로2-388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광2-1, 어린이공원 - 변경 : 특수도로, 광3-1, 어린이공원39호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2-389	소로2-389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91	소로2-391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92	소로2-392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93	소로2-39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94	소로2-394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95	소로2-395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396	소로2-396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학교, 일반도로 - 변경 : 특수도로, 학교54호, 보행전용	□도로의 보행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사용형태(일반도로 → 보행전용), 종점 표기 정정
소로2-397	소로2-397	□변경 - 기정 : 광3-2, 보행전용 - 변경 : 25호 교통광장,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및 종점 표기 정정
소로2-398	소로2-398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99	소로2-399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일반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보행전용	□도로의 보행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사용형태(일반도로 → 보행전용) 표기 정정
소로2-400	소로2-400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2-401	소로2-401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표기 정정
소로2-457	소로2-457	□변경 - 기정 : 용해동 1085도, 어린이공원 - 변경 : 상동 1085도, 어린이공원 34호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2-583	소로2-583	□변경 - 기정 : 상동 산84-1임 - 변경 : 광3-1, 상동 608-5도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2-589	소로2-589	□변경 - 기정 : 중1-69 - 변경 : 중1-71	□종점 표기 정정
소로2-590	소로2-590	□변경 - 기정 : 중1-70 - 변경 : 중1-72	□종점 표기 정정
소로2-591	소로2-591	□변경 - 기정 : 소2-595 - 변경 : 소2-594	□기점 표기 정정
소로2-592	소로2-592	□변경 - 기정 : 소2-591, 상동 1139-17 - 변경 : 소2-594, 상동 1139-26	□기점 표기 정정
소로2-598	소로2-598	□변경 - 기정 : 중1-70 - 변경 : 중1-72	□종점 표기 정정
소로2-602	소로2-602	□변경 - 기정 : 대2-4 - 변경 : 소2-588	□기점 표기 정정
소로3-4	소로3-4	□변경 - 기정 : 소2-547 - 변경 : 소1-324	□종점 표기 정정
소로3-83	소로3-83	□변경 - 기정 : 소2-546, 일반도로 - 변경 : 소1-359, 보행전용	□도로의 보행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일반도로 → 보행전용) 및 종점 표기 정정
소로3-162	소로3-162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63	소로3-163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표기 정정
소로3-164	소로3-164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표기 정정
소로3-170	소로3-170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표기 정정
소로3-179	소로3-179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일반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보행전용	□도로의 보행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사용형태(일반도로 → 보행전용) 표기 정정
소로3-186	소로3-186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국지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표기 정정
소로3-195	소로3-195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03	소로3-20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13	소로3-21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광2-1 - 변경 : 특수도로, 광3-1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점 표기 정정
소로3-219	소로3-219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36	소로3-236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37	소로3-237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상동 1051도, 상동 1051도 - 변경 : 특수도로, 상동 1050도, 상동 1050도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3-238	소로3-238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39	소로3-239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42	소로3-242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소2-463 - 변경 : 특수도로, 소2-188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종점 표기 정정
소로3-243	소로3-24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44	소로3-244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광2-1, 상동 1094도 - 변경 : 특수도로, 광3-1, 상동 1086도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점 표기 정정
소로3-252	소로3-252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56	소로3-256	□변경 - 기정 : 상동 1096도 - 변경 : 상동 1097도	□기점 표기 정정
소로3-258	소로3-258	□변경 - 기정 : 상동 1096도 - 변경 : 상동 1097도	□기점 표기 정정
소로3-260	소로3-260	□변경 - 기정 : 보행전용 - 변경 : 일반도로	교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일반도로 변경
소로3-261	소로3-261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82	소로3-282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표기 정정
소로3-283	소로3-283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일반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보행전용	□도로의 보행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사용형태(일반도로 → 보행전용) 표기 정정
소로3-284	소로3-284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일반도로 - 변경 : 특수도로, 보행전용	□도로의 보행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사용형태(일반도로 → 보행전용) 표기 정정
소로3-285	소로3-285	□변경 - 기정 : 소2-344, 보행전용 - 변경 : 소1-192, 일반도로	□도로의 일반도로 사용 현황에 따라 사용형태 (보행전용 → 일반도로) 및 종점 표기 정정
소로3-286	소로3-286	□변경 - 기정 : 국지도로, 옥암동 1060도, 옥암동 1060도 - 변경 : 특수도로, 옥암동 1075도, 옥암동 1075도	□도로의 보행전용 사용 현황에 따라 기능 (국지도로 → 특수도로) 및 기·종점 표기 정정
소로3-291	소로3-291	ㅁ변경 - 기정 : 소2-551 - 변경 : 소1-360	□종점 표기 정정
소로3-394	소로3-394	□변경 - 기정 : 중2-9, 상동 266-1도, 중2-8, 상동 239-2도 - 변경 : 대2-3, 상동 1041-9도, 23호 하수도, 상동 226-7도	ㅁ기ㆍ종점 표기 정정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74	도면표시	HILLI	01 =1		면 적(㎡)		-1-거리이	
구분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4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781, 782	1,600	증)0.1	1,600.1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7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856-3, 857-3	1,198	-	1,198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8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869-3, 868-5	3,102	감)0.3	3,101.7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9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981, 982	1,516	감)0.4	1,515.6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10	노외주차장	목포시 옥암동 1013-3, 1015	1,408	증)0.1	1,408.1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11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1032, 1033	1,800	증)0.4	1,800.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16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1135	571.5	-	571.5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17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1136	748.4	감)30.0	718.4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18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1133	2,660.0	-	2,660.0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19	주차장	목포시 상동 1130	2,660.0	-	2,660.0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20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1127	673.4	-	673.4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21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1128	832.3	증)0.1	832.4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22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1156	1,395		1,395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23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1158	1,393		1,393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24	노외주차장	목포시 옥암동 1098-10	669.7	-	669.7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78	도면표시	비사미	위 치			면 적(m²)			ui ¬
구분	번 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86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803-1, 803-4번 지	목포시 상동 803-4 번지	394.5	감)394.5	-	전남고시 제2012-372호 (2012.11.5.)	
변경	87	노외주차장	목포시 상동 830, 830-1번 지	목포시 상동 830-1 번지	1,479.19	감)0.09	1,479.1	전남고시 제2012-372호 (2012.11.5.)	
기정	93	주차장	목포시 1060도		1,270	-	1,270	목포시고시 제2014-29호 (2014.2.13.)	
변경	111	노외주차장	목포시 옥암동 1100	목포시 옥암동 1100공 일원	3,120	-	3,120	목포시고시 제2020-125호 (2020.4.23.)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117	주차장	상동 9	09-4대	622	증)0.3	622.3	목포시고시 제2020-151호 (2020.5.28.)	
신설	140	주차장	옥암동	1075도	-	증)1,565	1,565	-	-
신설	141	주차장	상동 '	1138도	-	증)1,367	1,367	-	-
신설	142	주차장	상동 116	5도 일원	-	증)2,599	2,599		
	소계		227	ll소	29,112.99	증)5,106.71	34,219.7		

[※] 주차장 30호는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외로 기정에서 삭제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1,600㎡ - 변경 : 1,600.1㎡ (증 0.1㎡)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8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3,102㎡ - 변경 : 3,101.7㎡ (감 0.3㎡)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9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1,516㎡ - 변경 : 1,515.6㎡ (감 0.4㎡)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10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1,408㎡ - 변경 : 1,408.1㎡ (증 0.1㎡)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11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1,800㎡ - 변경 : 1,800.4㎡ (증 0.4㎡)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17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748.4㎡ - 변경 : 718.4㎡ (감 30㎡)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 신설 주차장 142호는 기 조성된 주차장 반영

[※] 주차장 117호는 목포시 고시 제2020-151호(2020.05.28.)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반영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노외주차장	□ 변경 - 기정 : 832.3㎡ - 변경 : 832.4㎡ (증 0.1㎡)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86	노외주차장	□폐지 - 위치 : 목포시 상동 803-4번지 - 면적 : 394.5㎡ → 0㎡ (감 394.5㎡)	□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계획에 따른 주차장 폐지
87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목포시 상동 830, 8301-번지 1,479.19㎡ - 변경 : 목포시 상동 830-1번지 1,479.1㎡(감 0.09㎡)	□주차장 위치(지번) 정정 □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111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목포시 옥암동 1100 - 변경 : 목포시 옥암동 1100공 일원	고주차장 위치(지번) 정정
117	노외주차장	□변경 - 기정 : 622㎡ - 변경 : 622.3㎡ (증 0.3㎡)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140	노외주차장	ㅁ신설 - 1,565㎡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예방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신설
141	노외주차장	ㅁ신설 - 1,367㎡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예방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신설
142	노외주차장	ㅁ신설 - 2,599㎡	□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 조성된 주차장 반영

다. 자동차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711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ol +l	면 적(㎡)			최초결정일	ш
十世	번 호	시설성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소설성일	비고
신설	8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목포시 옥암동 1060 일원	-	증)1,146	1,146	-	
	소겨		1개소		-	증)1,146	1,146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자동차	ㅁ신설	□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 주차 무질서 및 주민 민원을
	정류장	- 1,146㎡	해소하여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자동차정류장 신설



2) 공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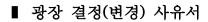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7_	도면표시	1 1 1	시설의	· 종류	위	치		면 적(m²)		리근건단이	
구분	번 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0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상동 1079일대	5,532	-	5,532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4.29.)	
변경	11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옥암동 1085일대	목포시 옥암동 1060일대	7,358 (7,182)	-	7,358 (7,182)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4.29.)	
기정	12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1100		6,380 (5,733)	-	6,380 (5,733)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4.29.)	
변경	16	광장	미관 광장	경관 광장	목포시 1051		1,814	-	1,81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17	광장	미관 광장	경관 광장	목포시 1082		4,817	-	4,817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18	광장	미관 광장	경관 광장	목포시 1100		1,565	-	1,56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19	광장	미관 광장	경관 광장	목포시 1111		4,495	-	4,49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폐지	20	광장	미관 광장	경관 광장	목포시 1075		1,565	감)1,565	-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21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1080		7,565	-	7,56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22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1080		5,288	-	5,288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23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1080		5,653	-	5,653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24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1068	일대	5,147	-	5,147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25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옥암동 1085일대	옥암동 1085-2		증)5,912 (증4,216)	21,603 (15,091)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변경	26	광장	미관 광장	경관 광장	목포시 성	목포시 상동 1138		감)2,750.4	1,350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 매립지
변경	27	광장	미관 광장	경관 광장	목3 상동 11		13,347	-	13,347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 매립지
	소계		147	개소			90,317.4 (84,678.4)	증)1,596.6 (감)99.4)	91,914 (84,579)		

^{※ ()}는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교통광장	□변경 - 기정 : 목포시 상동 1080일대 - 변경 : 목포시 상동 1079일대	ㅁ시설 위치(표기) 정정
11	교통광장	□ 변경 - 기정 : 목포시 옥암동 1085일대 - 변경 : 목포시 옥암동 1060일대	ㅁ시설 위치(표기) 정정
16	경관광장	□변경 - 기정 : 미관광장 - 변경 : 경관광장	ㅁ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명 정정
17	경관광장	□변경 - 기정 : 미관광장 - 변경 : 경관광장	ㅁ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명 정정
18	경관광장	□변경 - 기정 : 미관광장 - 변경 : 경관광장	ㅁ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명 정정
19	경관광장	□변경 - 기정 : 미관광장 - 변경 : 경관광장	ㅁ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명 정정
20	경관광장	□폐지 - 위치 : 목포시 옥암동 1075번지 일대 - 면적 : 1,565㎡ → 0㎡ (감 1,565㎡)	ㅁ주차장 신설에 따른 경관광장 폐지
25	교통광장	□ 변경 - 기정 : 목포시 옥암동 1085일대,	미시설 위치(표기) 정정 및 면적 오류 정정
26	경관광장	□변경 - 기정 : 4,100.4㎡ - 변경 : 1,350㎡(감 2,750.4㎡)	고주차장 신설에 따른 경관광장 축소
27	경관광장	□변경 - 기정 : 미관광장 - 변경 : 경관광장	ㅁ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명 정정

■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신설) 조서(안)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27	경관광장	상동 1157잡 일원	-	증)7,584	7,584	-	-

■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경관광장	□경관광장 부지 일부(7,584㎡)를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8]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부지를 활용한 입체적 개발(비도시계획시설 설치)로 경관광장 토지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공간적 범위 결정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서대	시설의	위	치	ı	면 적(m²)	원 중 경 저 O	ul ¬
十世	번 호	시설명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목포시 목포산업 단지 주변	대로 2-3호선변	22,265	-	22,265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4.29.)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국도 2호선변	대로 1-3호선변	11,803	증)2,801	14,604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4.29.)	농협 하나로마트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목포시 상동 1030, 1040번지	목포시 상동 1040일원	3,090	증)517	3,607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옥암동 1127일원		11,573	-	11,573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소계		4개소			48,731	증)3,318	52,049		

[※] 완충녹지 7호, 경관녹지 8호는 기존 누락된 시설 면적 반영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녹지	□변경 - 기정 : 목포시 목포산업단지 주변 - 변경 : 대로2-3호선변	ㅁ시설 위치(표기) 정정
7	녹지	□변경 - 기정 : 목포시 국도2호선변, 11,803㎡ - 변경 : 대로1-3호선변, 14,604㎡(증 2,801㎡)	□시설 위치(표기) 정정 □지적 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8	녹지	□변경 - 기정 : 목포시 상동 1030, 1040번지 3,090㎡ - 변경 : 목포시 상동 1040일원 3,607㎡(증 517㎡)	□시설 위치(지번) 정정 □지적 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 경관녹지 9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실효로 인해 기정에서 삭제[목포시 고시 제2020-184호(2020.7.1)]



다.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705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
구분	번 호	공원명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1	갓바위	근린공원		포시 상동 일원	807,511 (19,900)	감)10,945 (감10,945)		건설부고시 제1976-37호 (1976.3.27.)	
변경	12	부주산	근린공원	목포시 옥암동 1059번지	목포시 옥암동 1059번지 일원	862,662 (14,829)	-	862,662 (14,829)	건설부고시 제1976-37호 (1976.3.27.)	
변경	14	하당	근린공원		포시 981번지	18,374	증)0.4	18,374.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18	둥근	근린공원		포시 1021번지	14,094	증)0.1	14,094.1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20	신도심2 단계지구	근린공원	목포시 상동 1119-2	목포시 상동 1119-2일 원	21,326	-	21,326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변경	21	신도심2 단계지구	근린공원	목포시 옥암동 1100	목포시 옥암동 1100일원	10,606	-	10,606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30	하당1호	어린이 공원		목포시 상동 807번지		-	2,717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변경	31	하당2호	어린이 공원		포시 920번지	1,501	감)0.3	1,500.7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기정	32	하당3호	어린이 공원		포시)46번지	2,490	-	2,490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변경	33	하당4호	어린이 공원		포시 965번지	3,420	증)0.1	3,420.1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변경	34	하당5호	어린이 공원		포시 885번지	3,714	감)0.3	3,713.7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변경	35	하당6호	어린이 공원		포시 015번지	3,902	감)0.5	3,901.5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기정	39	하당7호	어린이 공원		포시 993번지	3,563	-	3,563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변경	40	하당8호	어린이 공원	목포시 옥암동 1025번지		3,585	증)0.1	3,585.1	목포시고시 제1996-5호 (1996.2.7.)	
변경	70	신도심2 단계지구	어린이 공원	목포시 옥암동 1119-1번 지	목포시 상동 1119-1번 지	2,060.8	-	2,060.8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기정	71	신도심2 단계지구	어린이 공원		포시 1104번지	1,821.7	-	1,821.7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의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7 11	급 도면표시 -		시설의	ol - 1		면 적(㎡)	윈도거지이	ul –	
구분	번 호	공원명	종 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96	이로공원	근린공원	목포시 상동 1045-4일원	77,521 (39,471)	-	77,521 (39,471)	전남고시 제2007-29호 (2007.4.5.)	
기정	113	용라	근린공원	갓바위 공원 북측	17,980 (5,900)	-	17,980 (5,900)	목포시고시 제2000-129호 (2000.7.5.)	
	소계		18개소			감)10,945.4 (감)10,945.4)			

^{※ ()}는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20120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갓바위	□변경 - 기정 : 807,511㎡(19,900㎡) - 변경 : 796,566㎡(8,955㎡) (감 10,945㎡)	고 가바위근린공원 내 지방정원 조성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근린공원 면적 감소
12	부주산	□ 변경 - 기정 : 목포시 옥암동 1059번지 - 변경 : 목포시 옥암동 1059번지 일원	ㅁ시설 위치(지번) 정정
14	하당	□변경 - 기정 : 18,374㎡ - 변경 : 18,374.4㎡ (증 0.4㎡)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18	둥근	□변경 - 기정 : 14,094㎡ - 변경 : 14,094.1㎡ (증 0.1㎡)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20	신도심 2단계지구	□ 변경 - 기정 : 목포시 상동 1119-2 - 변경 : 목포시 상동 1119-2일원	ㅁ시설 위치(지번) 정정
21	신도심 2단계지구	□ 변경 - 기정 : 목포시 옥암동 1100 - 변경 : 목포시 옥암동 1100일원	ㅁ시설 위치(지번) 정정
31	하당2호	□ 변경 - 기정 : 1,501㎡ - 변경 : 1,500.7㎡ (감 0.3㎡)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33	하당4호	□ 변경 - 기정 : 3,420㎡ - 변경 : 3,420.1㎡ (증 0.1㎡)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34	하당5호	□ 변경 - 기정 : 3,714㎡ - 변경 : 3,713.7㎡ (감 0.3㎡)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35	하당6호	□ 변경 - 기정 : 3,902㎡ - 변경 : 3,901.5㎡ (감 0.5㎡)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40	하당8호	□ 변경 - 기정 : 3,585㎡ - 변경 : 3,585.1㎡ (증 0.1㎡)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70	신도심 2단계지구	□변경 - 기정 : 목포시 옥암동 1119-1번지 - 변경 : 목포시 상동 1119-1번지	ㅁ시설 위치(지번) 정정

[※] 기정 공원의 면적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조서 반영



라.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711	도면표시	A I A I DH	위 치			면 적(m²)		거지이	ה וט
구분 번	번 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2	공공공지	옥암동 1023-1	옥암동 1023-2	70.8	-	70.8	목포시고시 제2018-150호 (2018.10.25.)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공공공지	□변경 - 기정 : 옥암동 1023-1 - 변경 : 옥암동 1023-2	ㅁ시설 위치(지번) 정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 <i>설</i> 종	설의 류	위	치	ŗ	면 적(m ⁸)	최초결정일	비고
	번 호	1120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
변경	2	공공청사		공용의 청사	목포시 976	상동 번지	3,247	증)0.4	3,247.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3	공공청사	근린공	공시설	목포시 809 ^년	상동 번지	1,003	감)0.4	1,002.6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폐지	4	공공청사	근린공	공시설	목포시 916	상동 번지	999	감)999	-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5	공공청사	근린공	공시설	목포시 975		1,265	감)0.5	1,264.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6	공공청사	근린공	공시설	목포시 상동 959번지	목포시 상동 959, 959-1번 지	1,504	감)0.4	1,503.6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7	공공청사	근린공	공시설	목포시 1022	옥암동 번지	1,018	증)0.4	1,018.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8	공공청사	소방서 등 2개소	공용의 청사	목포시 974 ^년	옥암동 번지	3,014	증)0.4	3,014.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9	공공청사	공용의	익청사	목포시 상동 972번지		5,536	감)0.6	5,535.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14	공공청사	공용9	의청사		옥암동 01	16,870.9	-	16,870.9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
소계			87	· 소			34,456.9	감)999.7	33,457.2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변경 - 기정 : 우체국, 3,247㎡ - 변경 : 공용의청사, 3,247.4㎡ (증 0.4㎡)	□시설의 종류 표기 정정 □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3	공공청사	□변경 - 기정 : 1,003㎡ - 변경 : 1,002.6㎡ (감 0.4㎡)	□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4	공공청사	□폐지 - 위치 : 목포시 상동 916번지 - 면적 : 999㎡ → 0㎡ (감 999㎡)	□ 공공청사 이전에 따라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공공청사 폐지
5	공공청사	□변경 - 기정 : 1,265㎡ - 변경 : 1,264.5㎡ (감 0.5㎡)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6	공공청사	□변경 - 기정 : 상동 959번지, 1,504㎡ - 변경 : 상동 959, 959-1번지, 1,503.6㎡ (감 0.4㎡)	□시설의 위치(지번) 정정 □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7	공공청사	□변경 - 기정 : 1,018㎡ - 변경 : 1,018.4㎡ (증 0.4㎡)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8	공공청사	□변경 - 기정 : 소방서 등 2개소, 3,014㎡ - 변경 : 공용의청사, 3,014.4㎡ (증 0.4㎡)	□시설의 종류 표기 정정 □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9	공공청사	□변경 - 기정 : 5,536㎡ - 변경 : 5,535.4㎡ (감 0.6㎡)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나.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원동경점이 -	비고
丁正	번 호	시설당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8	학교	초등학교	목포시 옥암동 1102번지	10,066.6	-	10,066.6	목포시고시 제2000-18호 (2000.4.15.)	하당신도심 2단계매립지의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기정	16	학교	초등학교	목포시 상동 887번지	9,500.5	-	9,500.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22	학교	초등학교	목포시 옥암동 966번지	10,001	감)0.1	10,000.9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23	학교	고등학교	목포시 옥암동 983번지	9,486	증)0.1	9,486.1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24	학교	중학교	목포시 옥암동 963번지	9,993	증)0.1	9,993.1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28	학교	중학교	목포시 상동 899번지	10,000	증)0.3	10,000.3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뒷중거지이	비고
十世	번 호	시설성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30	학교	초등학교	목포시 상동 820번지	10,000	증)0.1	10,000.1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53	학교	초등학교	목포시 상동 1017번지	10,001	증)0.2	10,001.2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54	학교	초등학교	목포시 옥암동 1024번지	10,000	증)0.4	10,000.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55	학교	유치원	목포시 상동 805번지	798	감)0.2	797.8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57	학교	유치원	목포시 상동 964번지	1,000	-	1,000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58	학교	중ㆍ고등학교	목포시 목포시 상동 상동 56번지 55번지	39,585.9	-	39,585.9 (7,46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소계		12개소		130,432.0	증)0.9	130,432.9 (98,312)		

^{※ ()}는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청호 초등학교	□변경 - 기정 : 10,001㎡ - 변경 : 10,000.9㎡ (감 0.1㎡)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23	제일여자 고등학교	□변경 - 기정 : 9,486㎡ - 변경 : 9,486.1㎡ (증 0.1㎡)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24	하당 중학교	□변경 - 기정 : 9,993㎡ - 변경 : 9,993.1㎡ (증 0.1㎡)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28	중앙여자 중학교	□ 변경 - 기정 : 10,000㎡ - 변경 : 10,000.3㎡ (증 0.3㎡)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30	하당 초등학교	□ 변경 - 기정 : 10,000㎡ - 변경 : 10,000.1㎡ (증 0.1㎡)	□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53	신흥 초등학교	□변경 - 기정 : 10,001㎡ - 변경 : 10,001.2㎡ (증 0.2㎡)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54	부영 초등학교	□ 변경 - 기정 : 10,000㎡ - 변경 : 10,000.4㎡ (증 0.4㎡)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55	유치원	□변경 - 기정 : 798㎡ - 변경 : 797.8㎡ (감 0.2㎡)	□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58	영흥 중 • 고등학교	□ 변경 - 기정 : 상동 56번지, 39,585.9㎡ - 변경 : 상동 55번지, 39,585.9㎡(7,465㎡)	□시설의 위치(지번) 정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면적 오기사항 정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76	도면표시	I I A I I I	위	치		면 적(㎡)		ə ə ə ə ə ə	ш
구분	번 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상동 번지	498	증)0.4	498.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2	사회복지시설		l 상동 번지	503	감)0.5	502.5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3	사회복지시설		l 상동 번지	500	감)0.2	499.8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기정	4	사회복지시설		l 상동 번지	500	-	500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7	장애인복지관		상동 3일원	1,603.5	증)601.8	2,205.3	전남고시 제2002-15호 (2002.2.14.)	
변경	8	노인종합 복지관	목포시 상동 942번지 외 5	u/II_/I	1,683.4	-	1,683.4	전남고시 제2002-15호 (2002.2.14.)	
	소:	계	67	H소	5,287.9	증)601.5	5,889.4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 변경 - 기정 : 498㎡ - 변경 : 498.4㎡ (증 0.4㎡)	ㅁ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오기사항 정정
2	사회복지시설	ㅁ변경 - 기정 : 503㎡ - 변경 : 502.5㎡ (감 0.5㎡)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오기사항 정정
3	사회복지시설	ㅁ변경 - 기정 : 500㎡ - 변경 : 499.8㎡ (감 0.2㎡)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오기사항 정정
7	장애인복지관	□ 변경 - 기정 : 1,603.5㎡ - 변경 : 2,205.3㎡ (증 601.8㎡)	□ 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계획에 따른 장애 인복지관 면적 증가
8	노인종합복지관	□ 변경 - 기정 : 상동 942번지 외 5 - 변경 : 상동 941-4, 942번지	ㅁ시설의 위치(지번) 정정



4)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74	도면표시	시시대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비고
구분	번 호	시설명	종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4	하천	소하천	석현동 667-20	석현동 667-20번지 일원	110,682	-	110,682 (95,915)	목포시고시 제2020-151호 (2020.5.28.)	삼향천

[※] 기존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조서 하천 1호는 폐지 - 목포시 고시 제2021-141호(2021.8.19.)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하천	□ 변경 - 기정 : 석현동 667-20, 110,682㎡ - 변경 : 석현동 667-20번지 일원, 110,682㎡(95,915㎡)	□시설의 위치(지번) 정정 □하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면적 오기사항 정정

5)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711	도면표시	A I A I EH	위	치		면 적(㎡)			ul –
구분	번 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2	가압펌프장		포시 020번지	3,053	증)0.4	3,053.4	전남고시 제1996-264호 (1996.9.5.)	하당택지 개발사업
변경	11	하당펌프장	옥암동 1045-10 대	옥암동 1060번지 일원	2,446	-	2,446	목포시고시 제2007-42호 (2007.5.11.)	
기정	18	하수도		l 상동 지 일원	1,975	-	1,975	목포시 고시 제2014-44호 (2014.2.27.)	대로2-3호선 중복결정 (지하)
기정	19	하수도		l 상동 선지 일원	6,271.5	-	6,271.5	목포시 고시 제2014-44호 (2014.2.27.)	근린공원96 중복결정 (지하)
	소계		47	ポ소	13,745.5	증)0.4	13,7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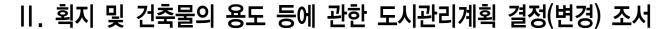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시유
2	가압펌프장	□변경 - 기정 : 3,053㎡ - 변경 : 3,053.4㎡ (증 0.4㎡)	고지적면적에 맞춰 면적 정정
11	하당펌프장	□변경 - 기정 : 옥암동 1045-10대 - 변경 : 옥암동 1060번지 일원	□시설의 위치(지번) 정정

[※] 하천 4호는 목포시 고시 제2020-151호(2020.05.28.)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반영

^{※ ()}는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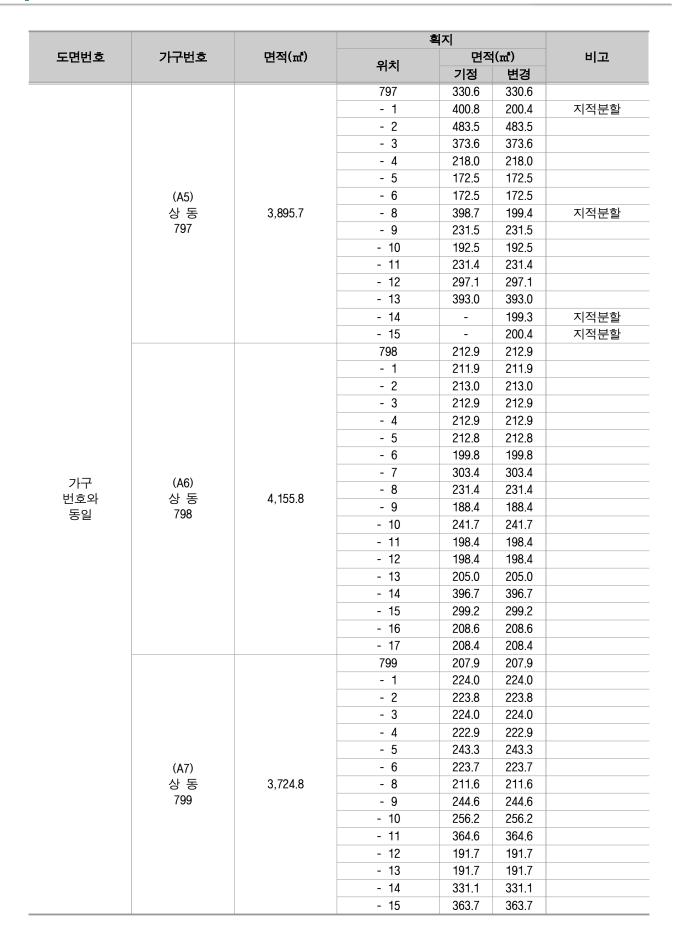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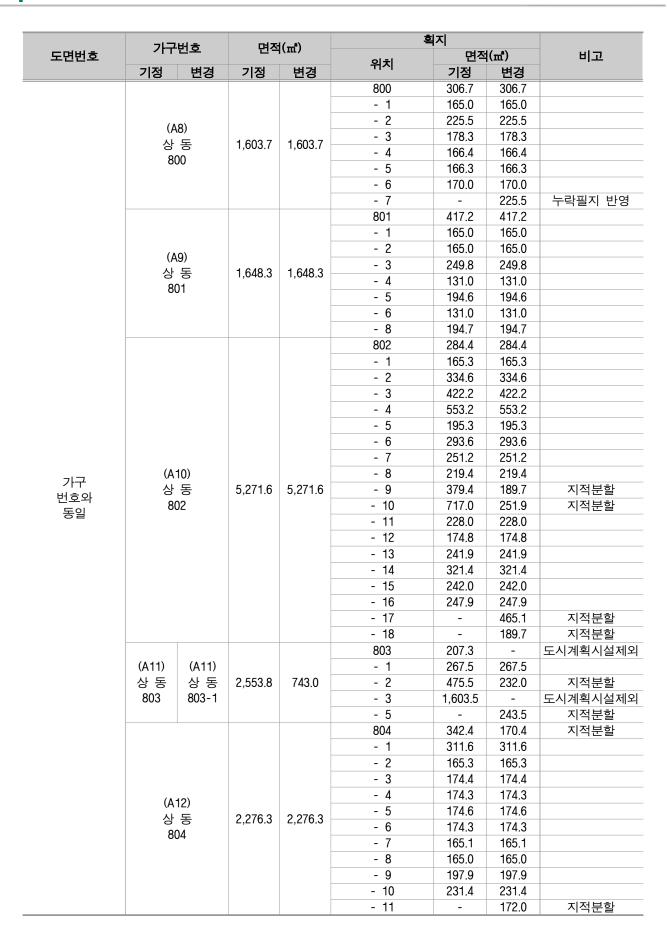
1.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J-I/ A)	Ş	HID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793	328.1	
			- 1	222.5	
			- 2	165.0	
	(A1)		- 3	455.2	
	상 동	2,302.6	- 4	288.4	
	793		- 6	231.5	
			- 7	52.6	
			- 8	178.7	
			- 9	380.6	
			794	175.5	
			- 1	191.7	
			- 2	287.7	
			- 3	165.4	
	(A2)	-	- 4	327.8	
	상 동	2,256.8	- 5	115.4	
	794		- 6	350.8	
			- 7	330.6	
		3,153.2	- 8	251.9	
			- 9	60.0	
			795	165.0	
	(A3)		- 1	165.0	
			- 2	165.0	
가구			- 3	264.7	
번호와					
동일			- 4	264.7	
	상 동		- 5	248.8	
	795		- 6	248.8	
			- 7	366.0	
			- 8	268.3	
			- 10	376.4	
			- 11	356.0	
			- 13	264.5	
			796	263.8	
			- 1	190.7	
			- 2	173.5	
			- 3	165.3	
			- 4	340.4	
			- 5	165.0	
	(A4)		- 6	245.2	
	상 동	3,769.1	- 7	254.6	
	796		- 8	254.9	
			- 9	524.2	
			- 10	176.8	
			- 11	175.0	
			- 12	263.9	
			- 13	330.6	
			- 14	2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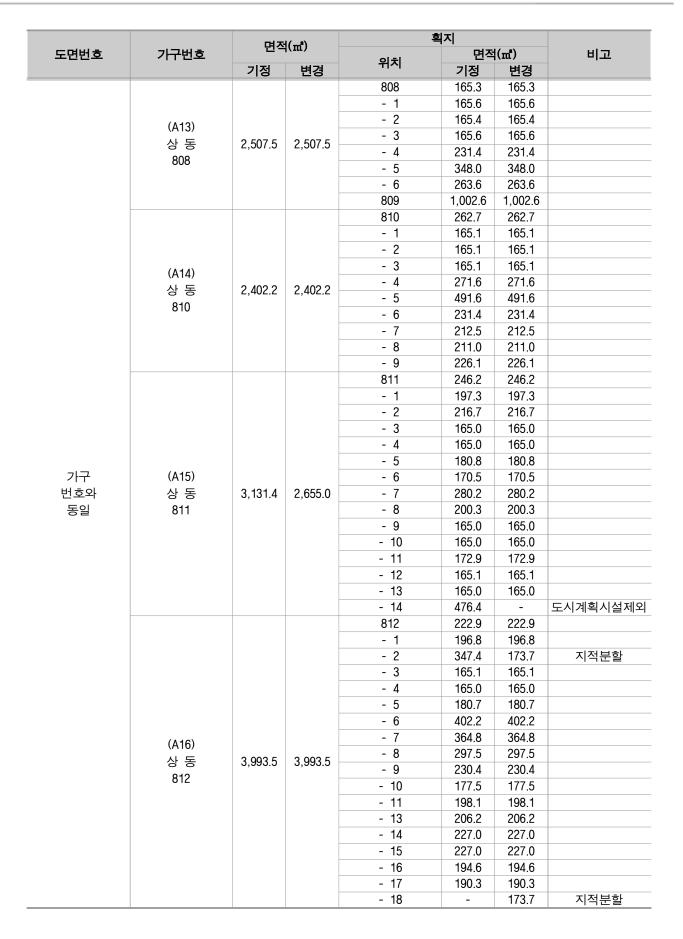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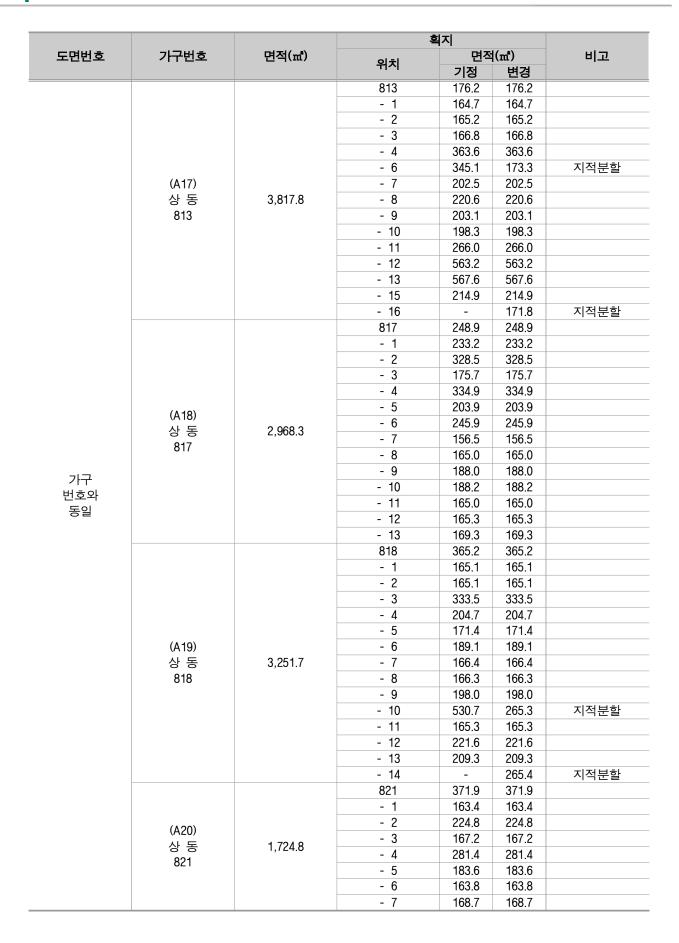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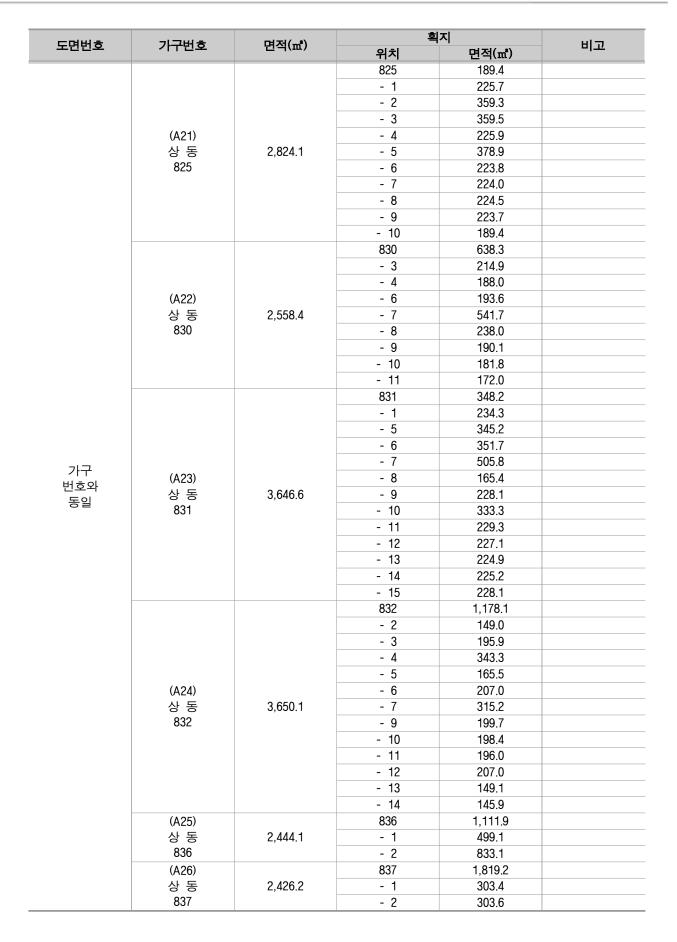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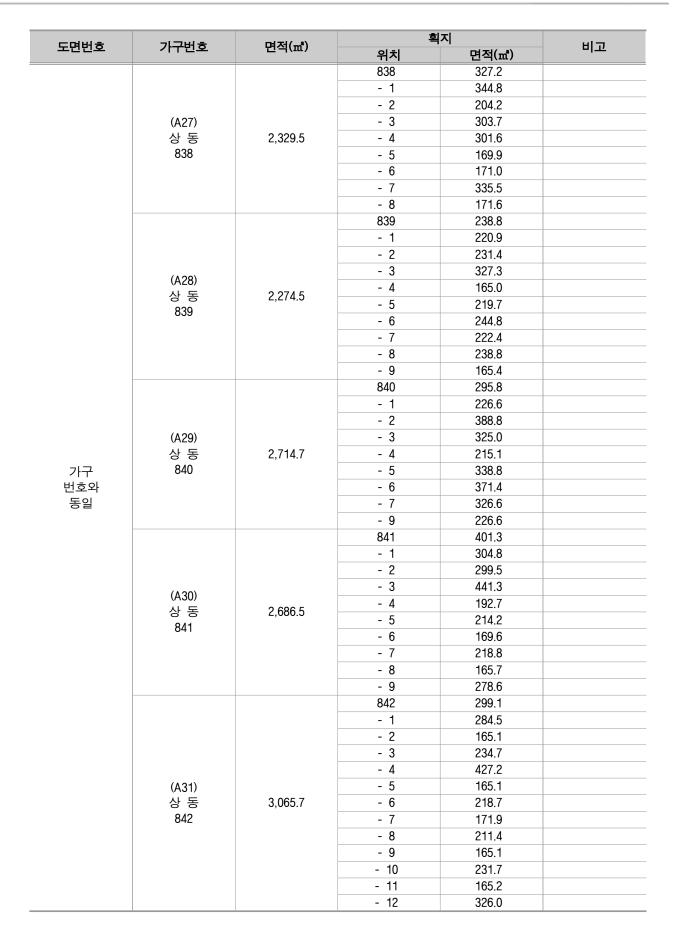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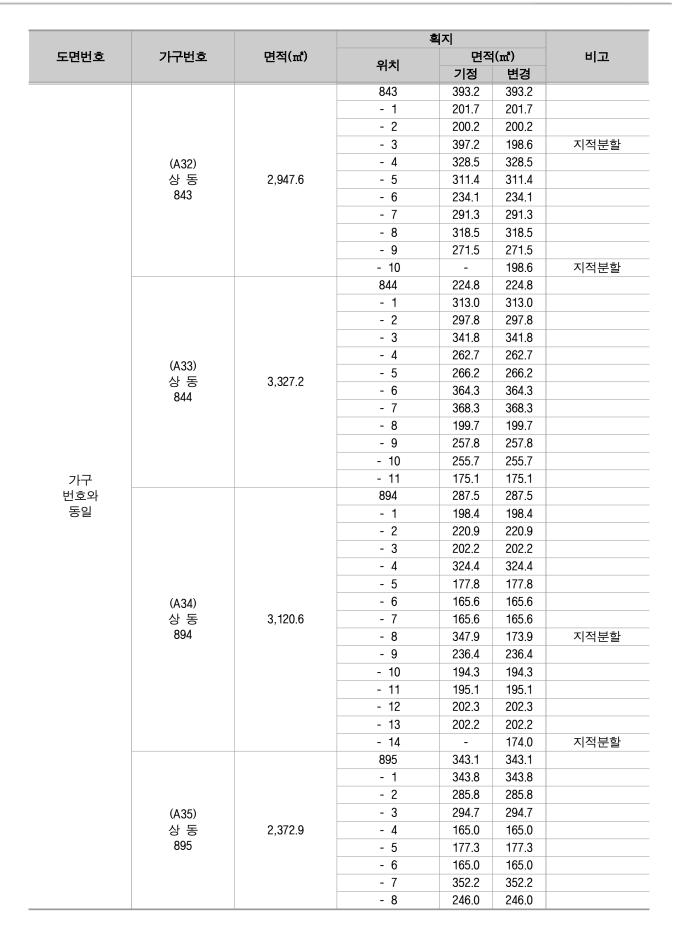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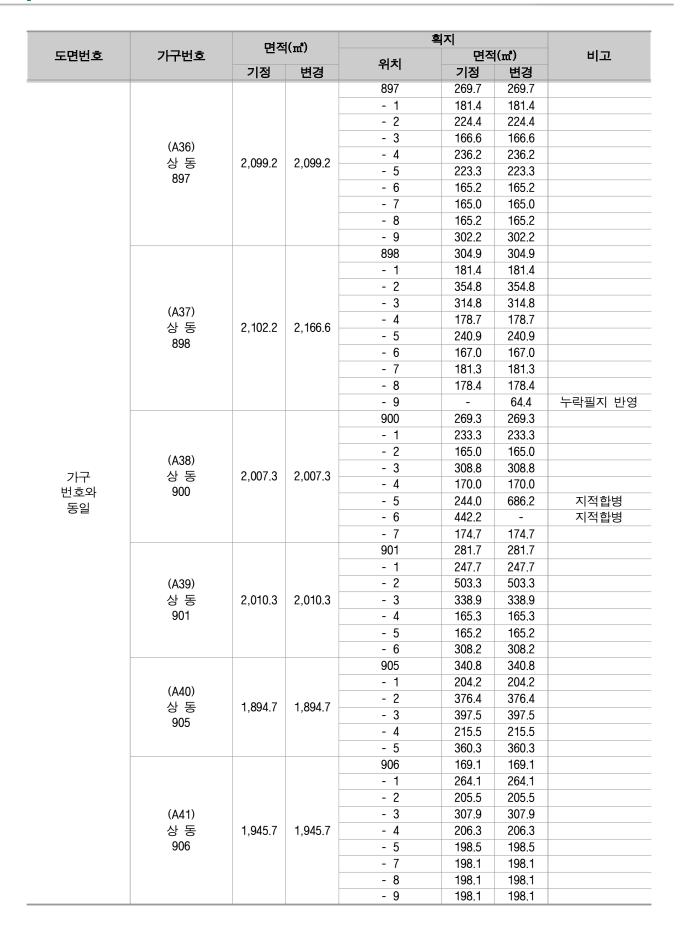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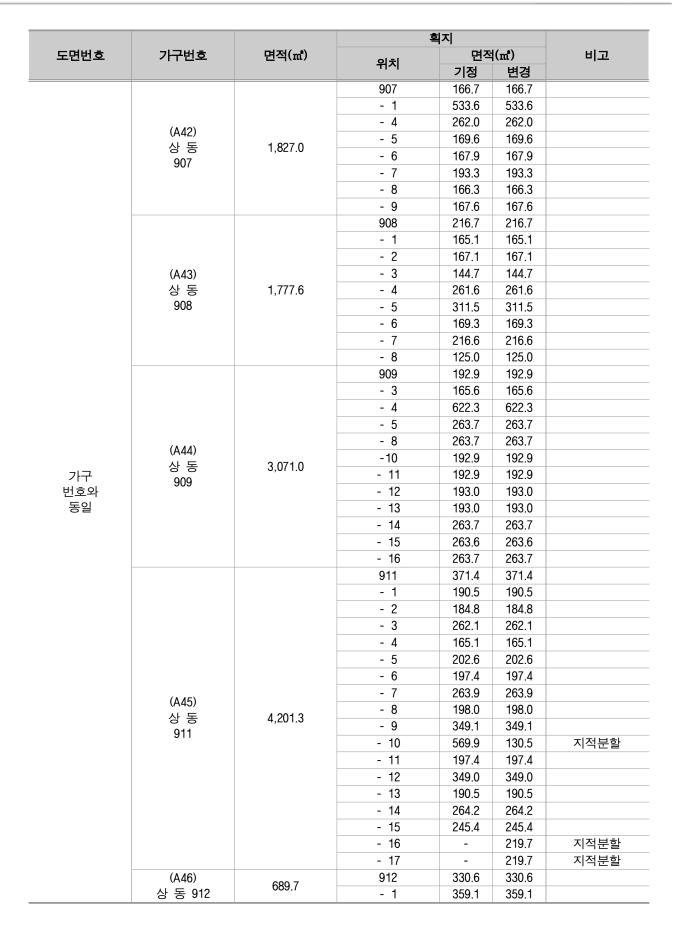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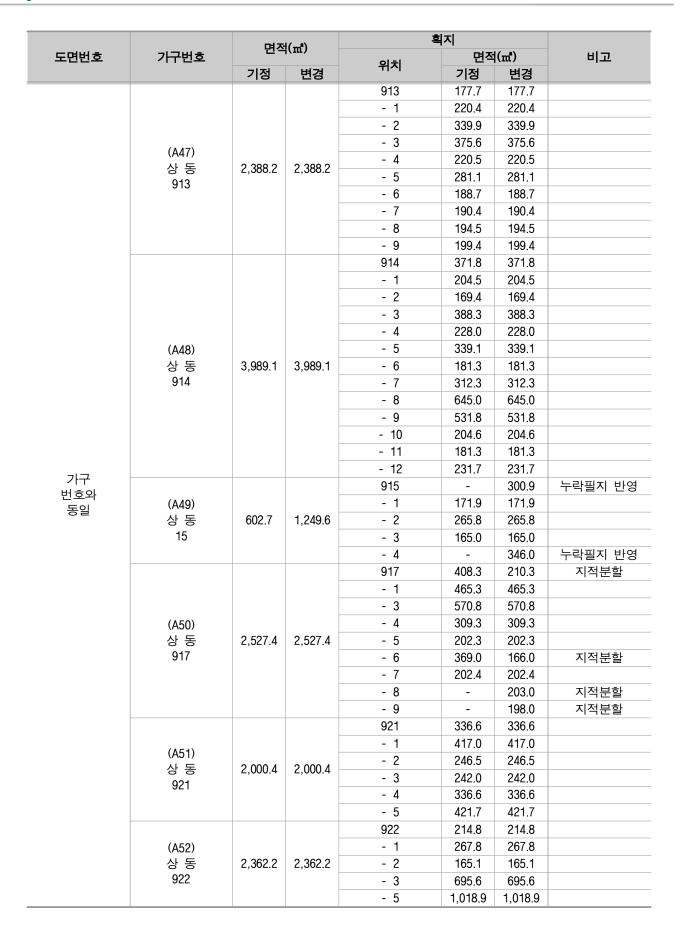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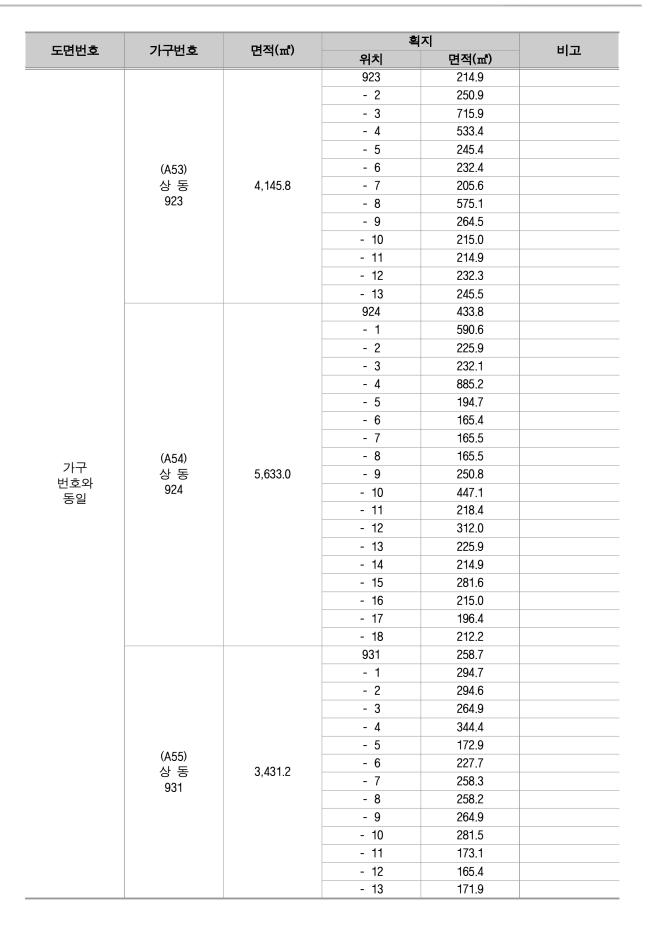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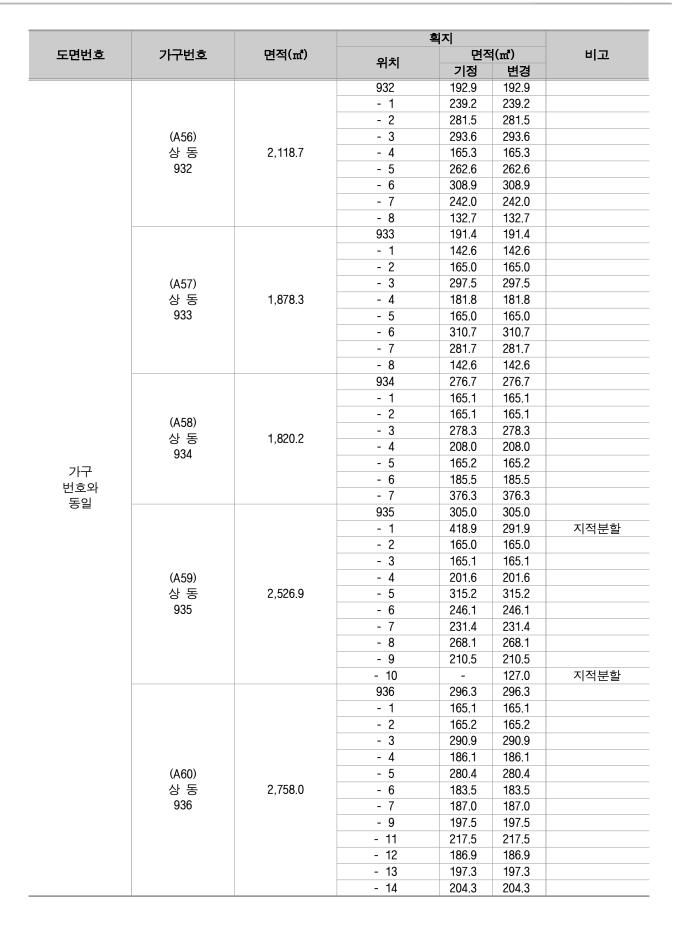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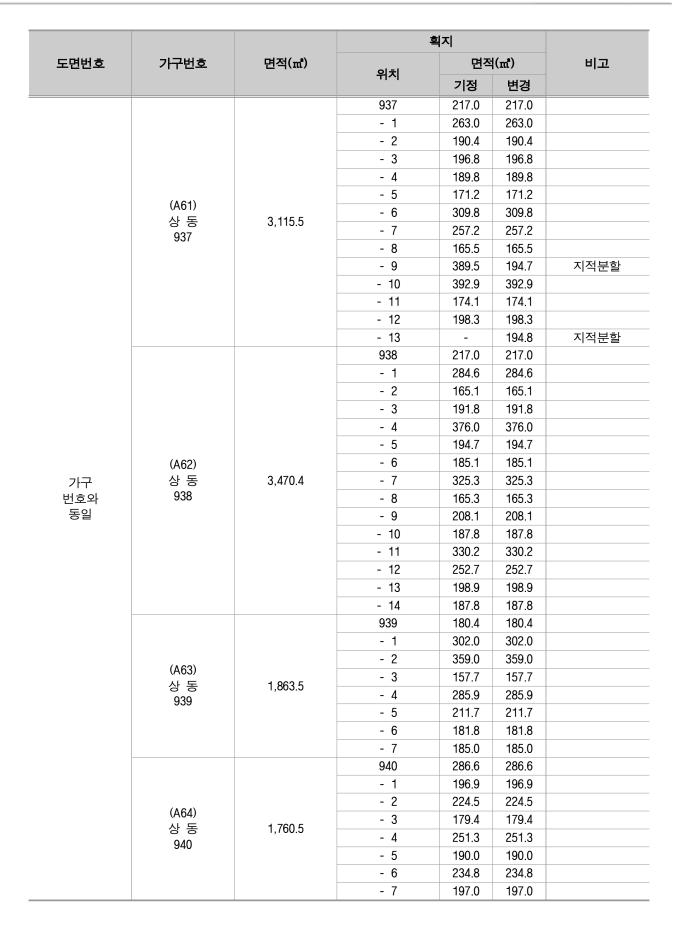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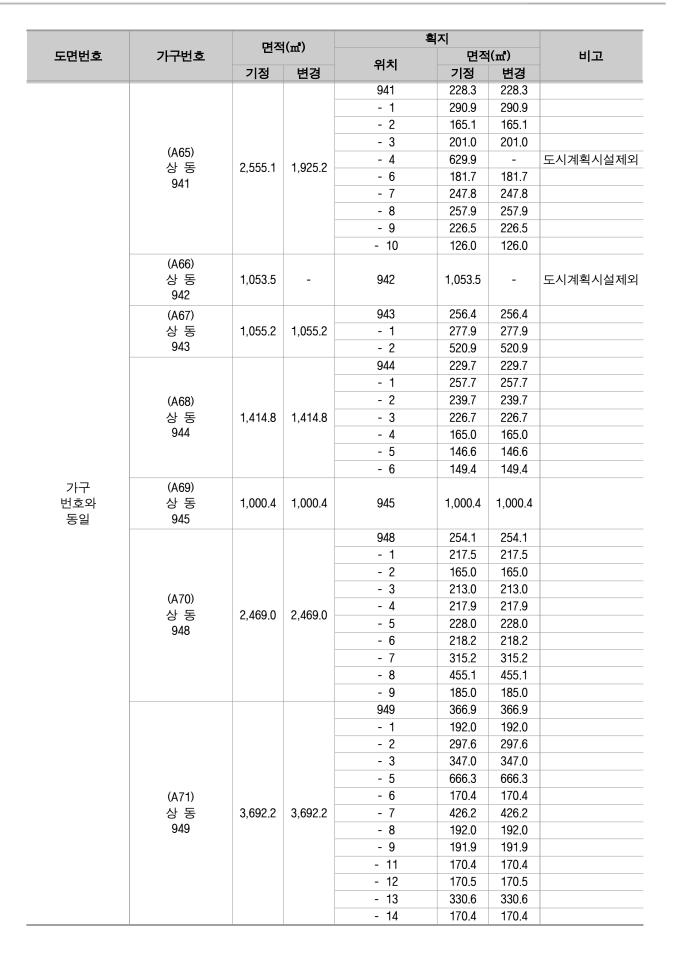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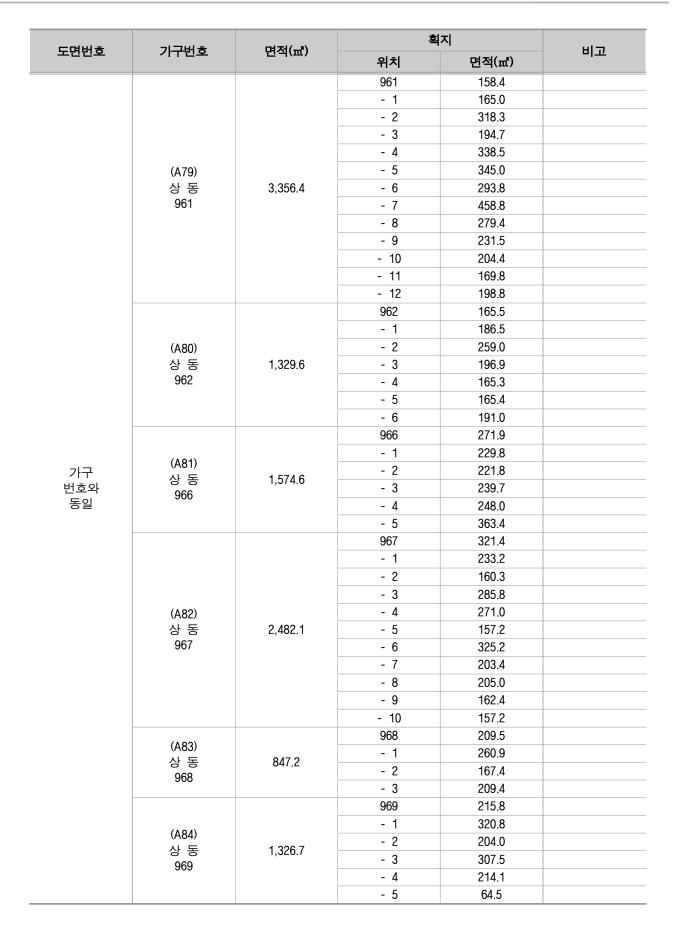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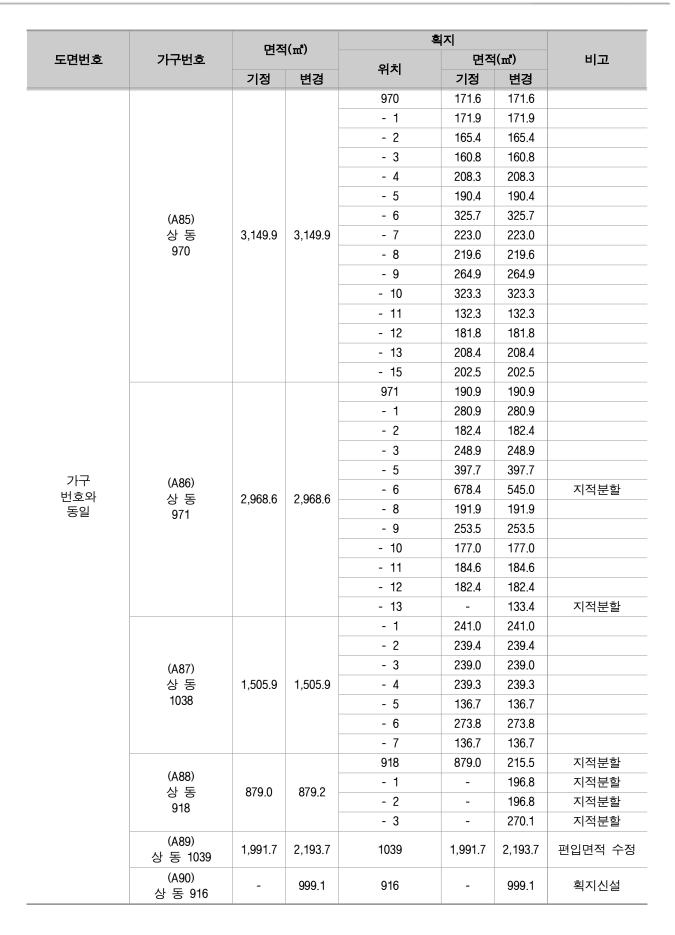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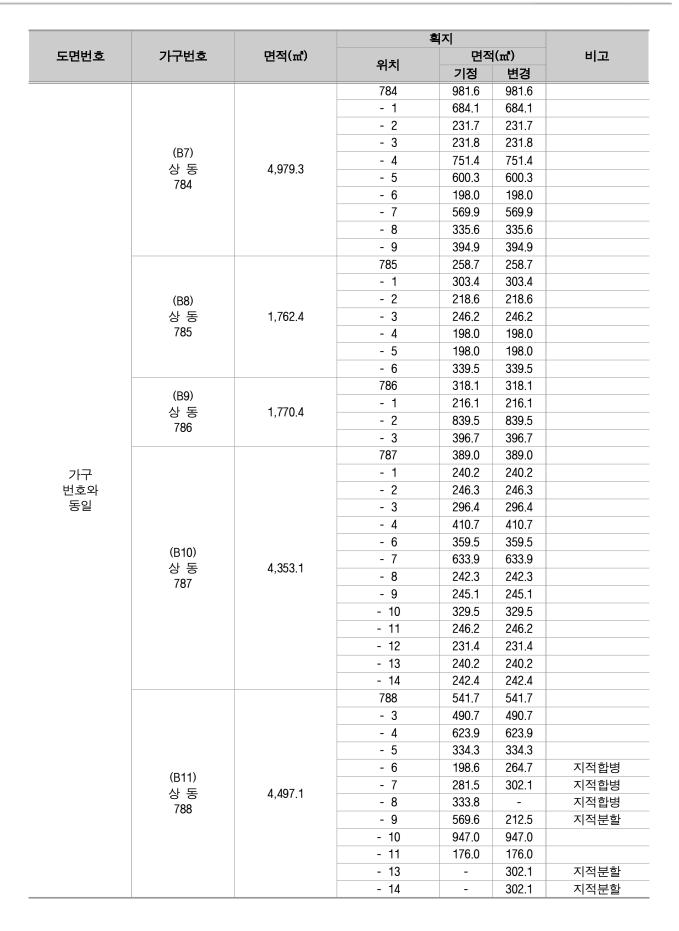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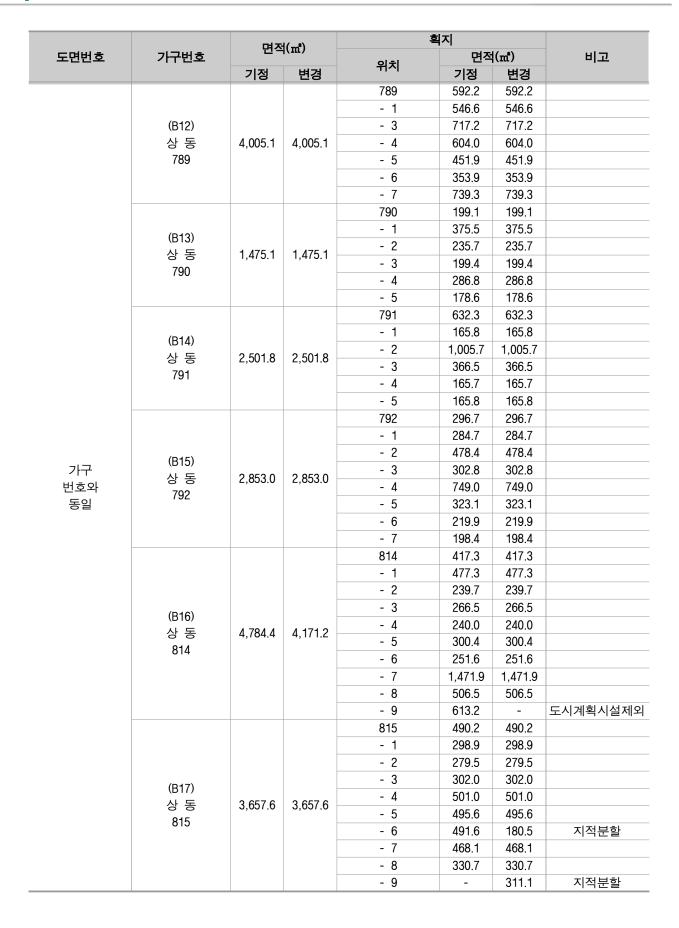


		면적(㎡)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01-1	면적	(m²)	비고
			위치	기정	변경	
가구 번호와 동일	(B1) 상 동 778	5,595.6	778	1,004.9	1,004.9	
			- 1	1,491.3	1,491.3	
			- 2	1,736.5	1,736.5	
			- 3	1,362.9	1,362.9	
	(B2) 상 동 779	4,137.9	779	1982.2	1982.2	
			- 2	770.7	770.7	
			- 3	608.0	608.0	
			- 4	777.0	777.0	
	(B3) 상 동 780	4,356.7	780	524.7	254.0	지적분할
			- 1	364.9	364.9	
			- 2	526.2	526.2	
			- 3	194.7	194.7	
			- 4	346.8	346.8	
			- 5	666.1	335.5	지적분할
			- 6	232.0	232.0	
			- 7	578.1	578.1	
			- 8	194.7	194.7	
			- 9	264.5	264.5	
			- 10	232.0	232.0	
			- 11	232.0	232.0	
			- 12	-	270.7	지적분할
			- 13	-	330.6	지적분할
	(B4) 상 동 781	1,752.9	781	800.0	800.0	
			- 1	194.7	194.7	
			- 2	367.9	367.9	
			- 3	195.5	195.5	
			- 4	194.8	194.8	
	(B5) 상 동 782	1,777.8	782	800.1	800.1	
			- 1	399.8	399.8	
			- 2	248.5	248.5	
			- 3	329.4	329.4	
	(B6) 상 동 783	4,972.9	783	725.6	725.6	
			- 1	616.4	616.4	
			- 2	393.5	393.5	
			- 3	686.8	1,968.7	지적합병
			- 4	454.0	-	지적합병
			- 5	584.7	-	지적합병
			- 6	243.2	-	지적합병
			- 7	317.3	317.3	
			- 8	208.9	208.9	
			- 9	371.3	371.3	
			- 11	371.2	3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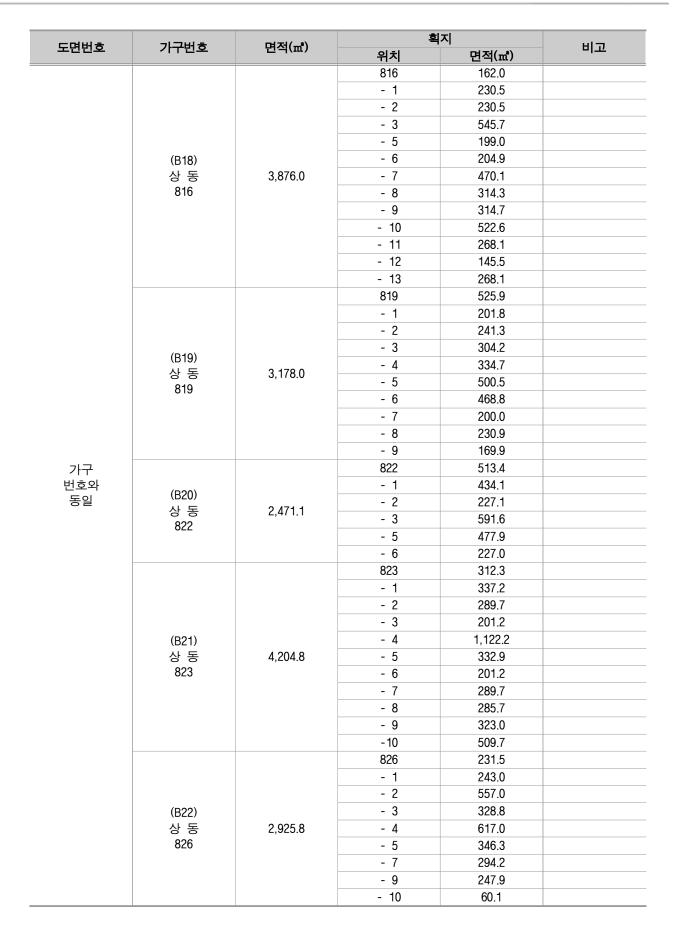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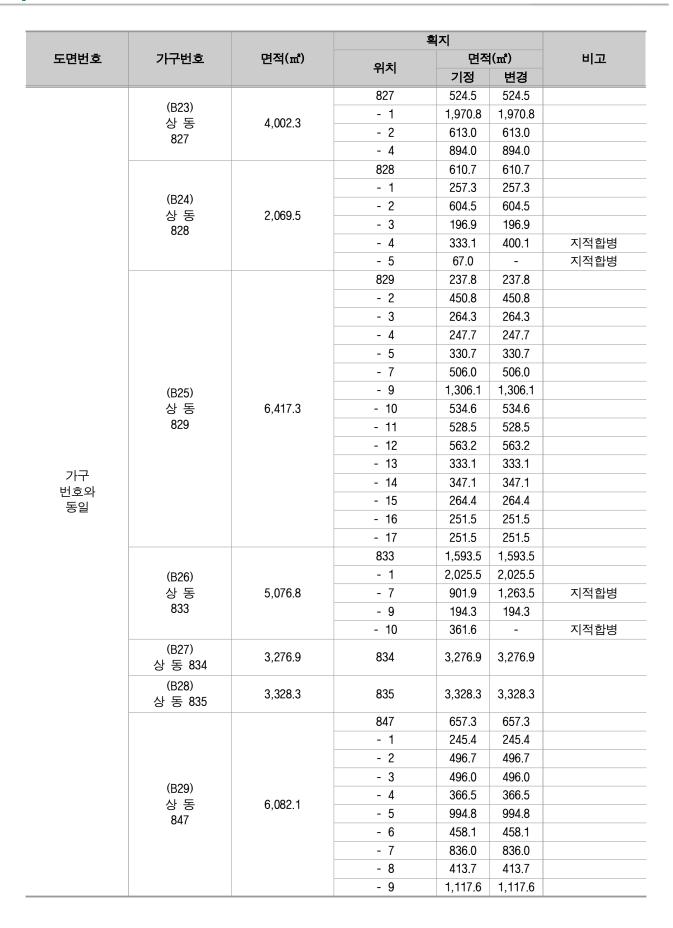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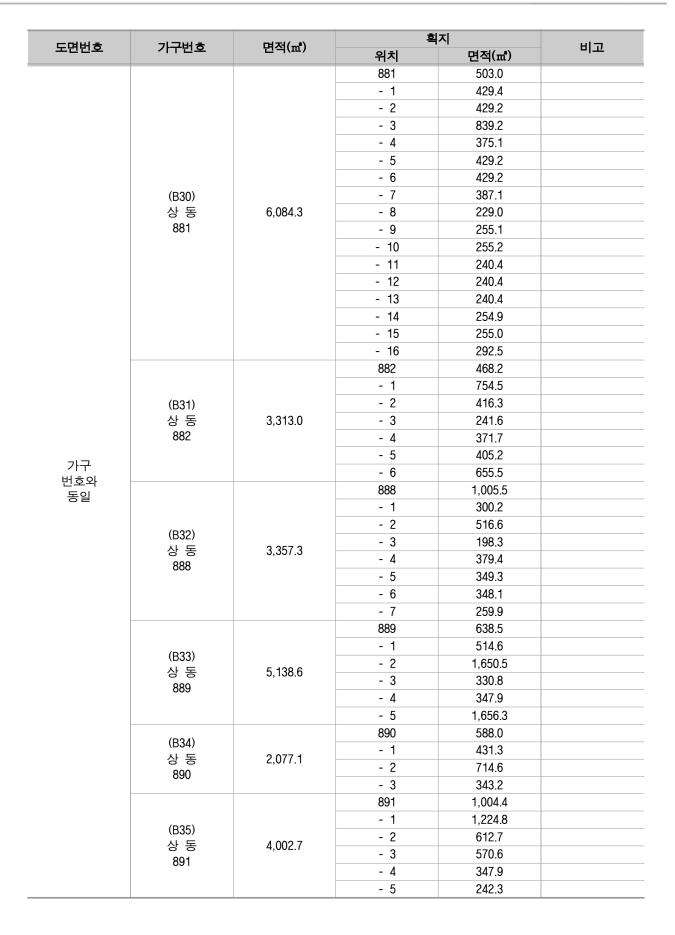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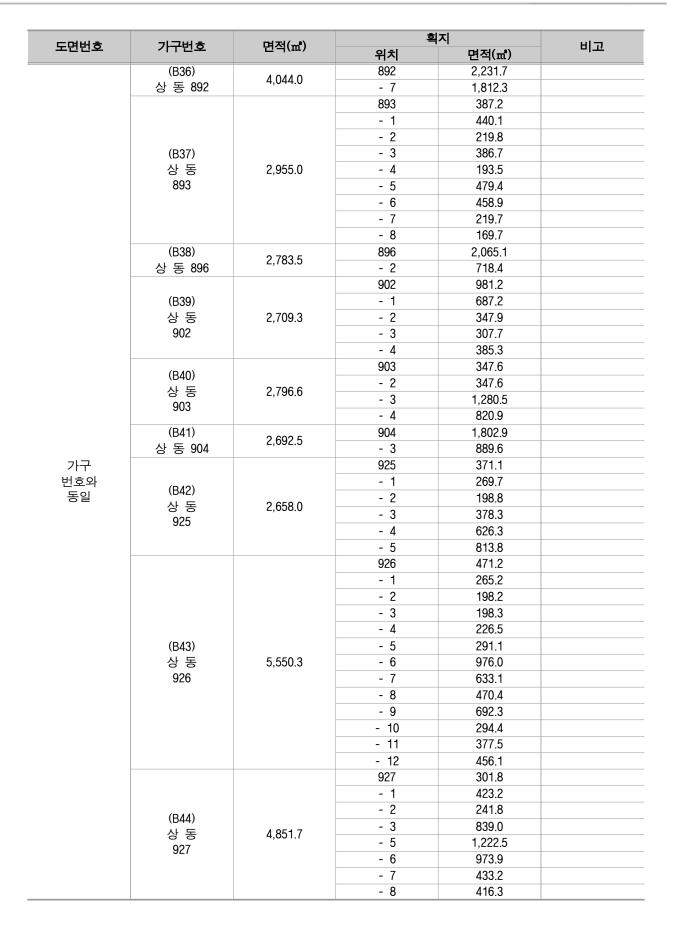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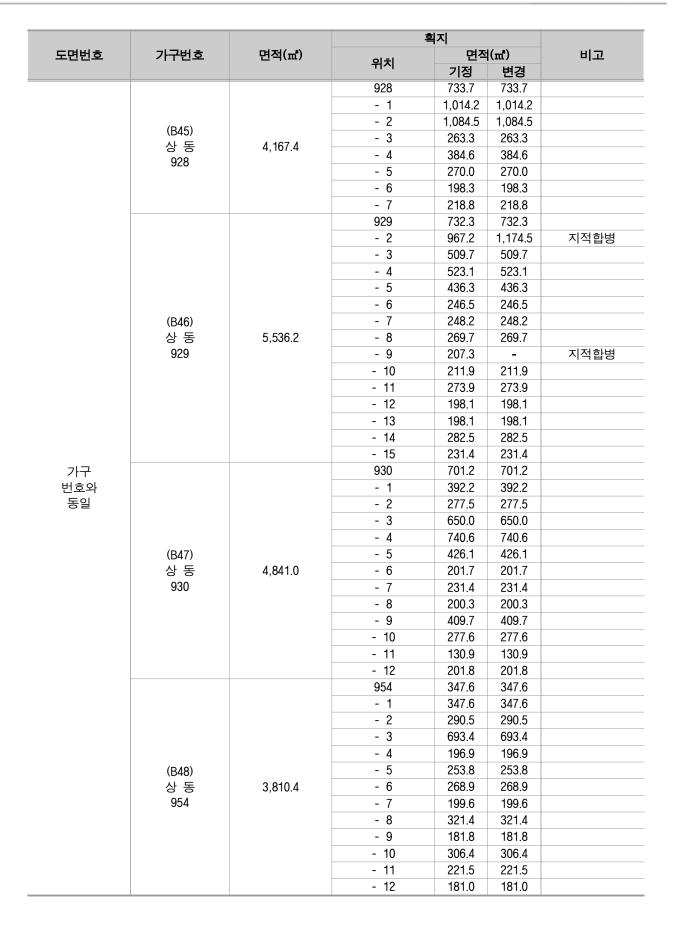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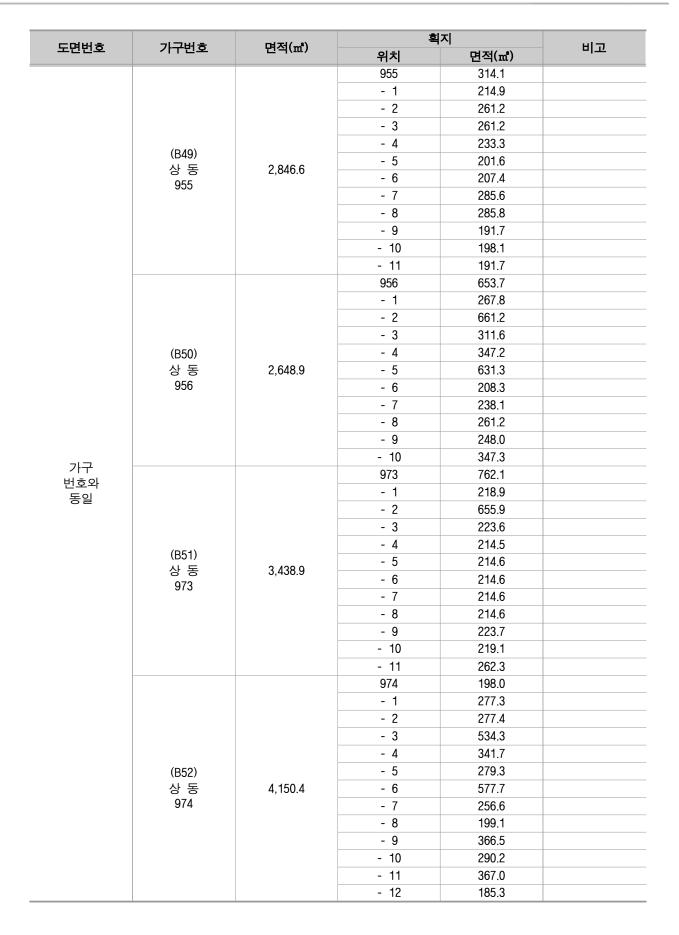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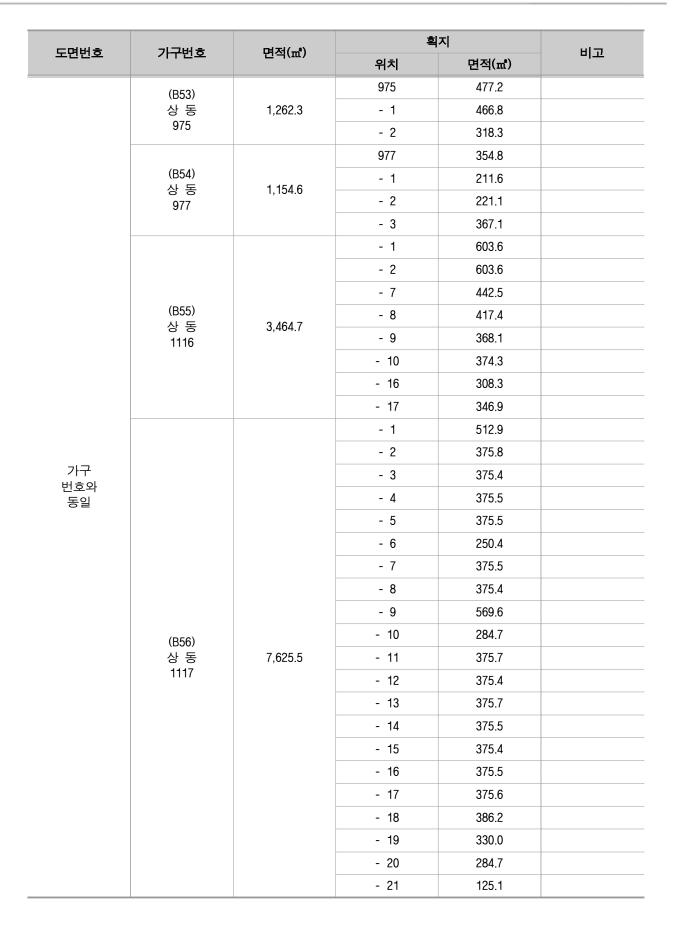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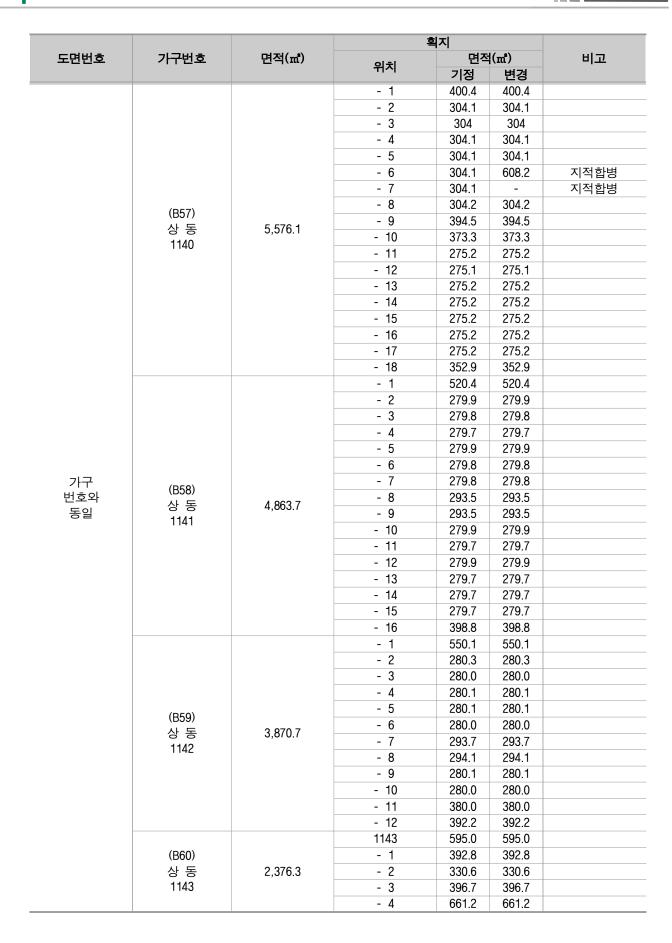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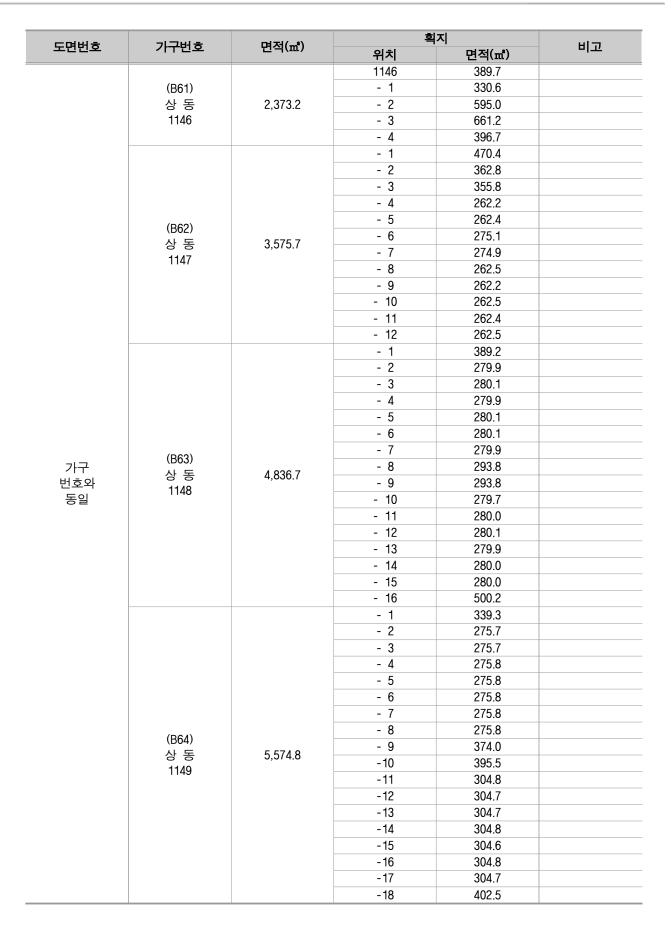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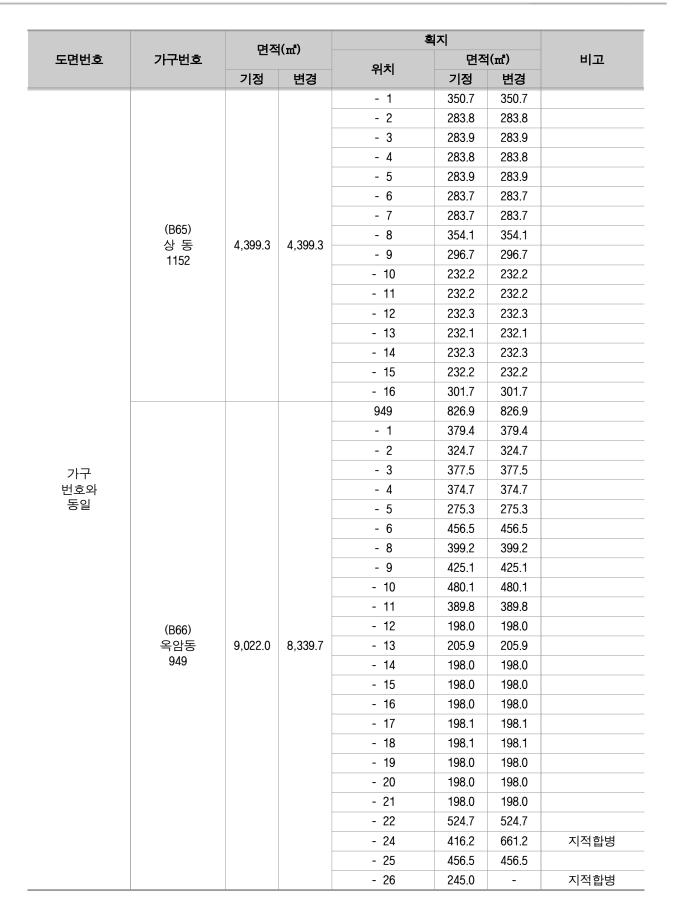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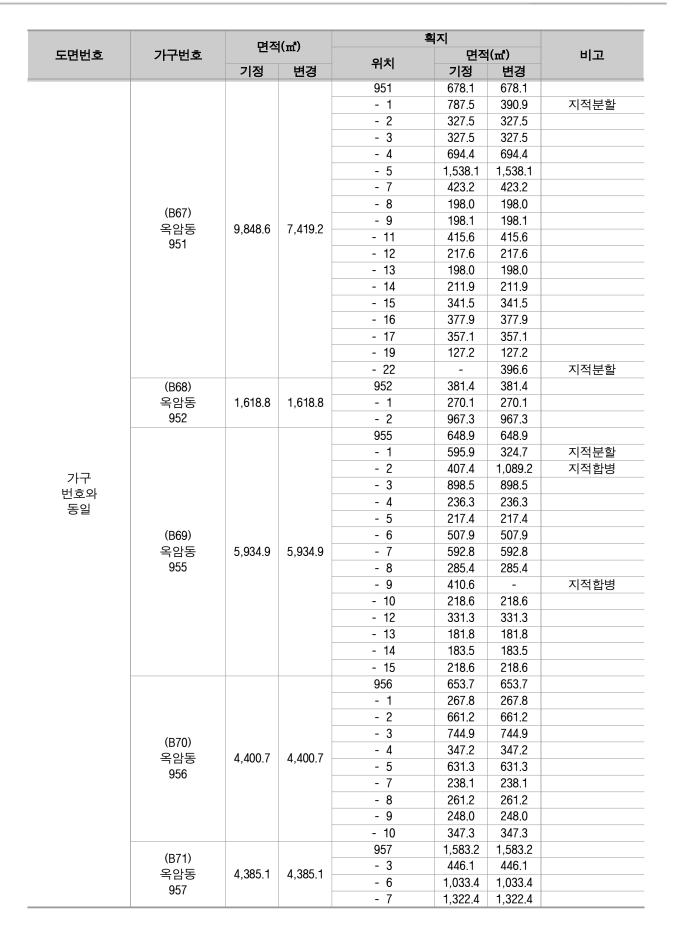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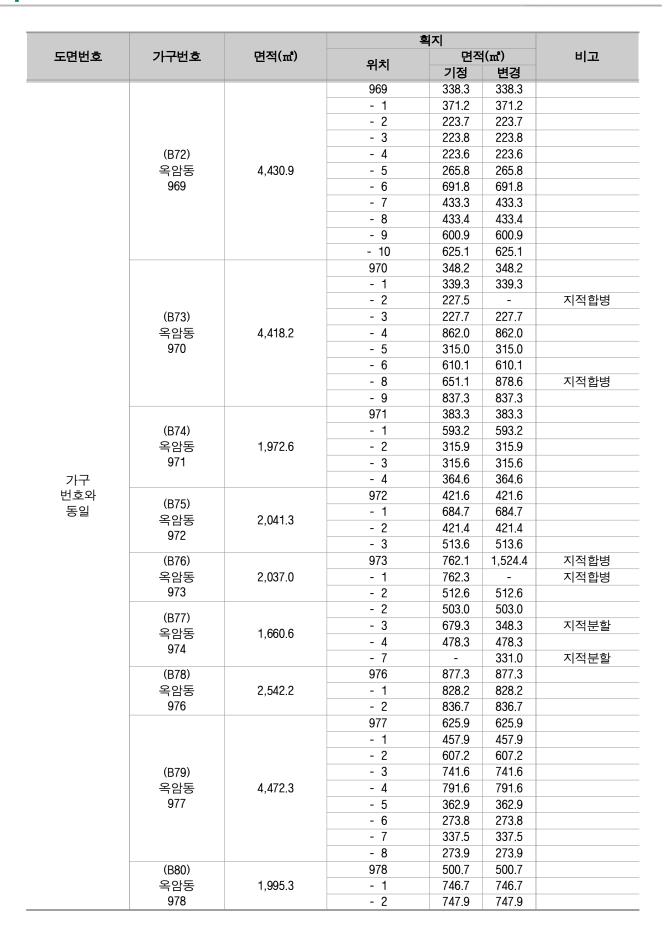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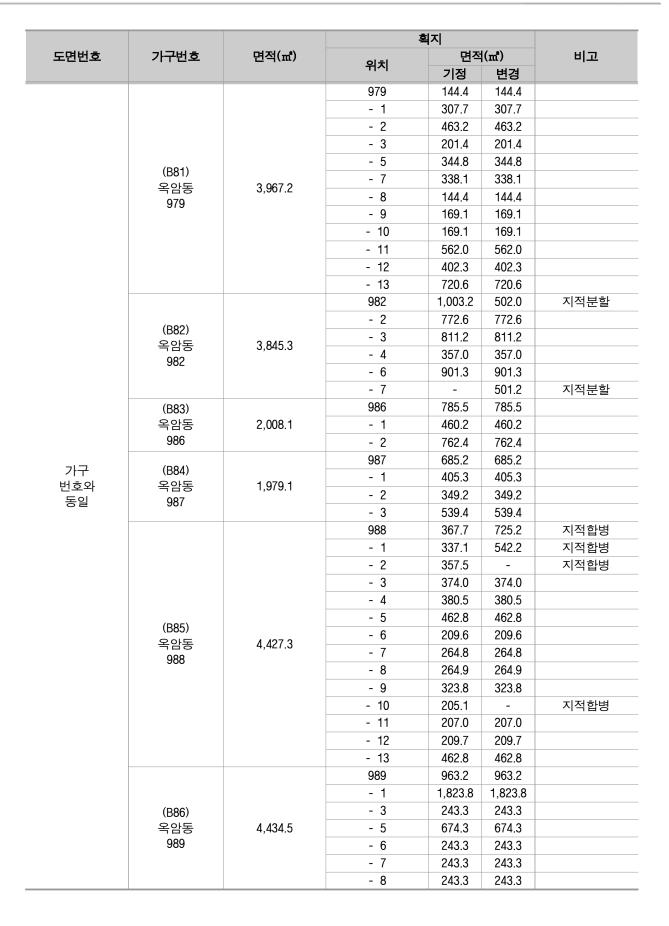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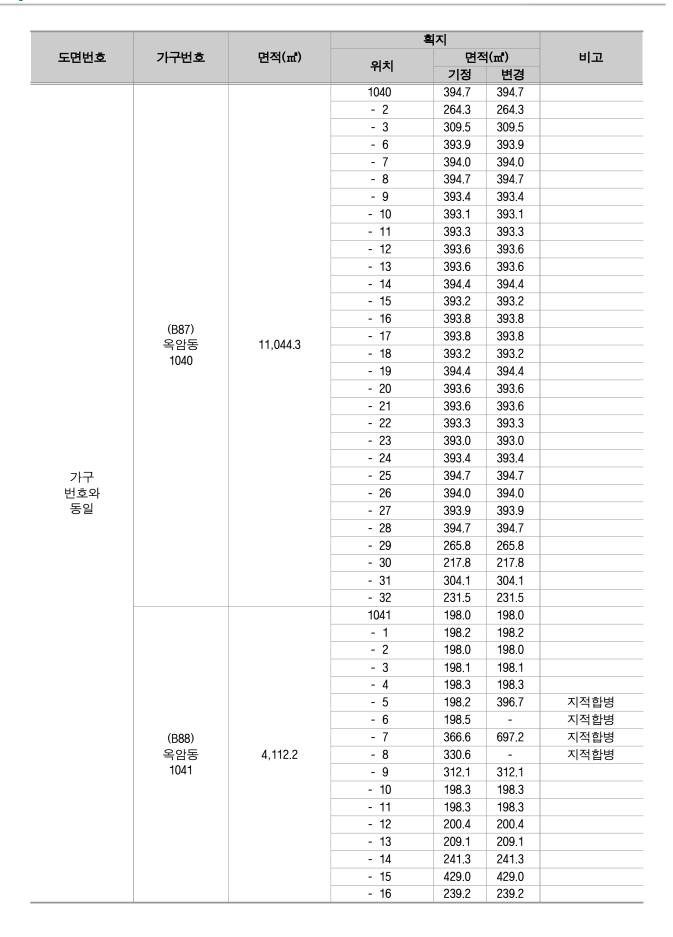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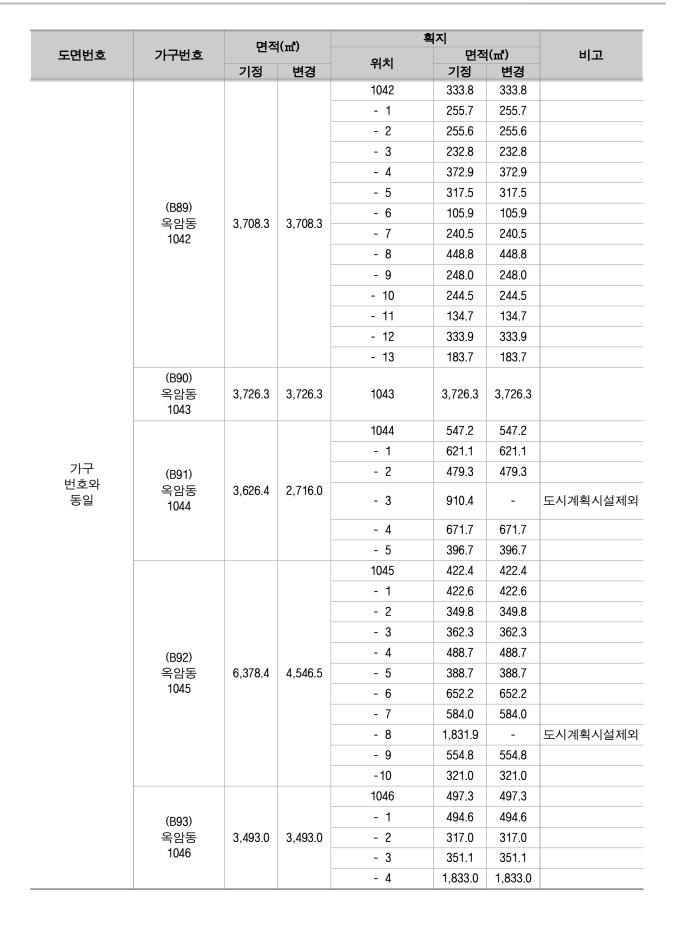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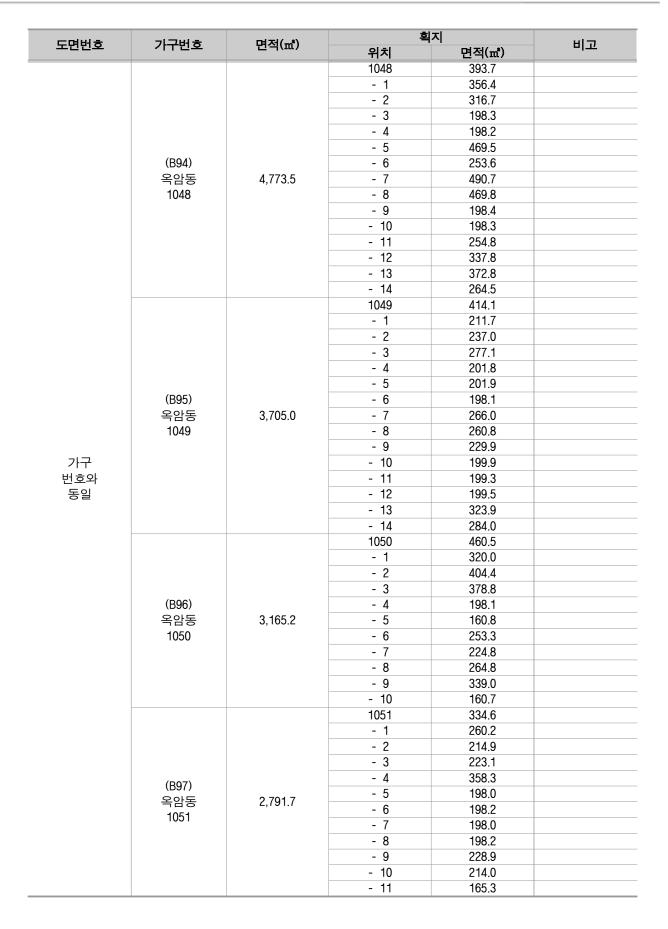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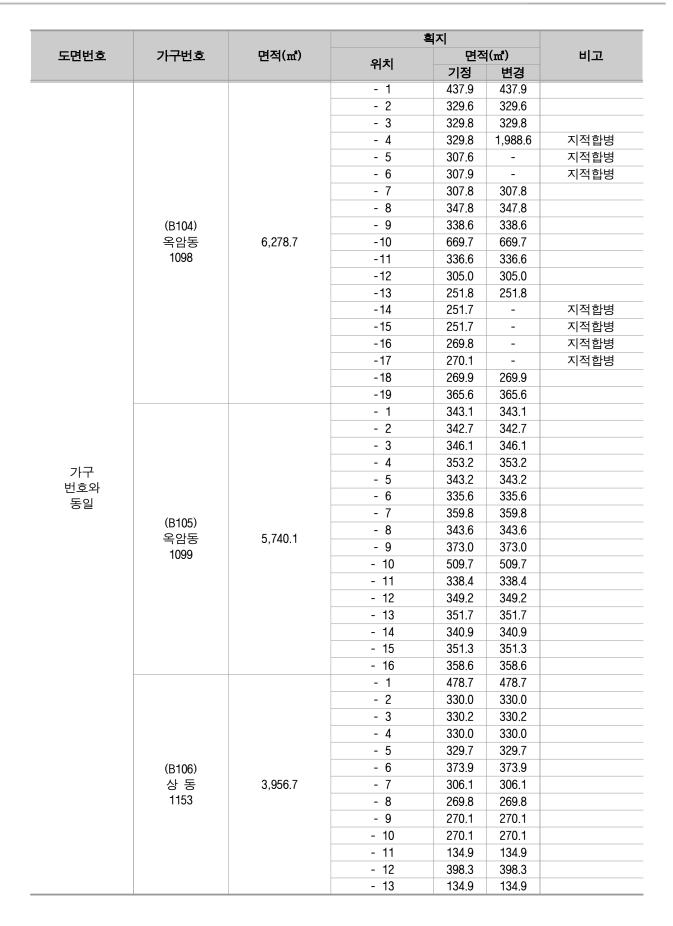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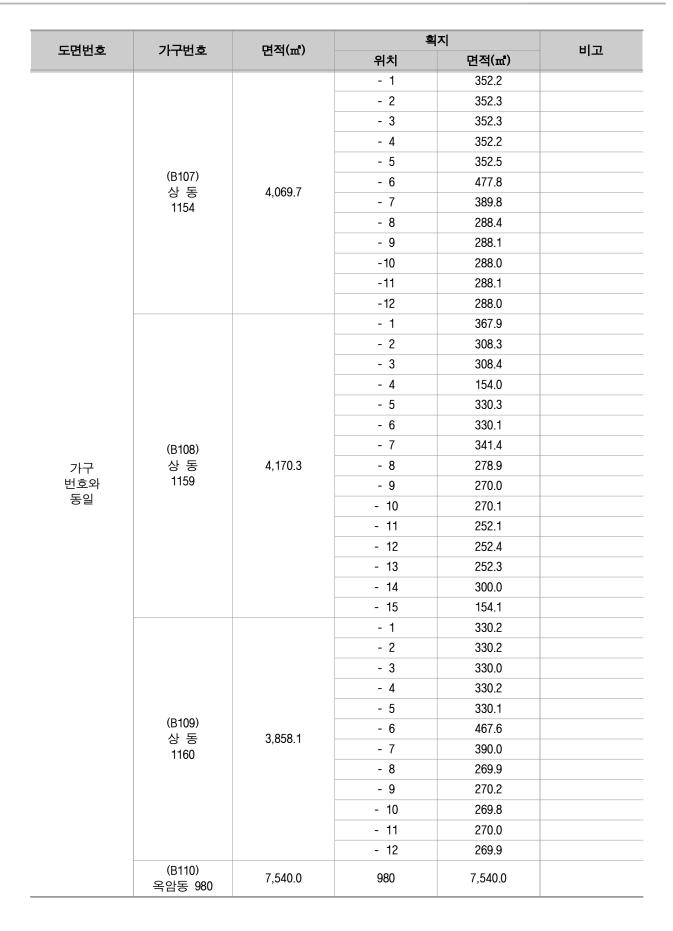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면적	(m²)	비고
			위치	기정	변경	
	(C1) AL = 045	25 702 4	845	12,855.6	12,855.6	
	(C1) 상 동 845	25,793.1	845 - 1	12,937.5	12,937.5	
	(C2) 상 동 846	15,134.9	846	15,134.9	15,134.9	
	(C3) 상 동 883	23,198.5	883	23,198.5	23,198.5	
			884	4,547.7	4,043.7	지적분할
	(C4) 상 동 884	14,540.0	884 - 1	9,992.3	9,992.3	
			884 - 2	-	504.0	지적분할
	(CE) VI = 006	41 227 7	886	40,102.5	40,102.5	
	(C5) 상 동 886	41,237.7	886 - 1	1,135.2	1,135.2	
	(C6) 상 동 1014	24 250 4	1014	15,436.6	15,436.6	
	(60) 상 등 1014	31,258.1	1014 - 1	15,821.5	15,821.5	
	(C7) AL = 1016	27 420 F	1016	14,005.1	14,005.1	
	(C7) 상 동 1016	27,420.5	1016 - 1	13,415.4	13,415.4	
	(C8) 상 동 1018	30,280.6	1018	30,280.6	30,280.6	
	(C9) 상 동 1019	29,899.7	1019	29,899.7	29,899.7	
	(C10) 상 동 1020	22,633.0	1120	22,633.0	22,633.0	
	(044) 8015 004	15 265 2	961	11,724.1	11,724.1	
	(C11) 옥암동 961	15,365.2	961 - 4	3,641.1	3,641.1	
가구	(C12) 옥암동 962	9,034.2	962	9,034.2	9,034.2	
번호와 동일	(C13) 옥암동 964	10,253.1	964	10,253.1	10,253.1	
0 =	(044) 0015 005	00 070 4	965	22,000.2	22,000.2	
	(C14) 옥암동 965	28,072.4	965 - 3	6,072.2	6,072.2	
	(C15) 옥암동 984	18,052.8	984	18,052.8	18,052.8	
	(040) 8015 000	04 004 0	992	18,684.5	18,684.5	
	(C16) 옥암동 992	21,894.6	992 -19	3,300.1	3,300.1	
	(C47) SOLE 004	10 74E E	994	54,857.7	54,857.7	
	(C17) 옥암동 994	13,745.5	994 - 1	8,286.8	8,286.8	
	(C18) 옥암동 1023	18,519.1	1023	18,519.1	18,519.1	
	(C19) 옥암동 1026	13,528.3	1026	13,528.3	13,528.3	
	(C20) 옥암동 1027	31,047.1	1027	31,047.1	31,047.1	
	(C21) 옥암동 1028	25,150.4	1028	25,150.4	25,150.4	
	(C22) POLE 1020	1 167 E	1029	1,777.9	1,777.9	
	(C22) 옥암동 1029	4,467.5	1029 - 1	2,689.6	2,689.6	
	(C23) 옥암동 1096	22,367.7	1096	22,367.7	22,367.7	
	(C24) 옥암동 1097	23,727.8	1097	23,727.8	23,727.8	상동 → 옥암
	(C25) 옥암동 1103	17,251.1	1103	17,251.1	17,251.1	상동 → 옥암
	(C26) 옥암동 1026-1	1,489.3	1026 - 1	1,489.3	1,489.3	옥암동 1026 (C19)에서 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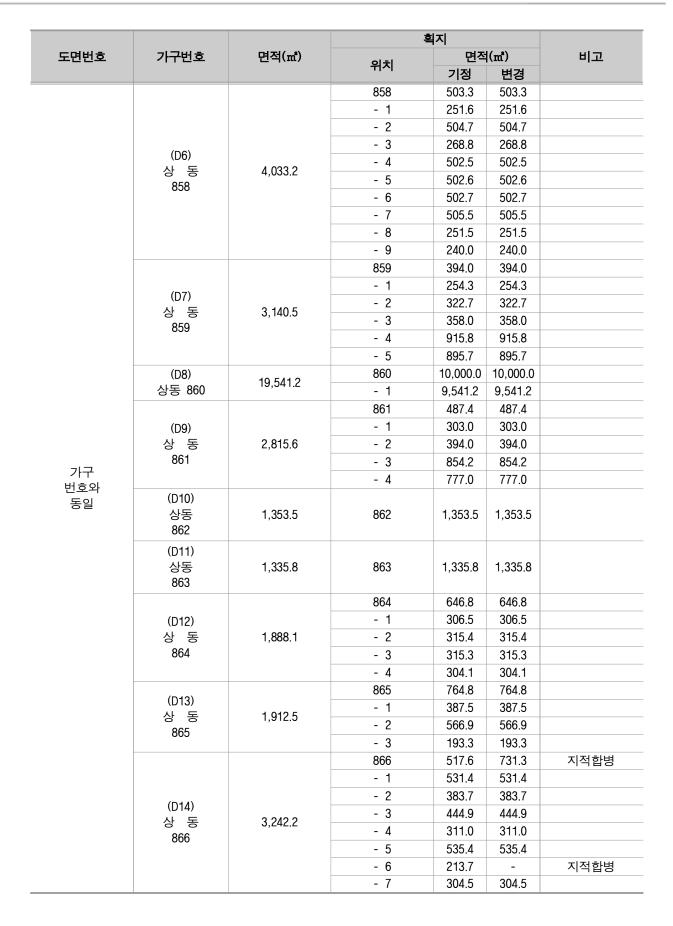
4. 근린생활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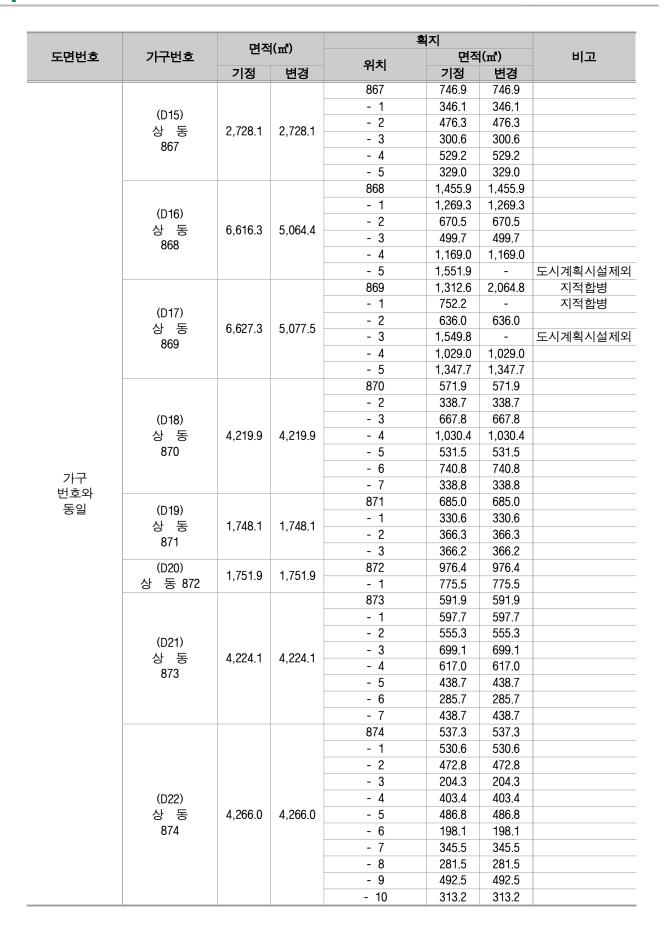
드면버승	가구번호	면적(㎡)	흭	지	비고
도면번호	기구인호	면역(m)	위치	면적(m²)	- 1 <u>-14</u>
가구 번호와 동일	(N1) 옥암동 1023-1	283.3	1023 - 1	283.3	

5. 중심상업지역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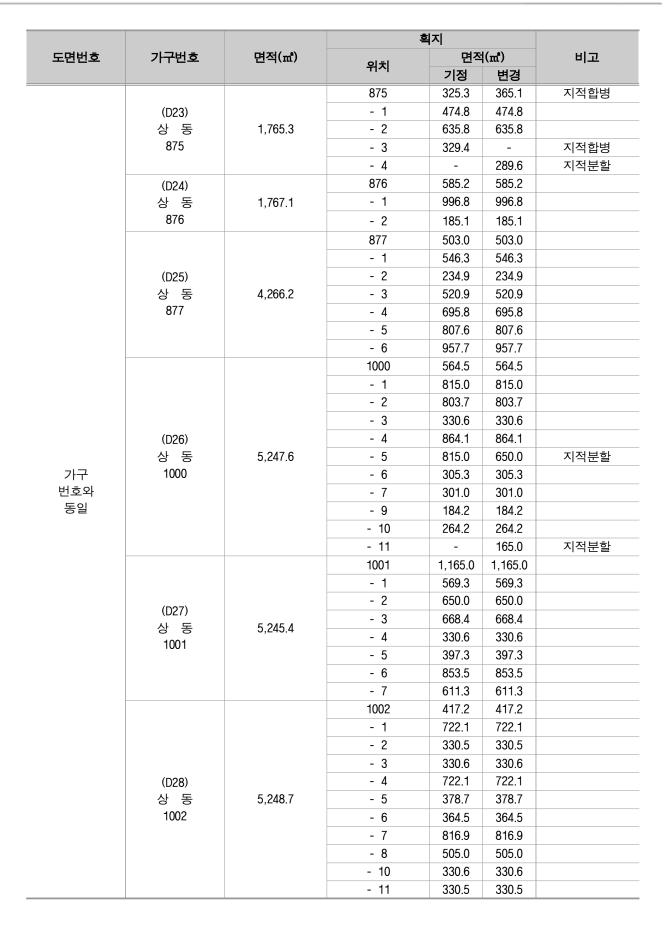
		면적(㎡)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직	(m²)	비고	
			위치	기정	변경		
			853	595.9	1,181.1	지적합병	
			- 1	585.2	-	지적합병	
			- 2	292.4	292.4		
	(D4)		- 3	599.4	599.4		
	(D1) 상 동	4,499.6	- 4	509.0	509.0		
	853	4,499.0	- 5	305.5	305.5		
	055		- 6	505.5	505.5		
			- 7	508.8	508.8		
			- 8	305.4	305.4		
			- 9	292.5	292.5		
			854	826.5	826.5		
			- 6	545.5	272.7	지적분할	
			- 7	981.8	981.8		
	(D2)		- 8	741.7	424.3	지적분할	
	상 동	4,467.5	- 9	545.5	545.5		
	854		- 10	826.5	826.5		
-1-			- 14	-	272.8	지적분할	
가구			- 15	-	150.2	지적분할	
번호와 동일			- 16	-	167.2	지적분할	
 ○ ≥			855	743.6	743.6		
			- 1	836.4	836.4		
			- 2	749.7	749.7		
	(D3)		- 3	370.3	214.4	지적분할	
	상 동	4,023.9	- 4	197.6	197.6		
	855		- 5	301.5	301.5		
			- 6	430.8	430.8		
			- 7	394.0	394.0		
			- 8	-	155.9	지적분할	
			856	648.0	648.0		
	(D4)	1 006 2	- 1	246.8	246.8		
	상동856	1,806.3	- 2	651.5	651.5		
			- 4	260.0	260.0		
	(0.5)		857	646.2	646.2		
	(D5)	1 001 4	- 1	505.5	505.5		
	상 동 857	1,801.4	- 2	324.8	324.8		
	031		- 4	324.9	3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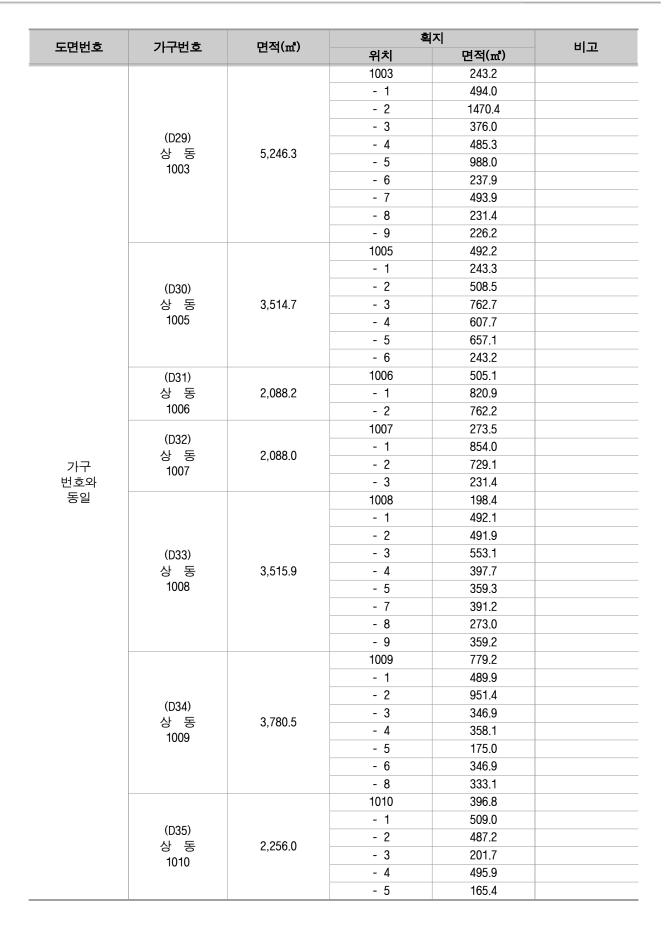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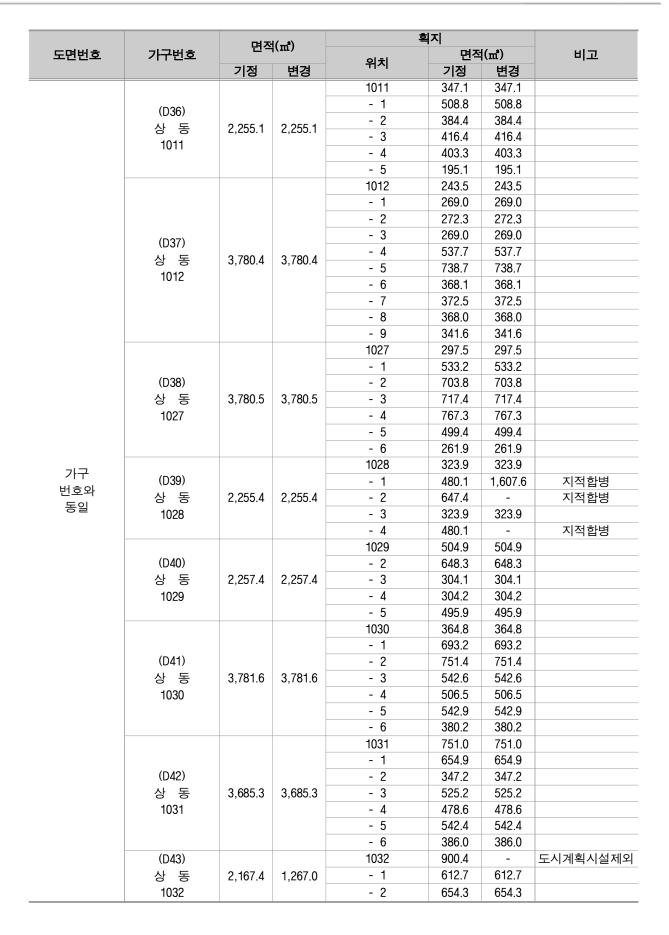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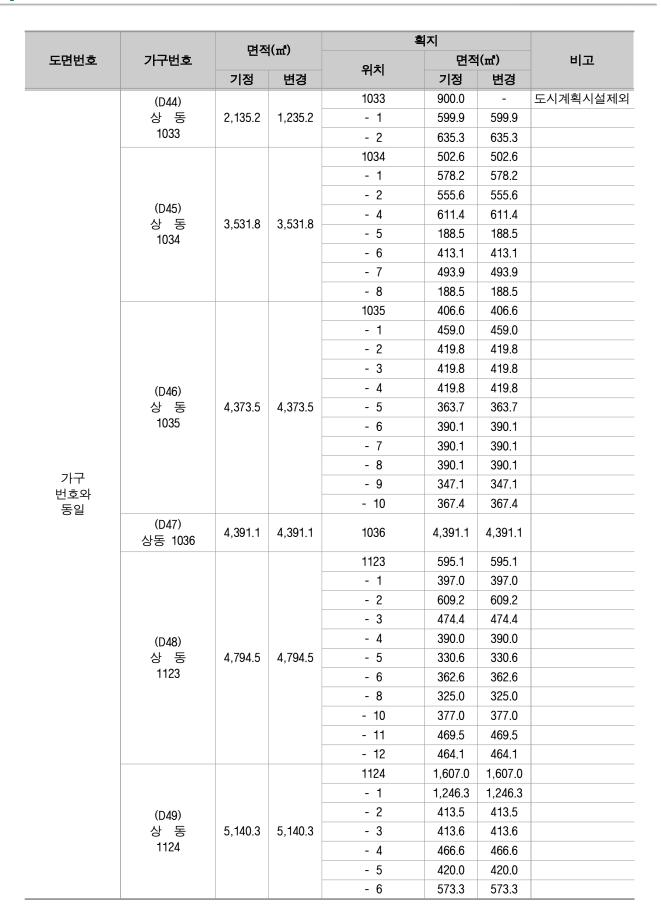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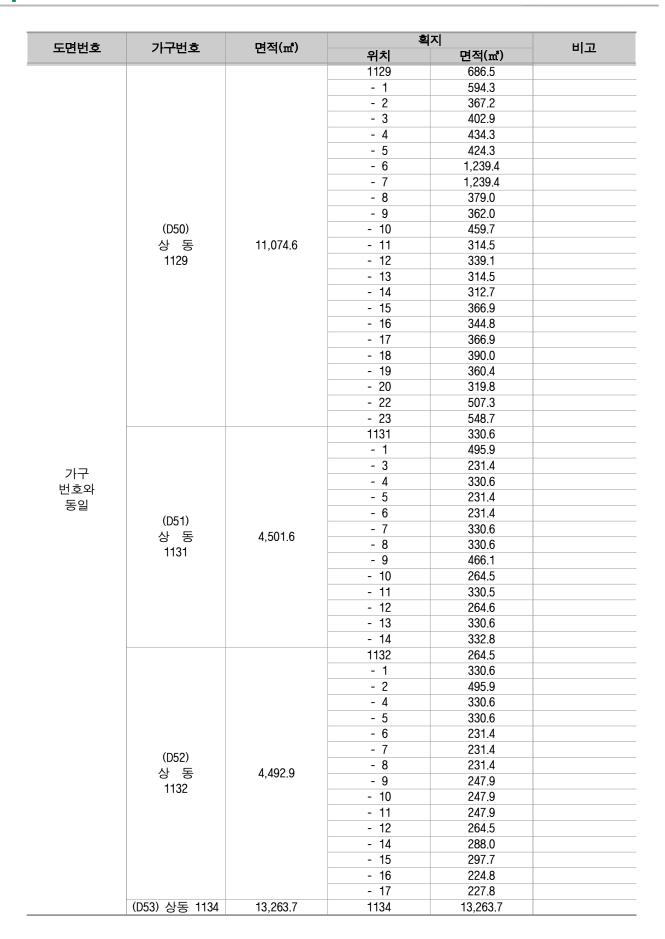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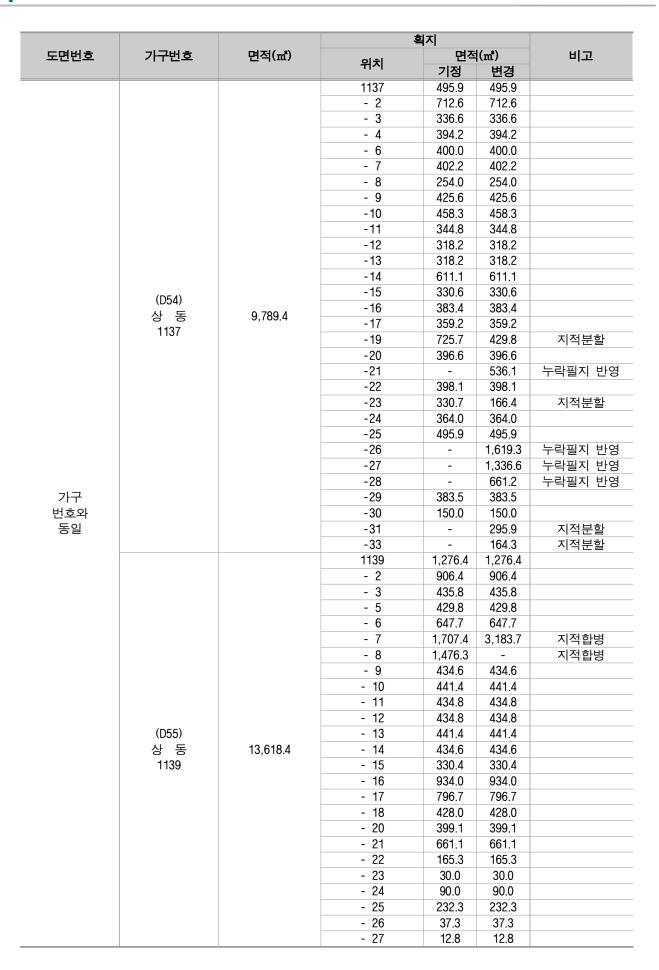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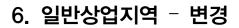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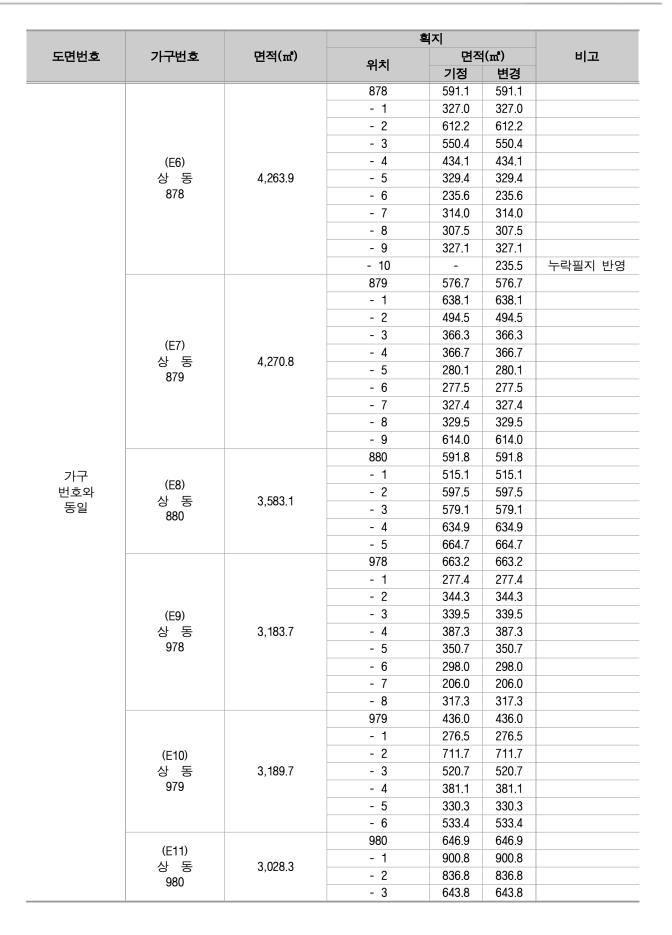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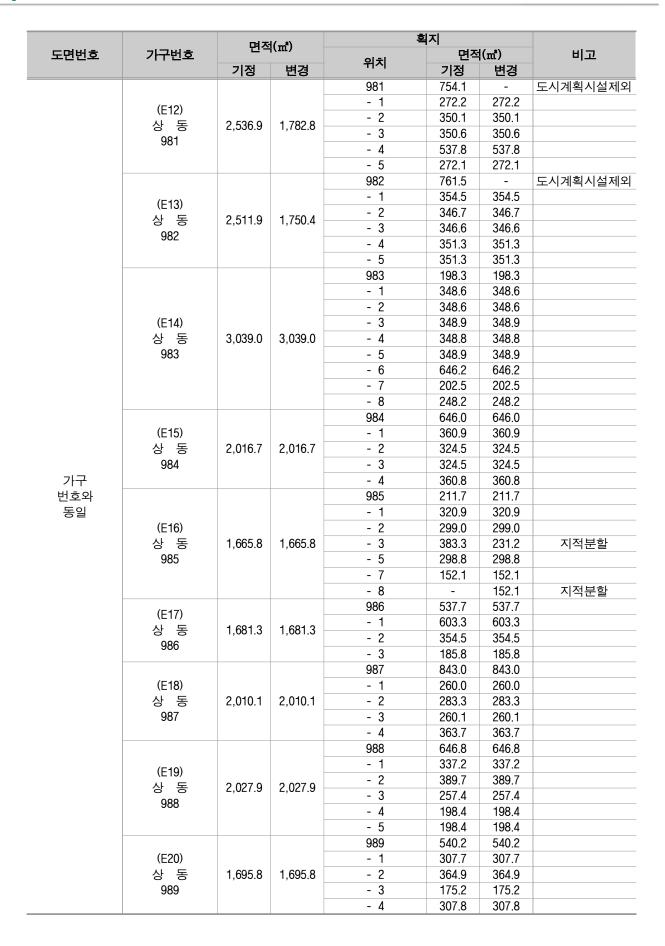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01=1	획 지 면적	(m²)	비고
			위치	기정	변경	
	(= 1)		848	629.9	629.9	
	(E1)	0.000.0	- 1	330.4	330.4	
	상 동 848	2,080.2	- 2	528.5	528.5	
	040		- 3	591.4	591.4	
			849	526.9	526.9	
			- 1	614.6	614.6	
			- 2	491.4	491.4	
			- 3	489.2	489.2	
			- 4	488.8	488.8	
			- 5	836.4	836.4	
	(E2)		- 6	310.5	310.5	
	상 동	6,107.8	- 7	198.2	198.2	
	849		- 8	323.6	323.6	
			- 9	323.3	323.3	
			- 10	323.5	323.5	
			- 11	323.5	323.5	
			- 12	260.4	260.4	
			- 13	266.5	266.5	
			- 14	331.0	331.0	
			850	446.2	446.2	
			- 1	432.1	432.1	
가구			- 2	431.5	431.5	
가구 번호와	(E3)	3,088.9	- 3	247.9	247.9	
전호과 동일	상 동		- 4	226.5	226.5	
02	850		- 5	342.0	342.0	
			- 6	295.7	295.7	
			- 7	225.3	225.3	
			- 9	441.7	441.7	
			851	483.7	483.7	
			- 1	337.3	337.3	
			- 2	547.4	547.4	
			- 3	331.5	331.5	
	(E4)		- 4	584.5	584.5	
	상 동	4,033.6	- 5	225.1	986.7	지적합병
	851		- 6	225.5	-	지적합병
			- 7	198.1	-	지적합병
			- 8	338.0	-	지적합병
			- 9	314.0	314.0	
			- 10	448.5	448.5	
			852	679.2	679.2	
			- 1	365.5	365.5	
	(E5)		- 2	365.8	365.8	
	상 동	2,506.9	- 3	423.1	423.1	
	852		- 4	228.5	228.5	
			- 5	229.1	229.1	
			- 6	215.7	2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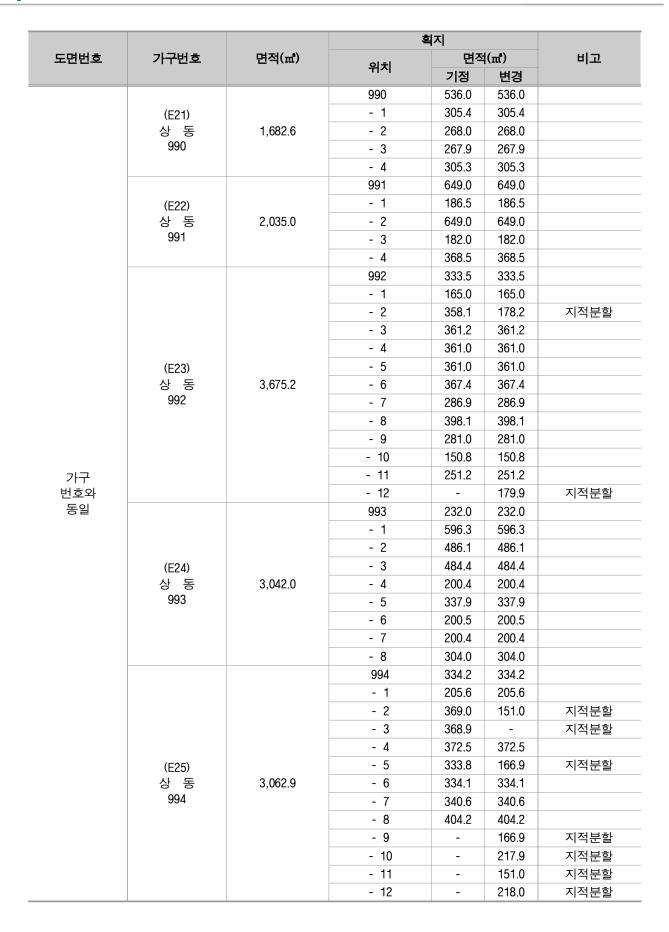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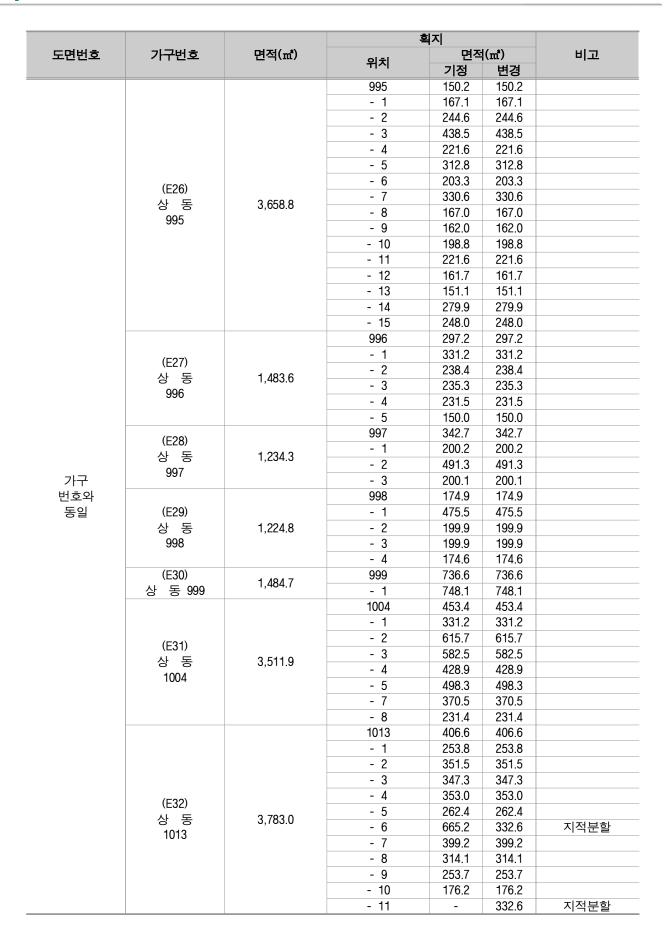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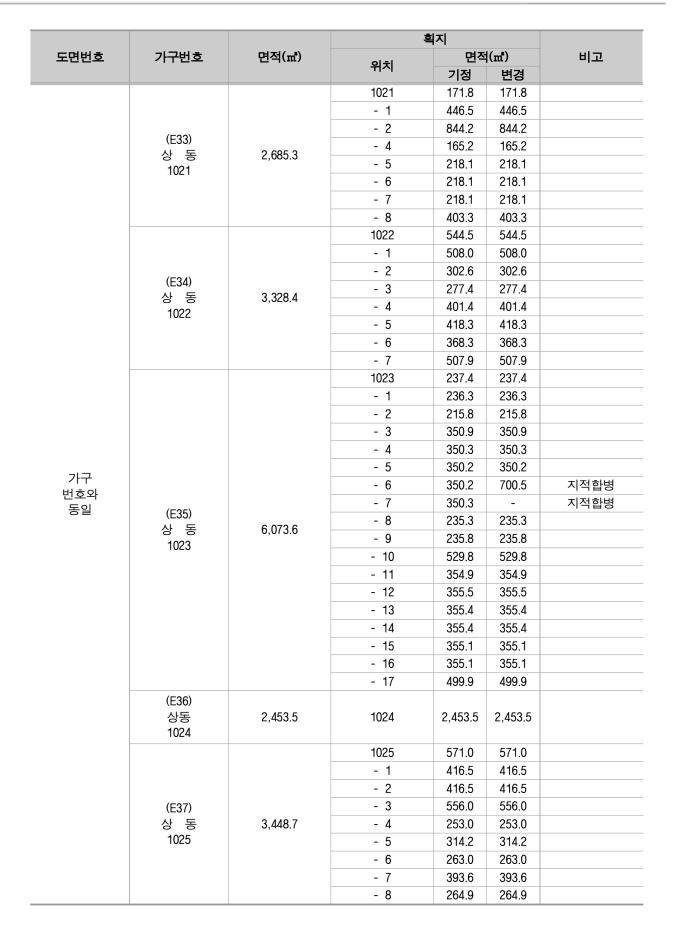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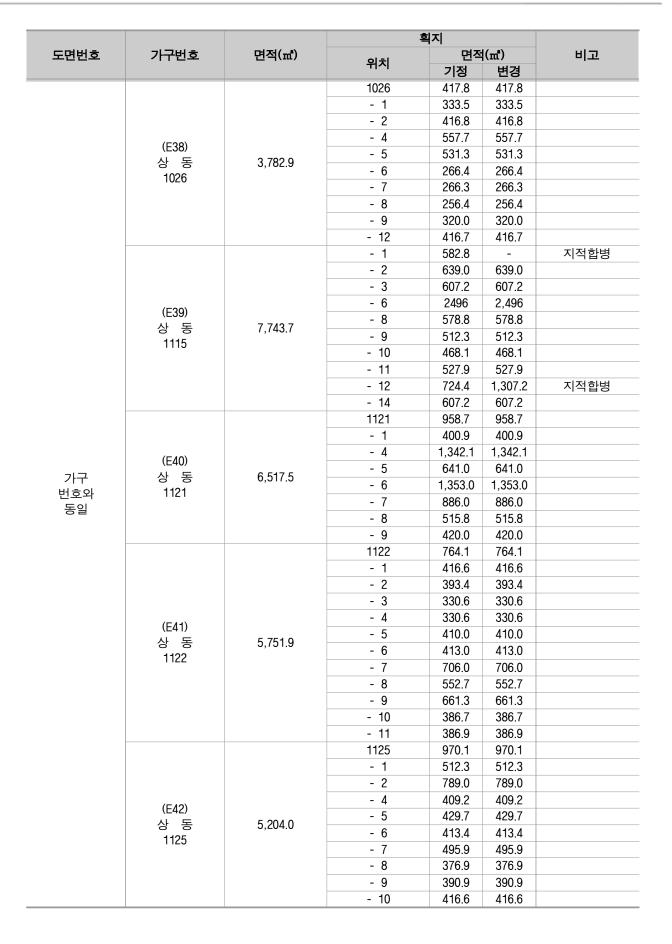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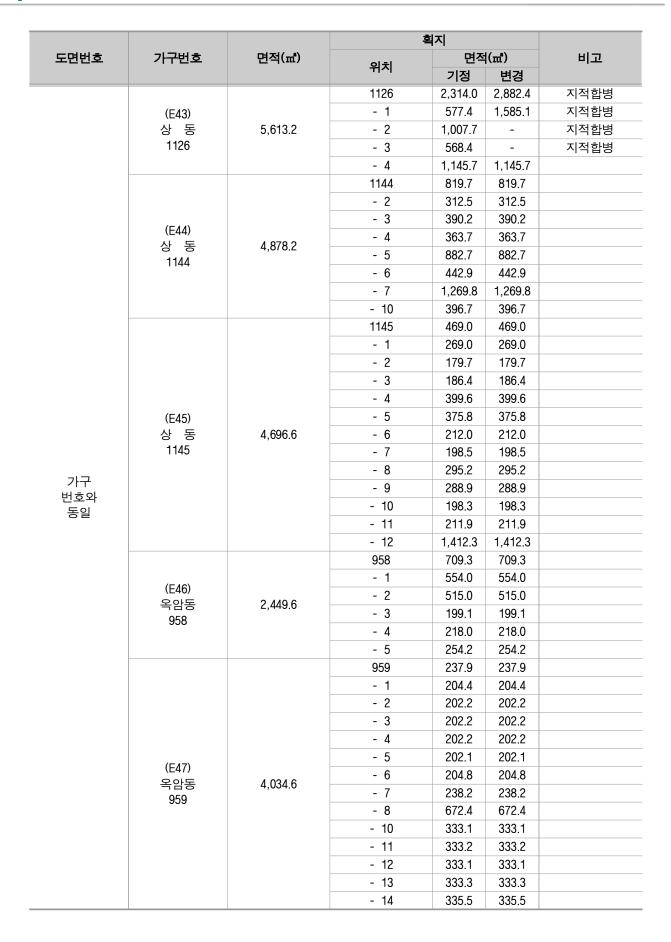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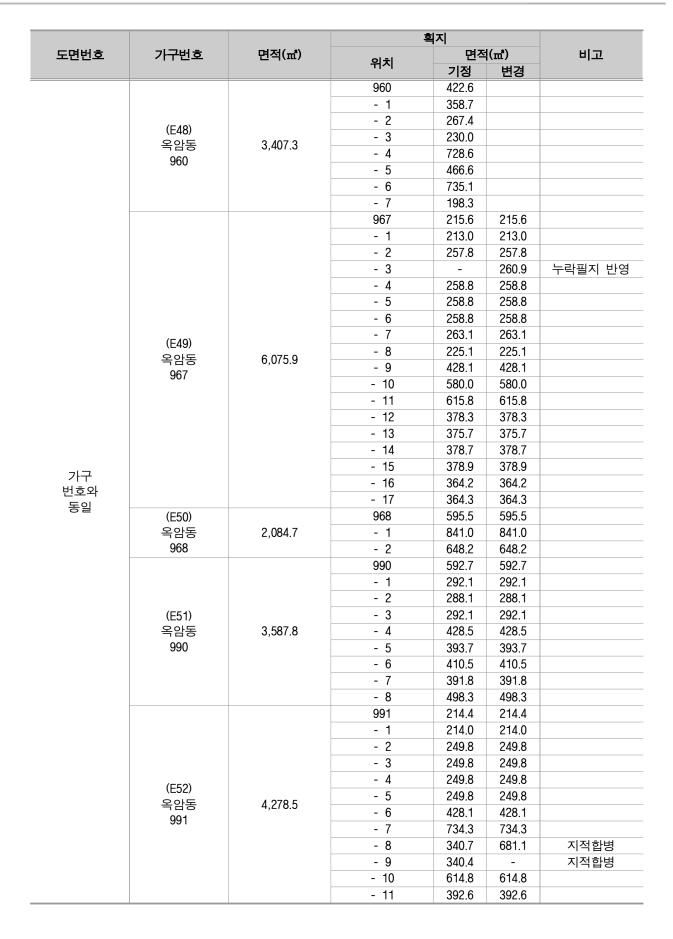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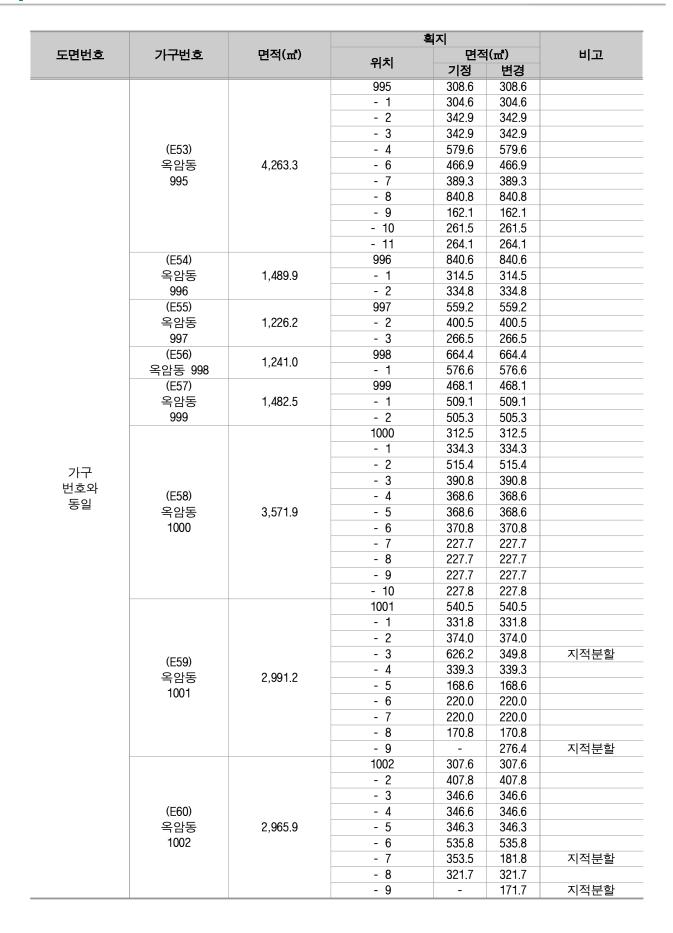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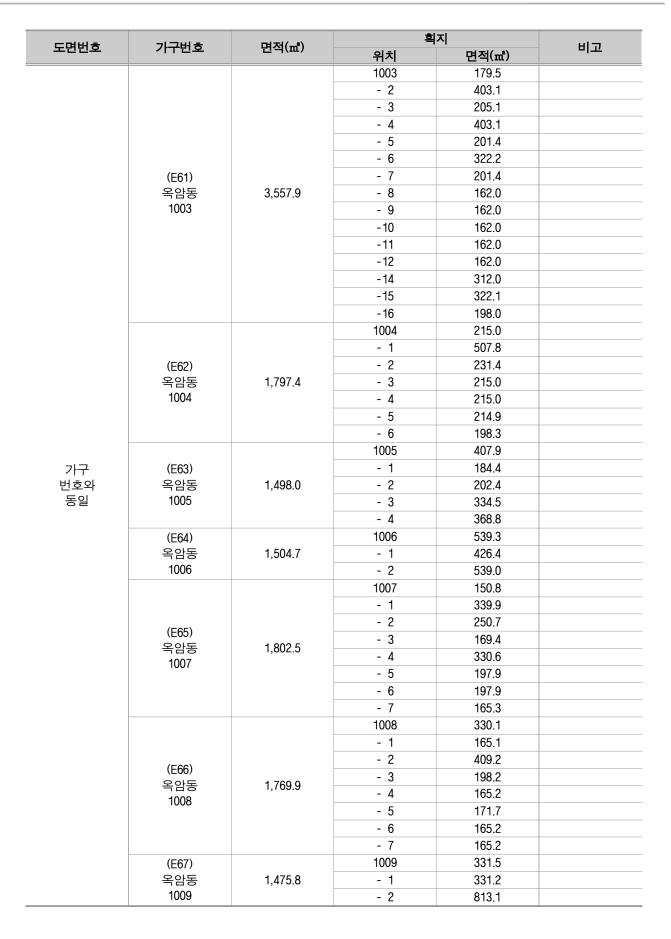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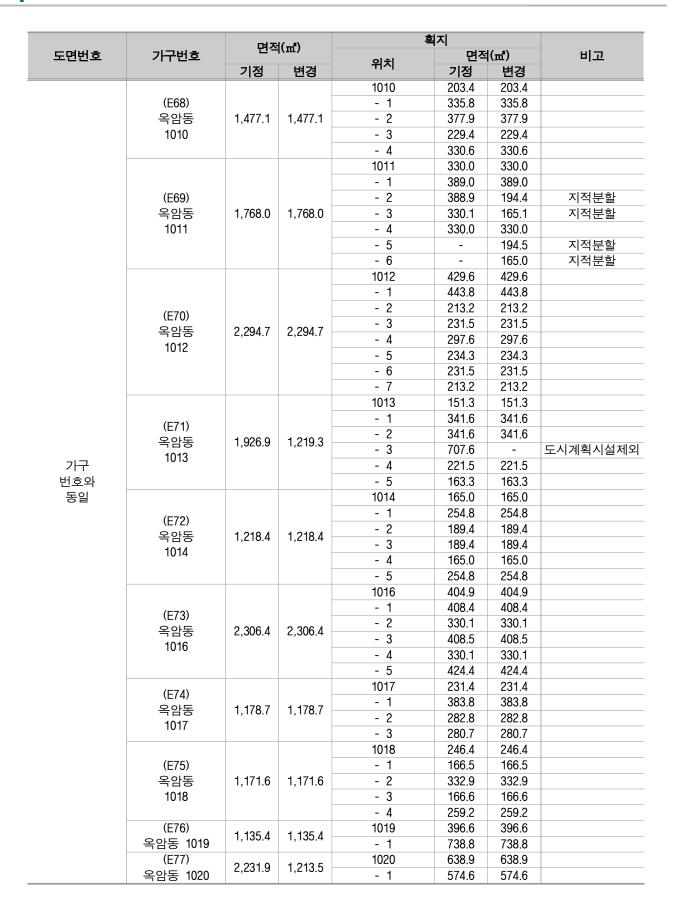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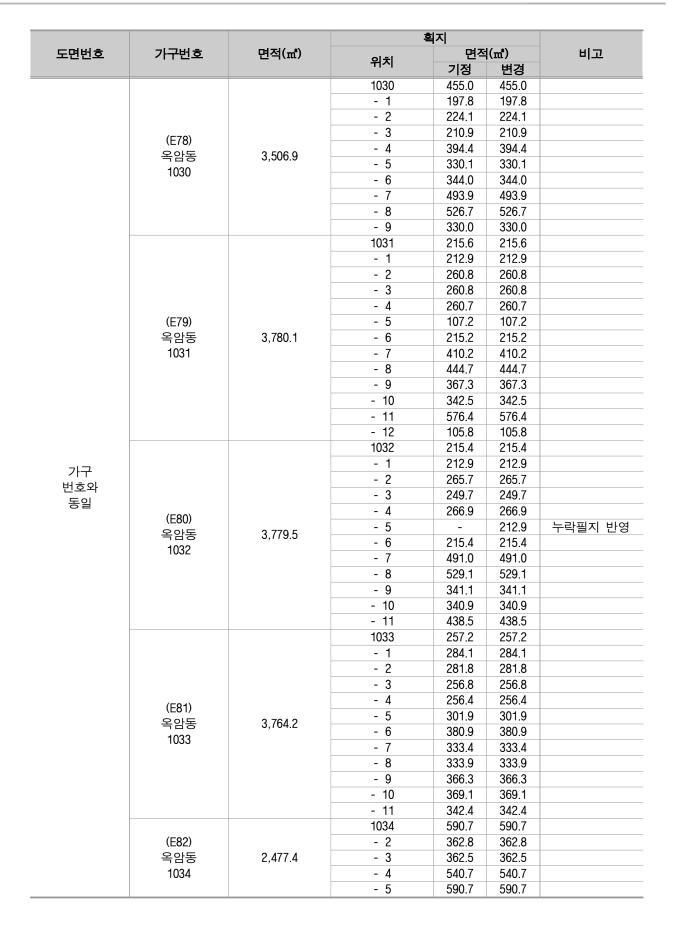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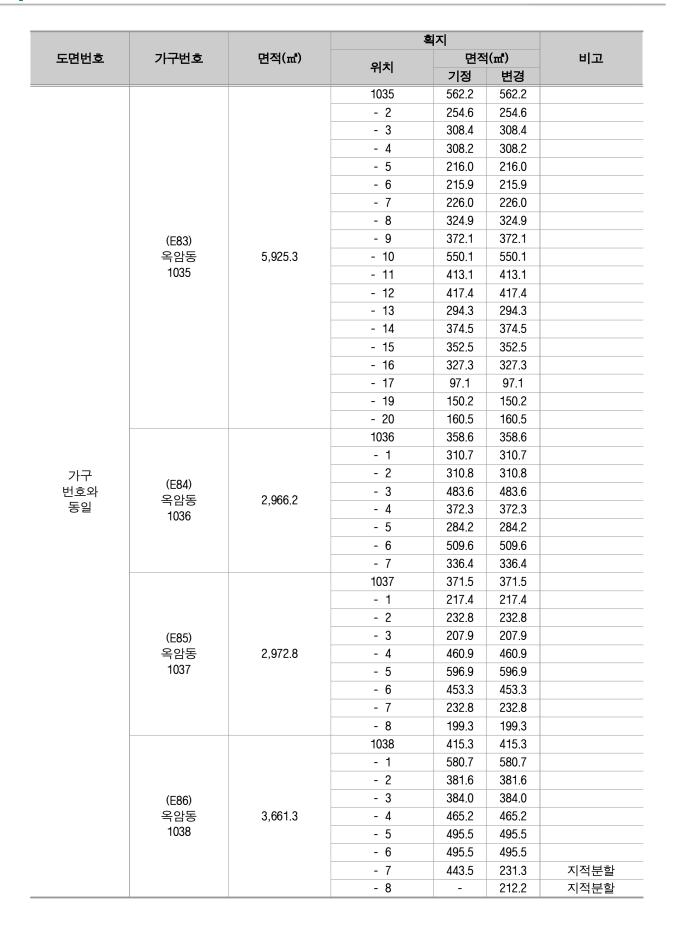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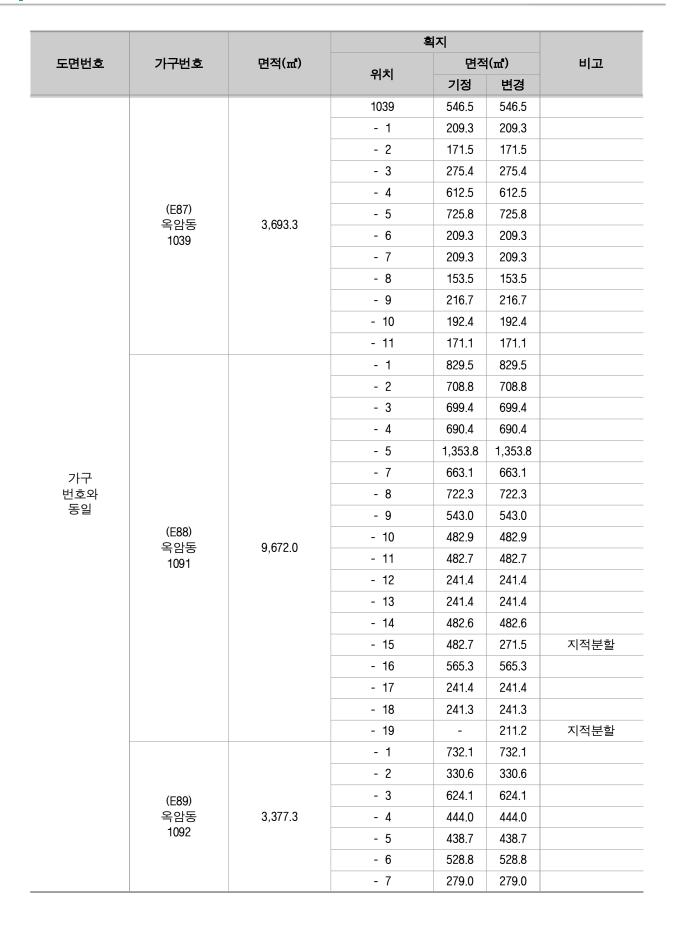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7	분	계획내용		
			허용 용도	ㅁ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0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제6조)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회	뎨율	□ 60% 이하		
		용견	덕률	□ 200% 이하		
717		높이	(층수)	□4층 이하		
가구	A1~A89	нЦ	치	ㅁ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 도모		
번호와 동일	A 1~A09	-11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향 배치		
<u></u>				□대문 :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권장사항)		
		형	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영	91	□건축물 담장의 높이는 위압감을 주지않고 시선의 차단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인 1.2m이하가 되도록 하며 생울타리, 목책 등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권장사항)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ㅁ 200% 이하
가구		높이(층수)	
번호와 동일	A1~A90	배	치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 도모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향 배치
63		형	태	□대문 :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권장사항)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건축물 담장의 높이는 위압감을 주지않고 시선의 차단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인 1.2m이하가 되도록 하며 생울타리, 목책 등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권장사항)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포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결	축선	-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8호 부대시설 □ 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기타 부대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기타 복리시설
			불허 용도	
		건피	폐율	- 30% 이하
		용격	덕률	ㅁ 250% 이하
		높이((층수)	ㅁ 15층 이하
가구 번호와 동일	C1~C26	배	치	□시각적 · 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주동최대길이 100m 이내 □아파트 1개동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일조 및 조망의 측면에서 주거환경에 불리할뿐만 아니라 보행동선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층수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1동의 길이를 15층 이하의 경우에는 6호연립이내로 권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남향 배치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블록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한다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1.0m 이하의 생울타리로 권장한다. 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수 있다 간선도로변 방음벽 : 간선도로변의 소음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로미관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결정한다.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 (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	축선	□ 도로변 소음 및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경계부의 공지확보를 위하여 간선가로변(B=20m이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선을 넘어 주거동 외벽의 각 부분이 건축되어서는 안된다.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대지의 일조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용도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건피	뎨율	ㅁ 30% 이하
		용2	덕률	□ 250% 이하
		높이((층수)	□ 15층 이하
		배 치		□ 시각적 · 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주동최대길이 100m이내 □ 아파트 1개동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일조 및 조망의 측면에서 주거환경에 불리할뿐만 아니라 보행동선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층수에 따른 주거환경 악회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1동의 길이를 15층 이하의 경우에는 6호연립이내로 권장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남향 배치
가구 번호와 동일	C1~C26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블록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한다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1.0m 이하의 생울타리로 권장한다. 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수 있다 간선도로변 방음벽 : 간선도로변의 소음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로미관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결정한다.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포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출	축선	□ 도로변 소음 및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경계부의 공지확보를 위하여 간선가로변(B=20m이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선을 넘어 주거동 외벽의 각 부분이 건축되어서는 안된다.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대지의 일조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근린생활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분		계획내용	
포인민호	ガベ	Т	正		, , , , ,	
				1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공공도서관)	
			허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	용도	2층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층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불허 용도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1-		건폐율		□ 60% ଠ ō}		
가구		용적률		□ 180% 이하		
번호와	N1	높이(층수)		□ 3층(이하	
동일		배	내 치	ㅁ통일	성과 가로경관 향상 도모	
				ㅁ건축	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ㅁ대문	·: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형	태	▫지붕	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	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기내 '출입	ㅁ대ㅈ	경계선으로부터 차량출입허용구간 7m 지정	

- ※ 단,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 연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 목포시 고시 제2018-150호(2018.10.25.)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반영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01-1		Н		-li+ii ii O	
도면번호	위치		분		계획내용	
				1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0	건축물 중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공공도서관)	
			허용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	용도	2층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u>9</u> T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층	□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불허 용도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17		건폐율		□ 60% 이하		
가구		용적률		ା 180% ଠାଚା		
번호와	N1	높이(층수)		□ 3층이하		
동일		배	배 치	ㅁ통일	성과 가로경관 향상 도모	
				ㅁ건축	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ㅁ대문	: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형	태	ㅁ지붕	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ㅁ건축	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포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기내 '출입	ㅁ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차량출입허용구간 7m 지정	

- ※ 단,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 연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 목포시 고시 제2018-150호(2018.10.25.)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반영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 준주거지역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0 F	허용 용도	ㅁ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 보건법(제6조)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건피	녜율	ㅁ70% 이하
		용적	덕률	ㅁ500% 이하
가구		높이(층수)		-
번호와 동일	B1~B109	배	치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 도모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가각에 접하는 획지는 도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대문 :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콕	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 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건피	예율	ㅁ70% 이하
		용적	덕률	ㅁ 500% 이하
가구		높이((층수)	-
번호와 동일	B1~B109	배	치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 도모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가각에 접하는 획지는 도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대문 :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포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콕	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B110	용도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미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미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미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미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미제11호의 노유자시설 미제13호의 운동시설 미제14호의 업무시설 미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임
			불허 용도	
번호와		건폐율		□ 70% 이하
동일		용적률		□ 500% 이하
		높이(층수)		-
		배	치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 도모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가각에 접하는 획지는 도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대문 :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12 4	- 1		1 1 1 1
		용도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미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미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미제6호의 종교시설미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미제11호의 노유자시설미제13호의 운동시설미제14호의 업무시설미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임
가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봉안당
번호와 도이	B110	건폐율		□ 70% 이하
동일		용적률		□ 500% 이하
		높이(층수)		-
		пH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 도모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가각에 접하는 획지는 도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대문 :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포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선	-



5. 중심상업지역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1~D55	0-	허용 용도	ㅁ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중심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 보건법(제6조)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ㅁ 90% 이하	
		용적률		ㅁ 1,300% 이하	
가구		높이(층수)		□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제86조, 제119조에 의거 산정적용 □목포시 건축조례에 의거 적용	
번호와 동일		배	치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물의 전면이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 가각에 접하는 획지는 도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결	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 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건피	폐율	ㅁ 90% 이하
	D1~D55	용적률		□ 1,300% 이하 (단,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0 적용)
가구 번호와 동일		높이(층수)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제86조, 제119조에 의거 산정적용 □목포시 건축조례에 의거 적용 □중심상업지역 각 필지별 최고높이는 목포시 고시 제2018-2호(2018.1.8.)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의거 적용
		ΗН	치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물의 전면이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가각에 접하는 획지는 도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포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	축선	-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0-	허용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 보건법(제6조)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건피	뎨율	ㅁ 70% 이하		
		용적률		□ 1,100% 이하		
가구	E1~E89	높이(층수)		□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제86조, 제119조에 의거 산정적용 □목포시 건축조례에 의거 적용		
 번호와 동일		нΗ	치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물의 전면이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가각에 접하는 획지는 도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불허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 될 경우 구역내 불허용도
		건피	예율	□ 70% ০ ৳
	E1~E89	용적률		□ 1,100% 이하 (단,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0 적용)
가구 번호와 동일		높이(층수)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제86조, 제119조에 의거 산정적용 □목포시 건축조례에 의거 적용 □일반상업지역 각 필지별 최고높이는 목포시 고시 제2018-2호(2018.1.8.)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의거 적용
		배	치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물의 전면이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게 함 □ 가각에 접하는 획지는 도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포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결	축선	-



7. 공공시설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ㅁ허용된 당해용도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ᇹ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청사	건되	뎨율	□해당 용도지역 내 기준적용
	학교 학교 · 주차장 · 기타시설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내 기준적용
가구 번호와		높이(층수)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제86조, 제119조에 의거 산정적용 □목포시 건축조례에 의거 적용
동일		배	치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물의 전면이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형	태	고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	축선	-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ㅁ허용된 당해용도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u>9</u> T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청사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 내 기준적용
	•	용건	덕률	□해당 용도지역 내 기준적용
가구 번호와	학교 · 주차장 · 기타시설	높이((층수)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제86조, 제119조에 의거 산정적용 □목포시 건축조례에 의거 적용
동일		배	치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물의 전면이 당해 도로변으로 향하도록 함
		형	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포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	축선	-

Ⅲ.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결정도 참조	차량출입 불허구간	□소로2-371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결정도 참 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민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 민간 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간 활용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민간부문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건축물 대지의 규모·용도· 형태 및 공간 활용 등에 관한 부문을 말한다.

제2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나 관련조례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지구 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하여 변경 가능한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권장에 따를 것을 권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허가권자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한 사항이다.
- ③ 시행지침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 및 관련지침이 개·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다.
- ④ 대지 상호간의 합필 또는 공동개발 등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폭원이 더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지침에 따른다.
- ⑤ 본 지침과 시행지침도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시행 지침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⑥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민간시행자가, 공공부문 시행지침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단, 민간부문사업 시행 중 공공부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지구단위 계획 지침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2.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3.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4.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5. "허용용도"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그 가구에 한하여 허용되는 용도를 말한다.



- 6.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그 가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7. "권장용도" 라 함은 대상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장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 8. "건폐율" 이라 함은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9. "용적률" 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10. "건축물의 전면"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등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 11. "건축한계선" 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2. "전면공지"라 함은 대지안의 공지로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안의 공지로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13. "보행주출입구" 란 보행몰로의 보행자 주출입구를 말한다.
- 14.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설치가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 15.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 16.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의 보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을 말한다.
- 17. "주차출입구"라 함은 필지로의 차량출입을 지정한 입구를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4조 (획지의 분할 및 합필 : 규제사항)

▮ 기정

- ① 획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을 허용함. (단, 환지방식에 의한 획지는 분할 가능하며, 최소면적은 165㎡ 이상으로 한다.)
- ② 또한 합필의 경우 인접 2필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계획함.
- ③ 기 합필이 된 경우는 현재 획지선을 유지하고, 합필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는 합필선의 획지경계선으로 함.

■ 변경

- ① 획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분할을 허용한다. (단. 최소면적은 165㎡ 이상으로 한다.)
- 1. 환지방식에 의한 획지는 분할 가능하다.
- 2. 매립준공에 의한 획지는 합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하다.
- ② 합필의 경우 인접 2필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③ 기 합필된 경우는 현재 획지선을 유지하고, 합필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는 합필선의 획지 경계선으로 한다.



제5조 (공동개발 : 권장사항)

▮ 기정

- ① 필지의 면적이 작을 경우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인접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한다.
- ② 공동개발(권장)이 표시된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
- ③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공동개발 할 수 있다.
- ④ 도면표시

공동개발 (권장) ○──○ ※ 식별요령 : 적색 실선으로 연결

■ 변경

- ①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165m² 이하인 필지를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권장) 계획 수립한다.
- ② 필지의 면적이 작을 경우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인접필지와 공동개발 하도록 권장한다.
- ③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공동개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및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면 공동개발 할 수 있다.
- ④ 삭제

제3장 밀도에 관한 사항

제6조 (건폐율 : 규제사항)

- ① 건폐율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② 도면표시

건폐율 60% 이하

제7조 (용적률 : 규제사항)

- ① 용적률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② 도면표시

용적률 250% 이하



제4장 용도에 관한 사항

제8조 (허용용도 : 규제사항)

- ① 본 구역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입지할 수 없다.
- ② 본 구역내 대지에서는 권장한 용도의 건축물 입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도면표시

	A 용도	
허용용도 (규제)		(A 용도 허용)

제9조 (불허용도: 규제사항)

① 불허용도가 표시된 대지에 대해서는 제8조 허용용도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하여도 그 구분에 따라 건축물 용도표에 열거된 건축물 불허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제5장 높이에 관한 사항

제10조 (높이제한의 적용 : 규제사항)

- ① 모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층수를 적용한다.
- ② 최고층수가 지정된 획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③ 최저층수가 지정된 획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④ 삭제〈변경 2016. 1. 14〉
- ⑤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도면표시

최고층수 및 최저층수 (규제) 15층 이하 4층 이상

※ 식별요령 : 층수를 숫자로 표기(규제)





제11조 (건축한계선의 적용 : 권장사항)

-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이 돌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을 위한 통로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 식별요령 : 실선으	로 연결

제12조 (건물의 배치 : 권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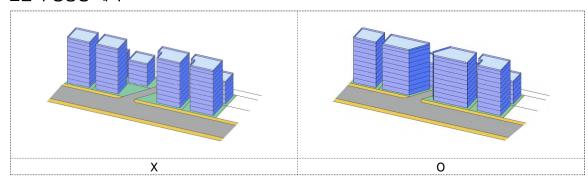
- ①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을 향하도록 권장한다.
- ② 남향배치가 불가피한 동서간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 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 이격되도록 유도한다.
- ③ 공동주택은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1동의 최대길이를 100m 이내로 제한한다.

제13조 (건물의 방향성 : 권장사항)

건물의 방향성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단,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건물의 방향성 예시





제7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4조 (전면공지의 조성방식 : 규제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 및 차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대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단지내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전면공지(보도부속형)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③ 기타사항

- 1.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 2. 포장: 포장패턴 조성 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
- 3. 보도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경계부 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와 보도와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한다. 단,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설치된 경우 그 출입구 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4. 적용의 예외: 지구단위계획상 보도의 확장 외의 목적으로 지정된 대지내 공지는 위의 단처리와 포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 처리도 예외로 한다.

제15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권장사항)

- ① 대지내 통로는 장식포장을 권장한다.
- ② 대지내 공지에는 환경장식물과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6조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권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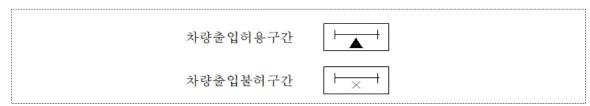
- ①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한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 ②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권장한다.



제8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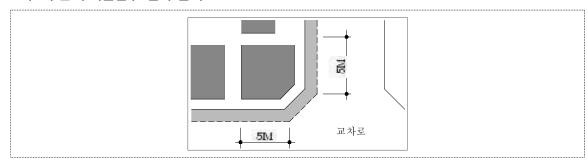
제17조 (차량출입허용, 불허구간의 적용 : 규제사항)

- ① 폭 20m이상 도로에서 필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지형조건 등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필지의 분할 및 지형조건 등 대지여건상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도면표시



제18조 (차량출입구의 설치 : 규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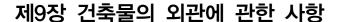
- ①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필지 외에도 다음의 구간에서는 주차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1.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5m이내의 구간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 및 지형여건상 불가피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② 단, 필지의 규모 및 형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5m 이내로 주차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차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다.
- 교차로주변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제19조 (주차장 확보 : 규제사항)

- ①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차장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처리 : 권장사항)

- ①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의 4면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사용을 금하도록 권장한다.
- ②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가능한 한 경사의 방향이 대지의 전면부에 놓이도록 유도한다.
- ③ 공동주택용지는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한다.

■ 아파트 지붕 예시



제21조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 : 규제사항)

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조립식구조(샌드위치판넬, 조립식판넬 등)의 건축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건축물의 색채 : 권장사항)

▮ 기정

- ①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사용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다음의 건축물 외부색채 기준에 따른다.

■ 원색의 정의

한국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함

분류 코드	R	YR	Υ	GY	G	BG	G	PB	Р	RP
일반적 색명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유형	정 의	기 능	권 장
	고건축물의 어느 한편의 외벽		마
주조색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 사용은 금지
	색깔		□ 먼셀표색계 R · YR계 채도 6이 하, Y계 채도 4이하, 그 외 색 상 채도는 2이하
보조색	□ 건축물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 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지역 내에서 단지의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권장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3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	ldentity를 제공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권장
	고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강조색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단지 내에서	마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교차 로 등)에는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사업단위의	때에 따라 원색계 통의 순도 높은 색을 사용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ldentity를 제공	할 수 있음
	차지하는 색깔		

■ 변경

- ①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사용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경관색채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원색의 정의(삭제)

제10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23조 (기본원칙)

▮기정

- ① 옥외광고물의 최소화, 단순화, 일체화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건축물의 구조, 형태, 외장소재와 연계된 광고물 디자인으로 Identity를 확립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 ②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총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창문광고 등에 대한 설치 기준 중 일부만을 제어하고, 간판의 규격이나 기타 모든 사항은 현행 법규를 준수함으로서 혼란 및 과다규제를 방지하도록 한다.
- ③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주형 간판을 불허하고 현수막의 부착기간을 제한한다.

■ 변경

- ① 옥외광고물의 최소화, 단순화, 일체화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건축물의 구조, 형태, 외장소재와 연계된 광고물 디자인으로 Identity를 확립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 ②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총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창문광고 등에 대한 설치 기준 중 일부만을 제어하고, 간판의 규격이나 기타 모든 사항은 현행 법규를 준수함으로서 혼란 및 과다규제를 방지하도록 한다.
- ③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주형 간판을 불허하고 현수막의 부착기간을 제한한다.
- ④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경관계획을 따른다.



제24조 (가로형 간판 : 권장사항)

- ① 1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가로형 간판의 총수를 1개(곡각지점 2개) 이내로 제한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② 가로형 간판과 관련된 기타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전라남도 조례 등에 따른다.

제25조 (돌출간판 : 권장사항)

- ①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최소 3m 이상으로 하되,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돌출간판과 관련된 기타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전라남도 조례 등에 따른다.

제26조 (옥상간판 : 권장사항)

목포시의 깨끗한 이미지 창출과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경사지붕의 옥상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제27조 (창문광고 : 권장사항)

도시미관을 고려 창문광고를 불허하되 건물의 주업종, 1층의 로고형 간판은 허용한다.

제11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8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 ①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를 적용하며, 용도는 재축·증축·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에 한한다.
- ② 법규개정 이전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 중인 건축물 내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용도에 한한다.

제29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 ②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 기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변경을 금한다. 다만 관계법령, 조례의 제·개정,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적용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국토해양부장관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변경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관계 법령, 조례의 제·개정,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적용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 목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공부문에 관한 시행지침(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 ① 본 공공부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시행 지침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로시설물, 공원 및 녹지, 옥외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도시안내체계 등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제2조 (지침적용 기본 원칙)

-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조례, 편람,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일부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의 허용 범위에서 동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 ③ 단, 시행 지침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동 지침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물

제3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4조 (설계기준)

- ① 간선도로로부터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되도록 도로위계나 폭원이 낮은 도로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기능 배분
- ② 각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 동선과 간선도로와의 교차발생을 가급적 최소화 한다.
- ③ 차선 폭은 3.0~3.5m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 유형별 폭원 및 접도 조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5조 (버스 및 정차대)

① 버스정차대 폭은 2.25m 이상, 가속구간 13~25m, 감속구간을 12~20m씩 확보하고, 동시 정차대수를 2-3대를 기준으로 정차 대수당 15m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버스정차대는 보행집산과 대기장소이므로 교통표지판, 안내판, 키오스크, 벤치겸 식수대, 보행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 ③ 정차장 진입부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구간(약20m 내외)은 가로장치물 및 교목식재를 배제한다.
- ④ 버스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을 원칙으로 하되 버스의 운행이 적은 곳은 평면형 정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 버스정차대 이격거리

구 분	전	방	후 방		
교 차 로	최 소	적 정	최 소	적 정	
교 차 로	40m	60m	20m	30m	
횡단보도 세가로	30m	30m	15m	30m	

제6조 (보행자전용도로)

- ① 차량진입을 제어하기 위한 고정적이고 상징적인 가로시설물을 설치하되, 장소의 인식성 및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②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구분을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을 달리하며, 경계부분에 교통안내판, 조명, 볼라드등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
- ③ 보행자전용도로 진출입부에는 차량통행의 원천봉쇄를 위한 차량제어 볼라드를 설치한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도와의 접속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과속 방지시설(Hump)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도록 유도한다.

제7조 (자전거도로)

- ① 대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순환체계를 구성하고 대중교통시설과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외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분리대 포장재료,색깔 등에 의해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구획한다.
- ③ 자전거도로의 폭원은 최소 1.5m~2.0m 이상으로 하고 구간별로 도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폭원을 확보한다.
- ④ 자전거 도로의 설계속도는 20km/h 이상으로 하고. 최대종단구배는 5%이하로 설치한다.

제8조 (자전거 보관대)

① 자전거 보관대는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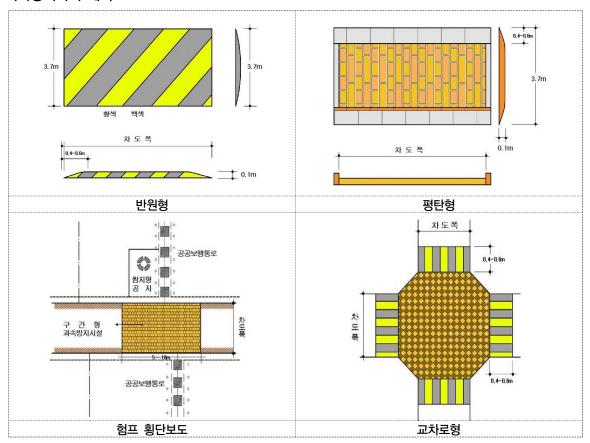
제9조 (과속방지시설)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② 교차로부근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설치 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④ 보행자우선도로 진입부에 과속방지시설인 요철포장을 설치하여 진입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보행자 보호를 도모한다.
- ⑤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 = 20m내외)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 ⑥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 색으로 요철포장을 한다.

■ 과속방지턱의 예시도



제10조 (횡단보도)

- ① 일반적 설치 간격은 200m이하로 계획하고 교차로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 ②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 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 블럭을 설치한다.
-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한다.
- ④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주의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양쪽에 수목을 배치하여 차도폭을 시각적으로 좁게 한다.



제11조 (공용 주차장의 설치기준)

- ① 주차장법 및 목포시 주차장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 ② 시설은 차량 보호 및 토양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주차장내 조경시설을 의무화한다.
- ③ 일잔디형 블록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2절 포장

제12조 (재료 선정기준)

- ① 내구성이 높고 견고한 재료
- ② 답압에 대한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상 용이한 재료
-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이고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 ④ 각 가로의 정체성(identity) 및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 있는 재료
- ⑤ 시공과 개수가 용이하고, 염가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재료
- ⑥ 보도, 공공조경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수성이 양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 포장 재료의 비교

재료의 종류	형태	색/형태적 특성	내구성	일반적 특성/적용	비고	설치장소
아스팔트	-	□ 여름철 열반사복사	내마모성 약함	□ 광범위한 지역의 포장, 주차장 등 □ 부드럽고 연하여 탄력성이 있어 보행 용이	□ 가격저렴 □ 구입용이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	□색상, 형태 다양	내마모성 약함	□넓은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활용 □수목에 자연수 공급	□ 가격저렴 □ 구입용이	□ 소공원 □ 쌈지공원
콘크리트 블럭	-	□색상에 제한 □하절기 햇볕 반사	내마모성 약함	□ 개수가 용이하고 줄눈을 통한 자연배수 가능 □ 넓은 면적의 포장에 경제적 □ 미끄럼 표면방지 제공 □ 보양기간이 필요 □ 인장력이 낮고 쉽게 갈라지는 단점이 있으나 단위형태는 가능	□ 가격저렴 □ 구입용이	□ 보차도
소형 고압블럭	정방형, 장방형, 코너형, 이형 등	□색상,형태 조합이 다양	내산성, 내마모성 양호	□ 보행자전용도로, 보도, 광장, 주차장 등 다양 한 장소에 포장 가능 □ 장소별 특성화 가능	- 구입용이	□ 보도 □ 보행자 전용도로 □ 쌈지공원
벽 돌		□색상, 형태, 질 감 등의 조합이 다양	내산성 양호	□타 재료와의 조합이 어려움 □건축물과의 재료의 연속성 유지 용이 □미끄럼방지를 위한 표면처리에 적합 □압축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크기는 다양	ㅁ구입용이	□ 쌈지공원 □ 소공원
타일 (석재, 자기질)	정방형, 장방형, 이형 등	□색상, 형태, 질감 등의 조합이 다양	양호	□ 광장, 휴게 공간, 보도포장에 적합 □타 재료와 조화 □ 표현이 다양하므로 패션화 가능	□ 고가 □ 구입용이 □ 주문생산 가능	□ 대형건축 진입부 □ 보행결절부
판 석	정방형, 장방형, 이형 등	□색상이 다양 □모양이 특이한 패턴	강함	□넓은 지역에 일괄포장 가능 □일반적으로 건물진입부 등, 한정된 곳에 사용 □이형 포장시 자연적인 분위기 연출 □고가이나 수명이 영구적		□소공원 □쌈지공원 진입부
자 갈	이형	□보행에 불편 □몰탈 마모 우려	강 함	□보행차단, 완화필요시 사용 □수목과의 조화, 모자이크 패턴 가능	□ 가격저렴 □ 구득용이	_
잔 디	_	□열, 습기, 먼지흡수	_	ㅁ답압에 약하므로 포장연결 요소로 작용	□ 가격저렴 □ 구득용이	_



제13조 (조성방식)

- ① 가로는 일반포장 구간과 특별포장 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 공간 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일정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 ②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문양, 새, 꽃 등의 기본패턴과 3-4종의 변형패턴을 조합하도록 한다.
- ③ 보차공존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질감을 다르게 조성한다.
- ④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14조 (패턴 및 질감의 적용)

- ① 포장의 폭과 줄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
- ② 격자형 패턴은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곳에 사용을 유도하고 공간의 확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패턴을 사용한다.
- ③ 포장패턴은 건축물 및 부지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 ④ 공간을 상호간으로 대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선과 곡선의 반복 이용 및 이중질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 ⑤ 단위 줄눈의 크기가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패턴은 안정감이 있으므로 휴식·기다림의 공간에 사용을 유도한다.
- ⑥ 이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포장패턴은 율동적이고 운동감이 강조되는 포장패턴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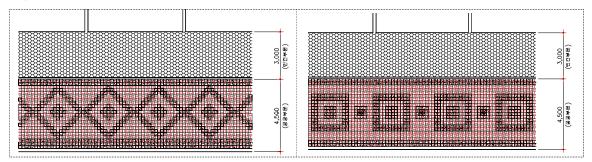
제15조 (보도 포장기준)

▮ 기정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 가로에 관련하여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 ② 공공부문의 포장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 포장 기준보다는 우선순위를 둔다.
- ③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1. 보행자우선도로의 포장은 보행부분과 차량부분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포장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다.
- 2. 보행자부분은 소형고압블럭을 이용하여 구간전체가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슈퍼그래픽을 갖게 포장한다.
- 3. 차량부분은 칼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얻게하고,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우선도로를 인식시킬 수 있는 문양을 일정 간격마다 넣는다.
- ④ 되도록 전면 재시공은 피하고 기존 보도 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 포장 패턴의 예시도



■ 변경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 가로에 관련하여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 ② 공공부문의 포장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 포장 기준보다는 우선순위를 둔다.
- ③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1. 보행자우선도로의 포장은 보행부분과 차량부분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포장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다.
- 2. 보행자부분은 잔디블럭, 투수성 포장을 이용하여 구간전체가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슈퍼그래픽을 갖게 포장한다
- 3. 차량부분은 칼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얻게하고,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우선도로를 인식시킬 수 있는 문양을 일정 간격마다 넣는다.
- ④ 되도록 전면 재시공은 피하고 기존 보도 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 ⑤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계획을 따른다.
- ⑥ 보도블록 포장 기준은 원색과 다양한 패턴을 지양하고 포장면의 평탄성을 확보하도록 포장한다.
- 포장 패턴의 예시도(변경)



제16조 (사후관리)

- ① 민간·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시 공사 완료 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사 완료 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시 첨부자료 : 공사시행 전/후 현황사진)



제3절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17조 (적용범위)

- ① 본 절은 도로, 공공시설 및 주요지점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② 차량 및 보행 결절부와 주요 시설물의 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른 환경 조형물과 적절한 통합배치를 유도한다.
- ③ 장소, 위치, 성격별로 특성을 부여하고 거리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제18조 (조성방식)

- ① 일괄설계 및 통합 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 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 ④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심볼, 로고 등 그래픽 요소를 개발 활용하도록 한다.

제19조 (설치 위치)

- ①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 안내시설을 배치하여 지구전체에 대한 정보와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고, 해당 지역 외 주요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도 수록한다.
- ②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 안내판을 설치한다.
- ③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한 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한다.

제20조 (시설 표지)

시설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인한 식별성 및 경관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규격·표기방법 등을 통일하여 동일 성격의 표지판을 한곳에 집중 설치토록 한다.

제21조 (차량 안내체계)

- ①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
- ② 명명체계는 명명단위 우선 순위를 지역명-시설명-도로명-구역명 순으로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③ 구역 내 일방통행체계를 구축할 경우 일방통행로 진입부에 차량 안내기둥(색채ㆍ조형 고려)을 설치한다.



제4절 가로 장치물 제22조 (설계기준)

- ① 가로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 장치물 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 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전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상호 보완적 가로 장치물은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 구간 내에 각종 장치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④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 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장치물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도록 한다.

■ 위치별 통합가로 시설물

구 분	Α	В	С	D
휴 지 통	•	•	•	•
벤 치	•	•	•	•
공중전화	0	0	•	•
음 수 대		0	•	0
플 랜 터	•	0	0	0
볼 라 드		0		
파고라, 쉘터		0		•
가로 판매대		•	0	
자전거보관대				0
시 계 탑			0	0
버스 정차대		•		
문 주				•

주) ● 필수시설 ○ 권장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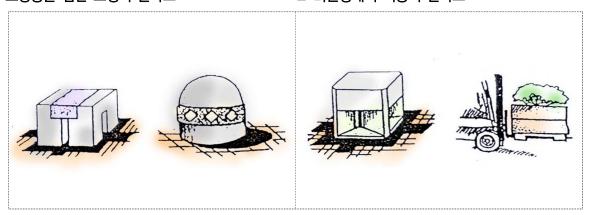
A : 쌈지공원 및 도로변형, B : 버스정류장형, C : 보행결절점형, D : 광장형



제23조 (볼라드)

- ① 보행자도로, 보도 등의 진입부 및 막다른 도로의 회차 지점 등에 설치하여 차량의 무단진입으로부터 보행자 공간의 안전을 확보한다.
- ② 비상차량의 출입 또는 관리 목적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볼라드를 사용한다.
- 조명등을 겸한 고정식 볼라드

■ 화분형태의 이동식 볼라드



제5절 가로 시설물

제24조 (가로수의 수종 선정)

- ① 본 구역의 가로식재는 기 식재된 수종을 선정하여 우선으로 준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②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 ③ 이식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한 수종을 선정한다.
- ④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배제한다.

제25조 (식재방법)

- ① 도로폭 12m이상, 보도폭 3m이상(건축한계선 지정으로 확보되는 부분을 포함)인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가려지지 않도록 식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③ 도로의 교차부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도로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④ 가로변 식재는 6~8m를 유지하되, 버스 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 ⑤ 가로의 특성 및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다.
- 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 1~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 공간(공공조경)을 조성한다.





구 분	예 시 도
□ 정형규칙 식재 - 가로변 등 공간이 선적인 장소 및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외주부 - 공간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장소	@ @ @ @@@
고립식재 - 광장 등 상징성과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 -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수목을 가진 장소 (대형수목, 천연기념물, 소령목 등)	
미녹음식재 - 휴식공간, 공원 등 비교적 넓은 곳	
□PLANTER에 의한 화초류 식재 - 색채, 계절별 다양한 경관 연출을 위한 초화류, 관목 식재 - Open 된 장소에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장소	
□밀식식재 - 경관상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주차장, 급경사지 등) - 공간의 분할이 필요한 장소 -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장소(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 방음이 필요한 장소	

제26조 (식재기준)

■ 보행공간 특성에 따른 식재계획

구 분	시케이 투서		주 요 수	· 종		
十 元	식재의 특성	성 상	상 록	낙 엽		
		관목	□ 반송, 향, 회양목, 사철 등	□철쭉류, 모란, 개나리 등		
노시 전 📗	정형 규칙 식재를 하여 상징성 있는 나무를 식재	교목	□향나무, 소나무, 측백 등	□은행, 느티, 자작, 침엽수, 단풍류, 백합 등		
		지피류	마잔디 등			
근리생완		관목	마사철, 눈향, 쥐똥나무 등	□개나리, 철쭉, 장미류, 무궁화 등		
	낙엽 및 꽃 등 특징 있는 나무로 식재	교목	□주목,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단풍, 벗나무, 라일락, 은행, 느티, 자귀 등		
		지피류	□잔디, 맥문동 등			
		관목	미인동덩굴, 회양목, 사철나무 등	ㅁ등나무, 으름덩굴, 철쭉류 등		
자 연 적 공 간	기존녹지와 일체감 있는 나무로 식재	교목	□측백, 편백, 전나무, 잣나무, 향나무류 등	□은행, 단풍류, 낙우송, 수양버들, 플라타너스 등		
		지피류	□잔디, 1-2년생 초본류, 화훼류			



제6절 조명

제27조 (가로등의 설치방식)

- ① 가로등 시설은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② 구역 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 보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제28조 (가로등의 설치기준)

- ①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②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곡선부 로타리,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 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 특성에 알맞게 유도·조정한다.

제29조 (야간조명 강화)

- ① 도로변의 야간조명은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야간에도 쉽게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② 야간 보행밀도가 많은 공공보행통로 주변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의 안전과 휴게 편익을 도모한다.
-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④ 공공은 건물신축시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한다.

■ 하부조명 강화

조 명	해 당 용 도	높 이	간 격	광 원	조명 방식
볼라드형보행등	보행자 전용도로, 소광장, 주차장 입구	0.8m~1.5m	2~4m	백열등,나트륨등	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
접지형 조명등	주요 조형물 또는 식재, 건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	접지형	불규칙	백열등,나트륨등	상향/측향/ 하향 간접조명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

제30조 (설계도서의 작성)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 및 예시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도서를 작성한 후 집행하여야한다.



제31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 ②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32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 기정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변경을 금한다. 다만 관계법령, 조례의 제·개정,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적용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국토해양부장관 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변경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관계 법령, 조례의 제·개정,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적용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 목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